

示範福祉事務所 運營에 따른 諸般事項 研究 檢討

1985. 11. 30.

— 研究資料 —

이 資料는 社會保障 審議委員會
研究委員 및 參事의 個別的인
研究結果이며 保健社會部의 公式
的 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社會保障審議委員會

研究委員 孫 昌 達



保健社會部長官 貴下

1985 年度 調査研究事業의 하나인 「示範福祉事務所 運營에 따른 諸般事項」을 研究 檢討하여 다음과 같이 報告하나이다.

1985 年 11 月 30 日

社會保障審議委員會

研究委員 孫 昌 達

目 次

研究의 目的	3
第一章 問題의 提起	5
1. 머릿말	7
2. 現行 社會福祉傳達體系의 問題點	13
가. 現行 公的扶助體系	13
나. 現行 社會福祉서비스體系	15
3. 課題의 解決方向	33
第二章 社會福祉事務所의 任務	47
1. 社會福祉事務所란	49
2. 社會福祉事務所의 業務	50
3. 專門人力의 活用	54
4. 專門的 福祉活動의 展開要領	60
要約 및 建議	123
參考文獻 및 資料	133

研 究 的 目 的

1. 現行의 社會福祉傳達體系가, 問題를 가지고 있는 要保護對象者에게 適切한 서비스를 效率的으로 傳達될 수 있도록 組織化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行政便宜爲主로 되어 있는 이 傳達體系를 保護對象者와 家族의 欲求를 充足시키고,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專門人力의 確保와 그 機能을 堪當할 수 있는 傳達機構가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市·郡·區單位에 「社會福祉事務所」가 設置되어, 社會福祉行政의 最一線機關으로서, 해당 地域社會의 生活保護事業을 運營하고, 兒童, 老人, 婦女子, 障礙者들에게 각종 福祉서비스를 提供하면서 其他 公·私福祉機關과의 紐帶·協助로 政府의 地域福祉事業을 總括 運營하는 機構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2. 오늘날 社會福祉의 擴充에 力點을 두어야 하는 背景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즉, 社會·經濟의 與件의 急激한 變化로 인한 國民生活의 새로운 障礙·困難·矛盾 및 身體的 精神的 危機現象을 克服하기 위한 社會福祉 欲求가 增大되고 있어 이러한 需要에 效果的으로 對應하기 위해 社會福祉서비스 體系의 合理的 編成과 統合이 必要한 階梯에 와 있다. 또한 核家族化의 進展으로 家族規模가 縮小되고 있어, 失業·疾病 등이 發生했을 때, 家庭內에서의 對應이 어려워지고, 또 育兒와 老齡者의 扶養도 어려워진다. 한편 女性의 社會進出과 더불어 家庭의 主婦層을 中心으로 하는 女性雇傭者의 增加는 지금까지 家庭內에서 處

理가 可能했던 일이 家庭밖의 處理로 轉換돼 가고 있다.

高齡化하는 老人의 老後生活은 身體的 老衰와 不自由로 介護를 要하는 期間이 길어지고, 社會的 適應이 어려워 疎外와 孤獨은 深化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같은 家庭環境속에서의 어린이는 父母와의 接觸이 疎遠하여 좋은 버릇을 기르기 어렵고, 學校와 地域社會에서의 生活의 不調和, 出版物이나 TV 등 映像物의 狀況도 子女들의 健全養育에 惡影響을 미치고, 따라서 非行靑少年마저 增加一路에 있는 것도 事實이다.

한편 經濟의 高速成長속의 所得의 增大는 分配의 不均衡과 一部層의 消費豐饒와 誇示로 相對的 貧困意識을 刺戟하고 不健全한 社會風潮를 만연시키고 있다.

3. 따라서 앞으로의 社會福祉는 健全하고 幸福한 家庭生活의 維持・發展을 根幹으로 豫防的 再活的 福祉機能을 重視하여 多様な 福祉的 欲求・充足에 對應하기 위한 諸般措處가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擴張一路에 있는 社會保險的 給與에 比例하여 社會福祉서비스도 擴充되어야 하고, 아울러 適切한 서비스가 效率的으로 要保護者에게 傳達되게 하기 위해서 合理的인 社會福祉傳達體系부터 果敢하게 改善되어야 함은 當然한 福祉措處라고 하겠다.

이를 위한 첫 段階의 試圖로서 設置되어야할 示範福祉事務所의 運營指針을 마련하고, 社會福祉業務의 專門化와 活動展開能力을 培養하는데 必要한 資料를 提供하려는 것이 이 研究의 目的이라 하겠다.

第一章 問題의 提起

1. 머 릿 말

2. 現行 社會福祉傳達體系의 問題點

3. 課題의 處理方向

第1章 問題의 提起

1. 머릿말

가. 現代 資本主義國家들이 『福祉國家』 建設을 표방하여 國家財政으로 國民經濟를 관리하며 國民生活을 安定시키는 한 手段으로서 『社會保障制度』를 推進, 그 擴充에 力點을 두고 있고, 『社會福祉』는 廣義이던 狹義이던, 社會保障의 質과 量의 發展에 따라 現代資本主義國家로서의 公共的인 福祉 機能을 遂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例外는 아니어서 國政의 指標를 ① 民主主義의 土着化 ② 福祉社會의 建設 ③ 正義社會의 具現 ④ 教育革新과 文化暢達에 두고 있으며, 또한 憲法에선 基本的 人權에 保障과 社會保障權·環境權의 保障에 이르기까지 國家의 當연한 義務로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社會福祉에 관한 國家의 責任 遂行과 國民의 權利 保障은 名實共히 『모든 國民의 人間다운 生活』의 確保와 享受에 必要한 모든것을 福祉行政의 內容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이러한 內容을 具體적으로 實現하기 위해, 社會保障에 관한 法律 및 그 施行令에 規定하고 있는 ① 醫療給與 ② 休業給與 ③ 失業給與 ④ 老齡給與 ⑤ 產業災害給與 ⑥ 家族給與 ⑦ 出產給與 ⑧ 廢疾給與 ⑨ 遺族給與 ⑩ 葬祭給與 ⑪ 公的扶助 등의 諸給與를 根幹으로 하여 社會福祉 行政이 이루어지고 있다.

社會福祉行政이라고 할때, 그것은 現實적으로 國家行政組織機構에 의해서 執行되고 있는 것이 事實이므로 現行의 政府行政組織法에서는 몇개의 主務部長官으로 하여금 分擔 管理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간

추려 볼 必要가 있다.

나. 社會福祉部門의 主務部署인 「保健社會部」의 職制(1985年2月25日 大統領令 第11637號)에 의하면 그 第1條에 「保健社會部는 保健·防疫·家族計劃·衛生·醫政·藥政·社會福祉, 公的扶助 社會保險 및 家庭福祉에 관한 事務를 管掌한다」고 職務를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下部組織은 同令第2條에 「① 保健社會部の 政策 및 企劃을 調整하고 이를 審査分析하며 企劃, 豫算, 行政管理, 國際協力 法制 및 統計業務를 관장하기 위하여 企劃管理室을 둔다. ② 保健社會部に 總務課·保健局·衛生局·醫政局·藥政局·社會局·社會保險局 및 家庭福祉局을 둔다. ③ 長官 밑에 公報官, 次官 밑에 監査官 및 非常計劃官을 둔다」고 했다.

또한 同令 「第13條(社會局) ① 社會局에 社會課·生活保護課 및 再活課를 둔다」

③ 社會課는

1. 社會福祉行政의 綜合計劃의 樹立 및 調整
2. 社會開發에 관한 綜合計劃의 樹立 및 調整
3. 社會事業從事者の 養成 및 訓練
4. 社會福祉事務所 및 社會福祉館의 指導 監督
5. 社會福祉事業基金의 管理·運營
6. 隣保福祉事業의 指導·監督
7. 浮浪人의 保護事業에 관한 事項
8. 外國民間援助團體의 導入物資 및 現金의 管理

9. 國立社會福祉研修院 및 大韓赤十字社의 指導・監督

10. 社會福祉中央委員會 中央救護協議會 및 社會保障審議委員會의 運營

11. 社會福祉關係法人(社會福祉施設의 設立, 運營을 目的으로 하는 法人은 除外한다)과 團體의 育成 및 指導・監督

12. 其他 局內 다른課의 主管에 屬하지 아니하는 事項

④ 生活保護課는

1. 生活保護對象者の 調査 및 保護對策

2. 最低生計費 計測 및 保護水準決定

3. 生活保護對象者の 技能訓練 및 生業資金 支援

4. 自活指導事業

5. 災害罹災民의 救護 및 復舊支援

6. 救護糧穀 및 物資의 備蓄管理

7. 災害義捐金, 生活保護基金 및 災害救護基金의 管理・運營

8. 生活保護委員會 및 災害對策委員會 運營

⑤ 再活課는

1. 心身障礙者福祉行政의 綜合計劃의 樹立 및 調整

2. 心身障礙者에 관한 調査・研究

3. 心身障礙者の 發生豫防 및 再活治療

4. 心身障礙者の 職業輔導

5. 障礙者補裝具의 開發・普及

6. 心身障礙者福祉施設의 育成 및 指導・監督

第 14 條(社會保險局)① 社會保險局에 保險制度課・保險給與課 및 年

金企劃課를 둔다.

③ 保險制度課는

1. 醫療保險制度에 관한 綜合的인 計劃의 樹立 및 調査·研究
2. 第1種 및 第2種 醫療保險組合에 관한 事項
3. 醫療保險에 관한 事項
4. 醫療保險組合聯合會에 관한 事項
5. 公務員 및 私立學校職員醫療保險에 관한 事項
6. 公務員 및 私立學校任職員醫療保險管理公團과 醫療保險組合의 指導·監督
7. 醫療保險審議委員會와 醫療保險運營協議會에 관한 事項
8. 其他 局內 다른課의 主管에 속하지 아니하는 事項

④ 保險給與課는

1. 醫療保險給與基準의 設定 및 調整
2. 醫療保險診療酬價와 藥價의 算定調整 및 調査·研究
3. 醫療保險療養取扱機關의 指定에 관한 事項
4. 醫療保險療養取扱機關의 指導·監督
5. 醫療保險診療費請求의 審査에 관한 事項
6. 醫療保險給與에 관한 各種統計

⑤ 年金企劃課는

1. 年金制度에 대한 綜合的인 企劃과 調整
2. 國民福祉年金에 관한 弘報
3. 國民福祉年金特別會計의 豫算 및 決算
4. 國民福祉年金審議委員會의 運營
5. 國民福祉年金基金의 運營

6. 年金保險數理에 관한 調査・研究
7. 國民福祉年金的 統計調査 및 管理
8. 社會保險業務의 電子計算化에 관한 事項
9. 年金加入者의 資力の 記錄維持 및 管理

第 15 條 (家庭福祉局) ① 家庭福祉局에 家庭福祉課, 兒童福祉課 및 婦女福祉課를 둔다.

③ 家庭福祉課는

1. 家庭福祉行政에 관한 綜合計劃의 樹立 및 調整
2. 老人福祉行政에 관한 綜合計劃의 樹立 및 調整
3. 老人 適性職種の 開發・普及 및 雇傭促進
4. 健全한 家族制度 및 敬老孝親 思想의 維持 發展과 이에 關聯된 調査・研究, 普及 및 弘報
5. 老人福祉施設과 團體의 指導・育成 및 監督
6. 家庭儀禮의 普及 및 實踐
7. 家庭과 老人問題에 대한 相談 및 指導
8. 其他 局內 다른 課의 主管에 속하지 아니하는 事項

④ 兒童福祉課는

1. 兒童福祉行政에 관한 綜合計劃의 樹立 및 調整
2. 兒童福祉에 관한 調査・研究
3. 兒童福祉施設(障礙兒童 및 浮浪兒童施設은 除外한다.)에 관한 指導・監督
4. 어린이 집에 대한 指導・監督
5. 年長兒의 職業輔導

6. 兒童福祉事業團體의 指導・監督

7. 兒童의 國際入養에 관한 事項

⑤ 婦女福祉課는

1. 婦女福祉行政에 관한 綜合計劃의 樹立 및 調整

2. 婦女의 指導・啓蒙

3. 婦女福祉施設의 指導 監督

4. 要保護女性의 善導

5. 婦女의 職業輔導

6. 生活改善 및 消費者保護

7. 婦女團體의 指導 育成

8. 婦女關係委員會의 運營

9. 韓國女性開發院의 指導・監督

10. 婦女關係 國際協力 業務 등을 管掌하고 있다.

다. 그밖의 勞動部와 經濟企劃院의 職制 및 總務處長官 報勳處長, 建設部長官의 職務中 福祉와 關聯하는 部門을 살펴서 參考로 삼으려 한다.

1) 勞動部の 職制(1983年10月7日 大統領令 第11238號)를 보면 第1條(職務)『勞動部는 勤勞條件의 基準 勞使關係 調整, 産業安全保健, 勤勞者福祉厚生, 職業安定 및 失業對策, 職業訓練, 産業災害 補償保險, 勞動組合指導, 勞動委員會管理, 其他 勞動에 관한 事務를 管掌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2) 經濟企劃院 職制 第9條第6項에 『社會開發課』는 「社會開發

政策 및 投資計劃의 綜合 調整, 人口에 관한 豫測과 政策의 調整, 人力需給計劃 및 人力開發政策의 綜合 調整, 國民福祉에 관한 政策 및 投資計劃의 綜合調整등 事項을 分掌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또한 總務處長官의 職務中 「公務員의 年金에 관한 事務와……」, 또 國家報勳處長의 職務(政府組織法 第28條)를 「國家有功者 및 그 遺族에 대한 報勳, 除隊軍人 및 越南歸順勇士의 報償 保護와 軍人保險에 관한 事務를」 또 建設部長官은 國土綜合開發計劃의 樹立, 調整, 國土 및 水資源의 保全, 利用, 開發 및 改造, 都市·道路, 臨海工業團地內의 工業, 港灣, 住宅의 建設 海岸과 河川, 干拓에 관한 事務를…」各各 管掌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2. 現行 社會福祉傳達體系의 問題點

가. 現行 公的扶助體系

첫째, 現行의 公的扶助는 上意下達式的 垂直的인 組織으로서 最一線의 事業執行機關인 邑·面·洞事務所에는 社會擔當이라는 實務職員 한 두사람이 要保護對象者의 實態調査, 對象與否의 査定, 生活保護 糧穀의 給與, 醫療保護 診療證의 交付, 就勞證의 交付와 就勞事業의 管理, 敬老優待證의 交付등 過重한 業務를 擔當하고 있어서 要保護對象者의 實態把握이나 福祉서비스 提供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設使, 公的扶助 對象者라 하더라도 그들은 經濟的인 欲求뿐 아니라, 社會的 心理的인 複合問題들을 지니고 있는 것이 事實인데,

物質이나 金錢에 의한 단순한 扶助에 머물고 있고 단순 扶助以外의 福祉的 Service를 提供하기에는 人力도 不足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렇게 할 專門性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또한 그들 機關 內部的 人事移動이나 業務分掌이 要員의 專門性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恣行되는 예가 너무 많다. (심지어 社會福祉部署에 轉入하는 것을 一種의 左遷人事라고 酷評하기도 하고, 赴任하자 말자 他部署에로의 轉出에 힘쓰는 예도 흔히 볼 수 있었던 實例가 있다)

세째, 各 市·道·및 市·郡·區단위의 경우 生活保護·社會福祉業務 管掌部署의 人力不足과 業務量의 過重으로 邑·面·洞단위 最一線 業務執行의 效率과 適正을 기하기 위한 指導·監督의 機能을 수행하기조차 困難한 처지에 地域單位의 事業을 自體的으로 構想, 計劃하고, 實施하는 데는 企劃機能이 미약할 뿐 아니라 實際로 어려운 課題라고 한다.

네째, 要保護對象者の 調査에 있어서 資産調査를 前提로 先行하지 않은채 里長이나 統班長들이 평소 알고 있는바를 토대로 임의 선정하여 報告한 對象者를 邑·面·洞事務所에서 다시 選定하고 있어서 실제로 保護받아야할 사람이 脫落되거나 자칫 情實에 흐를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胞弱階層住民의 不平과 不滿을 살 소지가 많다.

다섯째, 公的扶助의 경우 窮極的인 目標가 對象者の 早速한 自立生活에 있는 것인만큼, 對象者 個個人の 家庭의 動態, 家族의 欲求등의 變化를 繼續的으로 追跡調査해야 함에도 現行 制度나 現實이 當該年度에 定해진 時點의 調査마저 前記한바와 같다. 그리고 調査票의 作成마저 疎漏하고 外部에 나타난 事實以外의 內面에 대한 動態 把

握에는 너무나 미흡하다.

또한 調査時點에서 對象者 선정이 끝난 뒤에 發生할 수 있는 要保護對象者의 把握이나, 實際保護에 소홀하게 되기 쉽다.(邑・面・洞長에게 保護해 줄 수 있는 재량의 機會가 부여(一 生活保護法 第3條第1項第5號 — 되어 있음)

여섯째, 最近에 흔히 볼 수 있는 일로 自願奉仕者의 問題인데, 專門人力이 부족한 우리의 現實에서는 그 地域社會內의 有志人士中 專門人을 발굴하여 業務의 支援과 과중업무를 덜기 위해서도 自願奉仕者의 積極的인 活用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現實적으로 里長・統班長이 要保護對象者 選定에 關與하고 있고, 一部人士들이 生活保護委員이나 兒童委員등으로 委囑되어 있으나, 그들의 活動은 미미한데 그치고 있어, 이들의 自願奉仕者의 士氣振作 方案의 講究가 時急하다고 하겠다.

나. 現行 社會福祉 Service 體系

1) 老人福祉

(1) 老人福祉對象人口는, 全人口의 量的 增加와 醫藥의 發達, 國民營養의 改善등에 따른 國民平均壽命의 延長등으로 인해 점차 增加趨勢에 있다. 人口의 年齡構造에서 보는 바와 같이 65歲이상의 老齡人口는 1980년에 全人口의 3.9%, 1984년에는 4.0%에 1,622千名이며, 1991년에는 5.0%로 增加될 것이라고 한다.

이와같이 老齡人口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一部の 老人들은 養老施設에의 收容保護와 居宅保護 및 醫療保護對象者로서 公共의 福祉서비

스를 받고 있으나, 그밖의 大多數 老人들에 대한 福祉는 매우 미약하다. 즉 一般老人을 위한 福祉로는 餘暇善用策의 一環으로 老人學校 敬老堂등이 運營되고 있으며, 매년 어버이날에 孝行者의 발굴시상, 경로행사의 실시와 老人 健康診斷을 해마다 20萬名 水準으로 1次 및 2次診斷을 실시하는 한편, 그들의 知識・經驗을 生産的인 方向으로 社會에 寄與하게 하기 위하여 老人 適性職種の 開發普及 및 雇傭促進策으로 大韓老人會 산하 22個所에 老人能力銀行을 運營하고 있다.

現在 老人福祉의 主된 事業의 하나인 養老施設은 保社部가 管掌하고 民間社會福祉法人體에 의해 運營되고, 이들에게 糧穀, 副食費, 燃料費등이 補助 支給되고 있다. 그밖에 老人學校 敬老堂등 地域社會 中心으로 篤志家の 후원을 받아 自發的으로 運營되고 있으나 政府에서 越冬用 燃料費등 그 일부를 支援해 주고 있으며, 80年 5月부터 실시하는 敬老優待制는 13個의 優待業種에 걸친 無料 내지 實費負擔의 서비스를 提供해 주고 있다.

老人福祉法(1981年 6月 5日法律第3453號)第4條에 規定한 대로 「國家와 地方 自治團體는 老人의 福祉를 增進할 責任을 가지고」, 老人의 心身의 健康維持 및 生活安定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講究하고 있으나 財政的 미약과 行政的 不備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일반적으로 老人에게는 經濟的 無能力에서 일어나는 扶養의 必要性, 질병 및 健康問題, 社會的 活動에의 積極的 參與에서의 疎外, 無聊등이 問題되고 있으며 不遠 다가올 高齡化 社會에 效率的으로 對應할 수 있는 綜合的 福祉對策의 講究가 時急하다.

(2) 老人福祉 Service 의 改善을 위한 方案으로서는

① 家庭에서 餘生을 보낼 수 없는 老人을 위해 養老施設을 擴充하여 그 機能을 補強하고, 一時的인 休養이나 靜養을 위한 療養施設의 設置를 圖謀해야 할 것이다.

② 地域社會의 特性이 考慮된 綜合老人福祉館을 만들어, 問題의 상담, 教育, 慰樂 Service 를 提供하는 한편, 老人 適職에 대한 職業訓練과 雇傭, 就業斡旋등에 注力해야 할 것이다.

③ 老人들의 健康問題의 심각성에 비추어 現行의 定期健康診斷制를 擴張하는 한편, 영세가정노인에 대한 醫療扶助制의 擴大로 醫療惠澤이 確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④ 餘暇善用을 위한 敬老堂, 老人亭등의 施設이 상당수 設置되어 있으나 運營에 必要한 費用이 不足하고 또 必要한 地域에 增設이 可能하도록 行政的·財政的 支援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慰樂에 必要한 器具의 設備과, 書藝, 造花, 造園, 花草의 植栽등의 指導로 活氣있고 값진 老人生活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2) 兒童福祉

(1) 不遇兒童을 위한 兒童福祉事業은 施設保護와 施設外의 事業으로 區分할 수 있는데, 施設保護事業은 無依無託한 嬰幼兒, 盲聾啞兒등의 養育施設과 職業輔導施設등을 통해 健全兒童으로서의 育성과 技術習得으로 一般社會人으로 復歸시키는데 注力하고 있다.

其他事業으로는 相談, 指導와 施設 收容兒童의 國內·外 入養과 結緣, 年長兒童에 대한 技能人化, 職業輔導 就業委託 對策이 推進되고 있다.

① 收容兒童의 保護水準向上과 施設運營 — 1983年末 現在 嬰兒施設 33 個所 2,390 名, 育兒施設 239 個所, 20,234 名, 職業輔導施設 12 個所 925 名, 身體虛弱兒施設 1 개소 51 名, 自立支援施設 1 個所 30 名 등 286 個 施設에 23,630 名이 收容保護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保護支援水準(1984 年)은 嬰兒施設の 경우 1 人 1 日 白米 288 g, 副食費 316 원, 粉乳 80 g, 燃料費 月間 811 원, 被服費 年間 39,600 원을 給與하고, 育兒 및 職業輔導施設에는 1 人 1 日 白米 432 g, 精麥 138 g, 副食費 316 원과 嬰兒施設과 같은 水準의 燃料費, 被服費를 支援하는 한편, 各 施設마다 從事者 人件費로 總務 1 人當 月 178,000 원, 保育師 1 人當 115,000 원씩을 支援하고, 施設運營費로 嬰兒 및 保育施設은 個所當 3,234 千원, 職業輔導施設은 19,696 千원씩을 支援해 주고 있다.

그밖의 農村地域에 所在하는 育兒施設中(경기, 충남, 전남) 3 個施設을 示範育兒院으로 選定하여 收容兒童에게 嚴格한 精神教育과 營農教育을 통한 農村의 營農後繼者로 育成하기 위하여, '83 年에 施設增·改築費 및 運營費로 總 467,250 千원을, '84 年에 63,375 千원을 支援한 바 있다.

② 入養委託事業 — 施設收容 兒童을 無子女 家庭에 入養시키고자 1976 年부터 入養特例法을 制定 各 市·郡·區와 社會福祉 機關 등 31 個所를 入養專擔機關으로 指定하였는바, '83 年에 3,004 名, '84 年에 3,500 名을 國內家庭에 入養시켰다. 이와같이 社會 各界 人士와 連結시킴으로써 後援者가 確保되고 一定額의 學費에 養育費를 支援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血統을 重視하는 우리나라의 傳統的 意識構造 때문에 入養事業이 매우 어려운 것이 事實이나 보다 넓은 弘報活動과 入養專擔機關에 대한 指導監督의 強化 및 活性化를 支援해야 한다.

'83 年の 경우 各界 後援者の 支援金 1,219 百萬元이 支援된바 있다. 이 事業이 당초 政府主導型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國民의 自發的인 參與가 결여돼 있는 점을 考慮하여 “韓國어린이財團”에게 委託施行하고 있는데, 繼續的인 後援과 費用의 增額을 위한 努力이 좀더 傾注되어야 할 것이다.

③ 成長兒童 技術訓練 및 職業輔導 —— 1977 年부터 施設에 收容保護中인 成長孤兒에게 職場을 알선하기 위한 事業은 '84 年度까지 11,371 名の 就業 實績을 올렸으며 이들에 대하여는 各 企業體에 就職시키는 동시에 各市道 責任下에 마련된 後援會(兒童委員, 地域社會有志人士, 施設長들로 構成됨)가 勤勞 및 就業條件, 處遇給料 등과 身上에 대한 咨문과 相談役割을 擔當하는 한편, 이들의 完全自立을 돕기 위한 기숙사의 마련 또는 숙식의 便宜 제공, 自立基金의 造成 등에 注力하고 있다.

특히 收容保護施設의 退所豫定者中 中卒以上の 學歷所持者는 公共職業訓練所에 入所시키고, 기타 就業對象者는 大企業體의 社內職業訓練所 및 兒童職業輔導施設에 入所시키거나 個人事業場에서의 技術訓練習得으로 就業할 수 있는 與件을 마련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專門的 職業訓練施設이 不足하고 成長孤兒에 대한 一般社會人の 편견이 拂拭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스스로의 職場適應에 必要한 補完的 教育도 不足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積極

的인 強化가 要望되고 있다.

④ 託兒事業 — 核家族化的 進展과 女性的 社會進出, 就業增加 등으로 家庭內에서 保護하기 어려운 幼子女를 위해 內務部主管下에 있는 새마을幼兒院事業과 連繫되어 運營하고 있는 託兒事業은 託兒施設로서의 擴充이 緊要하다. 社會的인 要請에 副應하고 棄兒 및 浮浪兒의 未然防止, 勤勞 能率의 向上과 安定, 施設收容兒童對象數의 減少 등 期待效果를 勘案하여 보다 積極的인 展開가 아쉽다.

⑤ 靑少年 善導 및 保護 — 保社部の 主管이 아닌 事業이기는 하나, 兒童福祉와의 連繫에서 중요한 對策의 하나이다.

不遇兒童의 健全育成과 未婚母의 發生豫防, 缺損家庭의 子女保護 등은 장래의 中樞的 人力養成에도 重要한지만 社會의 健全化나 明朗化에도 크게 奏效한다. 따라서 ④ 靑少年의 善導에 有害한 食品接客業所 및 電子娛樂 등 遊技場의 出入·營業時間의 制限, 麻藥, 본드 幻覺劑에 대한 接近防止를 위한 弘報教育 및 醫藥監視를 強化해야 할 것이고

⑥ 各種 弊害로 인한 缺損家庭의 子女保護와 더불어 缺損要因의 排除를 위한 連繫對策의 講究가 切實하다고 하겠다.

㉔ 少年矯導施設의 擴充과 教育訓練의 活性化의 圖謀를 促進하는 한편, 兒童福祉施設中 教護施設로 改編한 施設에 있어서의 一般教育, 精神教育, 職業教育 등의 強化와 教護施設의 強化가 要望된다.

⑥ 兒童相談·指導 — 兒童相談所는 兒童福祉行政의 最一線 專門機關으로서 要保護兒童의 發生을 未然에 防止하는 豫防的인 役割과 要保護兒童이 發生했을 경우에는 診斷과 處遇를 할 수 있는 臨床的 機關으로서의 役割을 하도록 하는 중요한 兒童福祉機關의 하나이다.

이 相談所는 地方自治團體와 社會福祉法人 및 財團法人등이 設置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다만 地方自治團體가 設置한 兒童相談所만이 兒童福祉行政機關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兒童相談所는 人口數, 人口密度, 靑少年犯罪發生件數, 要保護兒童數, 交通事情등을 考慮하여 市民의 利用에 便利하고 그 機能을 充分히 發揮할 수 있는 場所에 設置해야 한다.

兒童相談所에 從事하는 兒童福祉指導員은 그 管轄內의 兒童 또는 임신부에 관계되는 家族 또는 關係人에 대한 相談과 兒童指導에 必要한 家庭環境의 調査, 入養, 委託保護 및 居宅保護를 決定하는 일등을 擔當한다. 그밖에 兒童福祉施設 또는 要保護兒童의 調査指導 監督을 행하고, 兒童을 위한 地域社會資源의 발굴·활용을 알선하며 兒童과 임신부에 대한 專門的 技術的 指導를 행한다.

現在 304 名の 兒童福祉指導員(6級以下の 別定職公務員)이 勤務하고 있다. 이밖에 自願奉仕者로서 兒童福祉指導員이 있으며 10,020 名の 兒童委員이 있어, 이들은 地域社會의 兒童福祉 向上을 위하여 相互協助하며 活動하고 있다.

兒童의 相談指導는 一般家庭의 兒童에 관한 相談, 問題를 가진 兒童의 保護措置에 관한 相談, 임신부에 관한 相談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問題兒童의 保護, 施設에 收容되어 있는 兒童의 指導에 관한 相談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⑦ 兒童福祉擔當部署의 擴大 및 靑少年 善導對策의 連繫 強化
— 兒童福祉의 主管部署는 保健社會部로, 要保護兒童의 施設收容保護와 施設의 運營指導, 入養 및 結緣事業, 成長孤兒의 職業訓練과 就業斡旋,

兒童福祉 相談 및 指導等 事業을 管掌하고 있다. 內務部の 治安本部, 法務部에서는 靑少年 犯罪와 非行에 관한 業務를 擔當하고 있으며, 國務總理를 委員長으로 하는 靑少年對策委員會가 設置돼 있어, 靑少年 善導 및 保護에 관한 綜合的인 對策을 審議 調整하는 機構가 國務總理室에 所屬돼 있다.

그리고 兒童福祉의 咨問과 行政的 支援機構로 保健社會部內에 中央 兒童福祉委員會가 서울特別市, 釜山市 및 道에 地方兒童福祉委員會가 設置돼 있어 兒童福祉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을 關係機關에 建議하게 하고 있다.

이와같이 兒童福祉와 靑少年福祉에 관한 管掌部署는 綜合的인 體系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 部處에 分散되어 있어 有機的 綜合的인 連結과 紐帶·協助體制的 마련이 時急한 實情에 있다.

그러한 가운데 社會는 急激하게 變化하고 있어 市民의 生活樣式이나 意識構造, 價值觀등이 점점 多樣化하고 있어 兒童 및 靑少年에게 미치는 影響이 크고, 生活水準이 낮거나 環境의 劣惡등으로 이들의 問題는 더욱 深刻하기 때문에 이에 適切한 對應策의 講究가 時急히 要求되고 있다.

(2) 兒童福祉의 綜合的인 改善方向을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을 것이다.

① 兒童福祉는 兒童의 欲求와 問題를 解決하고 보다 나은 人間的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社會的서비스이며, 또 멀지 않은 장래에 이 땅의 主人이 될 貴重한 人力이므로 兒童·靑少年問題는 國家的인 綜合對策이 必要하다. 지금까지의 無依無託한 兒童의 收容保護

에서 進一步하여 一般 兒童・靑少年의 福祉政策으로 轉換되어야 할 것이다.

② 兒童問題의 해결을 위해서는 家庭과 學校・社會등의 三位一體의인 連繫體制의 確立이 重要하다. 問題兒童의 發生要因이 複合의인 것이므로 그 發生을 豫防하기 위해서는 健全한 社會, 健全한 家庭, 着實한 學校教育에 바탕해야만 可能할 것이다. 學校教育이 제대로 役割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健全한 家庭과 社會의 뒷받침이 이룩돼야 한다.

③ 社會의 急激한 變動과 價値體系의 混亂과 갈등으로 인한 家族의 解體, 各種 社會의 害惡으로 인한 缺損家庭의 續出등은 問題 兒童의 增加는 必然的이기 때문에 健全한 家族關係의 維持 發展에 注力하는 것이 곧 兒童 靑少年對策과 直結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④ 따라서 既存의 兒童福祉相談機關의 增設과 그 機能의 擴充 強化와 더불어 兒童專門研究所를 設置하여 專門家와의 協助를 얻어 問題解決의 方向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零細民의 子女를 위하여 技術習得을 위한 職業訓練施設을 擴大하고 技能人에 대한 職業輔導를 통해 人力開發의 效率化와 自立自活을 促求하도록 해야 한다.

勤勞女性의 子女들의 健全한 育成을 위해 새마을幼兒院과의 紐帶를 強化하는 한편, 家庭에서 保護받기 어려운 兒童을 위해서는 入養委託, 家庭委託등 適切한 對策이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 놀이터, 兒童公園, 兒童會館, 福祉館등을 增設하여 趣味 娛樂과 餘暇善用의 機會를 부여하여, 보다 밝은 成長을 圖謀해야 할 것이다.

3) 婦女福祉

(1) 女性の 資質開發과 社會參與 機會의 擴大 —— '83 年에 女性專門機關인 “韓國女性開發院”이 發足되어 女性問題의 調查研究, 教育訓練, 女性適合職種の 開發 및 福祉示範事業의 展開, 女性團體의 指導育成, 情報交流 女性分野의 國際協力등 事業을 積極的으로 推進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83 年 12 月에는 國務總理를 委員長으로 하는 “女性政策審議委員會”가 設置되어 各部處에 散在돼 있는 女性政策을 보다 綜合的・體系的으로 推進할 수 있게 되었으며, 保健社會部에는 “女性政策審議實務委員會”가 構成되어 있어 審議會의 議案에 대한 事前의 檢討・調整 및 有關機關間의 實務的 協助가 이루어지고 있다.

① '84 年 3 月 女性政策審議委員會에서 議決한 “女性發展 基本計劃”을 韓國女性開發院이 맡아 그 試案을 作成하여 關係部處와의 協議를 거쳐 '85 年末까지는 完成될 것이다. 이 基本計劃을 통해 雇傭・保健・教育・婦女福祉등 各分野別로 長・短期計劃段階別로 關係機關에 의해 積極 推進해 나갈 것인바 자못 期待가 크다.

② 女性の 社會參與 擴大를 위해, 男女差別 改善指針을 作成하여 政府施策에 反映토록 하는 한편, 民間에게도 勸告하도록 하였다.

③ 韓國女性開發院內에 女性の 遊休人力의 活用을 積極化하기 위해 “自願奉仕人力銀行”을 設置 運營하고 있는데 '84 年の 경우 自願奉仕者 3,000 名을 募集, 年 12 回の 教育을 實施한 後, 自願奉仕需要 機關에 連結시켜 주었다고 한다.

④ 勞働供給이 需要를 능가하는 우리의 실정에서 女性就業이 不利한 位置에 있으므로, 女性에게 適合한 職種을 開發, 研究하여 女

性就業의 擴大에 寄與하리라고 한다.

(2) 女性能力 開發을 위한 教育訓練 — ② 零細女性の 能力開發과 就業擴大를 위하여, '83 年の 경우 8 個月間 총 256 名에게 洋裁, 手藝, 機械刺繡, 美容, 調理 등 5 個科目的 職業訓練을 實施, 82 %의 就業率을 나타낸바 있고, '84 年에는 240 名을 年 2 回 5 個月씩 教育시켜 就業 斡旋 및 事後管理에 臨하고 있다.

② '83 年の 경우 市道 婦女係長, 女性會館 實務者 自願奉仕者들을 對象으로 同居夫婦結婚式 推進事業의 趣旨, 幸福한 家庭生活을 위한 夫婦 教養講座, 結婚式 舉行에 必要한 實務, 自願奉仕者 活動要領 등 自願奉仕者 教育을 實施한바 있고, '84 年에는 女性福祉 分野에서 일하는 公務員 및 女性團體 實務者를 對象으로 年中 8 回 50 名씩 총 400 名을 女性指導者로서의 行政實務 및 管理者로서의 能力培養을 위한 教育을 實施하였다.

(3) 要保護女性の 福祉增進

① 母子保護施設의 保護水準의 向上 — 13 歲末滿의 子女 2 人以上을 扶養해야만 하는 不遇零細 未亡人을 32 個所의 施設에서 2,936 名을 保護하고 있는데, 施設의 改善費, 從事者 人件費의 補助등으로 '83 年에 521 百萬元, '84 年에 566 百萬元을 支援했다.

② 淪落女性과 家出女性, 未婚母, 不遇零細 女性들을 收容保護하는 婦女職業輔導所 20 個所를 運營, 6,178 名('83 年)에게 精神教育과 職業訓練을 實施한바 있는데, 이들의 生計費, 資材代, 機關經費, 從事者 人件費등으로 '83 年에 498 百萬元, '84 年에 559 百萬元을 支援했다.

③ 要保護女性の 發生을 未然에 防止하고, 이들을 善導하기 위해 各市・道, 市・郡・區의 20 個所에 婦女相談員 261 名을 配置하고 있다. 相談員은 身上問題, 就業, 家族生活등에 對한 相談을 통해 緣故者에의 引繼, 施設에의 入所, 就業斡旋, 結婚仲媒등의 措置를 취하고 있다.

(4) 婦女福祉 增進을 위한 國際協力과 女性團體의 指導育成

① UN女性 10 年事業(1976 ~ 1985)을 評價하는 大會에 韓國代表團이 다수 參席하였으며, 지난 '83 年 12 月에는 “ 80 年代 女性發展計劃에 대한 아시아地域 워크숍 ”을 서울에서 開催한바 있고, 海外僑胞 女性團體의 幹部 및 會員을 招待, 大韓民國 國民으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갖도록 産業視察, 有功者表彰, 晚餐會 開催등 激勵行事도 實施하였다.

② 女性團體協議會을 비롯한 총 57 個의 女性團體가 총 4,644,580 名の 會員을 갖고 消費節約, 自願奉仕, 生活의 合理化, 女性資質 向上, 不遇이웃 돕기 등 各種事業을 展開하였으며, 女性의 社會活動의 母體가 되고 있다.

새마을婦女會는 '83 年末 現在 全國에 115,152 個에 총 3,498,474 名の 會員이 있는데 主로 教養事業, 所得増大, 隣保活動, 貯蓄増大, 家族計劃事業등을 통하여 地域社會 發展에 앞장서고 있다. 새마을婦女會의 活動을 支援하기 위해 '83 年에 “ 生活의 合理化 ” 冊子 10 萬부와 “ 健全한 海外旅行 ” 1,000 部를 製作하여 配付한바 있다.

새마을婦女會의 活性化를 위해 示範마을을 都市型 農村型 2 個를 選定하여 女性教育 및 示範事業을 支援・指導함으로써 地域住民에 대한

自願奉仕의 生活化 및 地域社會 開發을 위한 活性化 方案을 提示한 바도 있다.

(5) 婦女福祉의 增進策으로서는, 家庭과 社會參與의 兩立과 調和를 期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女性에게 不利한 家族法의 改正과 더불어 女性에 대한 雇傭機會를 擴大하기 위한 女性雇傭促進法 등의 制定도 必要하며, 勤勞女性의 低賃金의 是正, 採用과 昇進에 있어 差別待遇의 撤廢, 結婚退職과 早期定年制 不當解雇 등이 是正되어야 할 것이다. 女性勤勞者의 福祉增進을 위한 相談과 娛樂, 스포츠, 休養 레크레이션 등의 擴大로 情緒的 安定과 健康維持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母性の 保護와 福祉向上을 위해 産前産後의 有給休暇와 健康管理을 위한 定期檢診과 醫療서비스의 擴大, 분만비, 출산수당, 育兒手當 등 社會保障的 給與의 擴大 講究가 必要할 것이다.

各市道, 市郡區에 設置된 相談所를 增設하고, 相談要員을 大幅 增員하여 貧困 家庭生活의 不滿, 社會適應의 不調和 등에 대한 相談, 指導의 強化로 無斷家出이나 家庭內의 分解를 事前에 豫防하는데 注力해야 할 것이다.

不遇女性, 未婚母 등의 再活과 自立을 위해 職業訓練을 더욱 擴充 強化하여 就業이 可能하도록 1人1技以上の 技術을 習得시켜 就業을 斡旋해 주는 한편 生業資金의 貸付 및 長期低利償還制 등으로 經濟的 自立을 促進해야 할 것이다.

4) 心身障礙者福祉

(1) 現 況

① 우리나라의 心身障礙者數는 '84 推計人口에서 963,300 名으로서, 肢體障礙者 636,800 名, 精神薄弱者 46,200 名, 視覺障礙者 44,300 名, 聽覺 및 言語障礙者 157,000 名, 其他障礙者 79,000 名으로 推定하고 있다.

이러한 心身障礙者는 治療(50.4%), 就業(9.9%), 教育(9.7%), 職業訓練(5.1%), 施設에의 入所(4.6%), 其他(20.3%)등을 希望하고 있었다.

② 障礙者福祉施設을 보면 '83 年の 경우 肢體障礙者施設 28 個所에 3,077 名, 精薄者施設 29 個所에 3,301 名, 聽覺, 言語障礙者施設 12 個所에 970 名, 視覺障礙者施設 10 個所에 652 名등 總 81 個所에 8,021 名이 收容保護되고 있으나 需要에 비해 絶對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 '82 年 5 月 부터 4 個 類型의 再活施設로 轉換하고, 再活에 必要한 施設・裝備 및 再活專門要員을 年次的으로 擴充해 나가고 있다. 즉,

障礙者福祉施設을 障礙의 種類, 障礙程度에 따라 專門化하기 위해, 重症障礙者를 위한 療養施設, 職業訓練을 받거나 適性訓練을 받은 後 그 施設內에서 職業에 従事할 수 있는 勤勞施設, 그리고 在家障礙者를 包含하여 모든 障礙者들이 通院하면서 綜合的인 再活 Service 를 받을 수 있는 綜合福祉會館등의 設置 擴大를 推進하고 있다.

또한 既存의 老朽施設을 増・改築하고 施設內 再活事業이 可能하도록 再活技法의 普及, 再活專門要員의 配置, 物理治療室, 作業治療室의 擴張 施設 裝備의 現代化를 도모하고 있는데, '83 年の 경우, 療養施

設 2 個所 新築, 10 個 施設の 増改築 5 個所の 再活裝備 補強, 2 個所の 醫療再活施設 2 個所の 物理治療室 2 個所の 作業治療室, 8 個所の 職業訓練室 등 14 個所に 再活機能을 擴充補強 한바 있다.

또한 國立覺心學院을 擴大 改編하는 方式으로 '82 年부터 '85 년까지 60 億원을 投入, 障礙者 再活에 必要한 專門人力과 各種 裝備를 갖추고 再活事業의 示範的 運營을 통하여 그 運營모델을 地方自治團體나 民間法人에 擴大 普及하기 위한 目的으로 國立再活院이 建立되고 있다.

이밖의 零細障礙者에 대한 補裝具支給事業과 視覺障礙者에 대한 點字圖書의 製作·普及도 推進하고 있으나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③ '88 年 서울障礙者올림픽大會를 위한 大會基本計劃을 樹立하고 自願奉仕者 700 名을 모집 同 大會 準備에 萬全을 期하는 한편 '85 年 10 月 城南市에서 " '85 年 全國障礙者 體典 " 을 開催한바 있다.

지난 '81 年 UN이 " 세계 장애자의 해 " 로 정한 以來 세계 各國의 障礙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福祉增進을 위하여 多角的인 活動을 展開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우리나라도 心身障礙者福祉法이 制定되고 專擔機構로 再活課가 設置되었다. 그리고 WHO에서도 障礙者의 發生豫防을 위하여 1 次保健醫療 (Primary Health Care) 의 기반 擴充에 注力하고 있다. 또한 國際民間團體들의 活動도 括目할만하여 國際間의 技術協力이 增進되고 있다.

④ '88 年 第 8 回 障礙者올림픽大會의 서울開催는, 人道主義精神을 國際社會에 널리 闡明하여 信賴度を 높이며, 障礙者와 그 家庭에 希望과 勇氣를 불려 일으키면서 障礙者 福祉向上 및 障礙者스포츠의 基盤造成을 위한 劃期的인 계기가 造成되는 것이다.

이大會의 보다 알차고 內實있는 準備를 위하여 '84年5月大會 準備委員會를 마련하였으며, 이大會에 소요되는 人的 物的資源을 效率的으로 運用하고 各種 競技場, 宿所등 施設物은 既存施設의 活用 등으로 經濟的 負擔을 最少化하려고 努力하고 있다.

⑤ 障礙者福祉에 關聯하여 軍事援護補償法에 의한 障礙者의 福祉措置와 産業災害補償保險法 公務員年金法 軍人年金法, 私立學校教員 年金法등에 의한 障害給與와 앞으로 實施될 國民福祉年金法의 障礙年金등의 福祉措置도 考慮되어야 할 問題이다. 또한 特殊教育振興法에 의한 教育과 職業輔導등이 有機的인 連繫協助體制下에서 障礙者의 福祉增進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2) 心身障礙者는 社會心理的인 諸問題와 經濟的 취약성으로 인한 社會에서의 冷待나 疎外, 그리고 社會發展 趨勢로 보아 앞으로 더욱 頻發·增加할 것이 豫想되고 있다. 이러한 問題로 障礙者들만이 問題가 아니라 社會全體의 問題로 理解되어야 하고, 이에 適切한 對應策의 講究가 時急하다고 하겠다.

① 障礙發生을 豫防하기 위해서는 豫防에 必要한 教育과 障礙者의 早期發見과 早期指導를 통한 障礙의 深化를 防止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新生兒 및 임산부의 訪問教育, 養育指導를 하여 母子保健을 增進시키며, 嬰幼兒에 대한 健康診斷의 定期的 實施, 可妊女性에 대한 禁酒 禁煙教育, 藥物中毒, 傳染病 感染, 老人健康에 대한 保健教育등의 強化에도 注力해야 할 것이다.

또한 交通事故, 産業災害등 安全事故의 發生을 豫防하는 對國民教育을, 産業化過程에 야기되는 環境의 汚染을 極少化하고 有害事業場에

대한 汚染防止施設을 철저히 하도록, 強力한 公害對策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③ 障礙者가 있다는 事實의 노출을 꺼리는 社會風土에서는 1次的으로 障礙者나 그 家族이 相談할 수 있는 機會가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既히 活動하고 있는 保健診療員이나, 保健支所, 兒童相談所, 婦女相談所등을 相談機關으로서 役割하게 하는 한편, 必要한 地域에는 障礙者만을 對象으로 하는 專門相談施設을 새로이 마련할 必要도 있다.

障礙者の 福祉向上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障礙者에 대한 實態와 그들의 欲求가 正確히 把握되어야 하는바, 이 相談機能을 통해 障礙者 登録制를 定着시키고, 專門要員에 의한 適切한 區分措置 즉, 障礙者專門施設에의 收容 또는 在家서비스, 補裝具의 供給등으로 對應이 용이해질 것이다.

③ 障礙者の 福祉要求 중에서 醫療再活이 強烈하다. 이에 效果的으로 對應하기 위해 各醫科大學에 再活醫學專門醫課程을 설치하였으므로 綜合病院 및 病院등에서 再活醫科의 設置를 促求해야 할 것이고, 醫療再活專門醫를 助力할 物理治療士, 作業治療士등 再活醫療技士의 養成을 擴大해야 할 것이다.

醫療再活의 強化와 더불어 障礙者の 適性の 評價, 職種開發과 職業訓練, 就業斡旋등 職業再活事業도 뒤따라 擴張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障礙者 技能大會, 體育大會등 社會的 活動에의 參與를 誘導할 수 있는 障礙者스포츠 센타 또는 障礙者 레저타운의 設置도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④ 醫療再活施設の 擴大와 適正한 配置는 在家障礙者에 對한 福祉서비스를 增進할 수 있는 機會가 提供될 수 있다. 즉 障礙者가 家庭에서 生活하면서 治療와 教育 訓練을 通院서비스로서 提供받을 수 있으며 補裝具의 支給과 修理代替도 可能하며 나아가 障礙者를 扶養 해야하는 家庭의 經濟的 負擔을 經減시킬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 既存 施設에 對한 再活機能施設の 補強은 물론, 特定 地域社會內的 全障礙者가 活用할 수 있는 綜合再活福祉館, 障礙種別에 다른 專門福祉館등을 新設하여 國立再活院, 國立醫療院등 高度의 專門 施設과의 連繫體制로 施設の 現代化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⑤ 앞에 列舉한 福祉事業들이 效率的으로 이루어지려면 各部 處에서 分掌하고 있는 各種 障礙者福祉對策에 關한 調整機構를 設置 하여 福祉서비스의 合理的 提供을 도모하고, 이러한 福祉서비스의 效果的인 傳達體系의 確立이 時急하다.

傳達體系의 確立이 國家의 財政形便上 專門分野別로 一線 行政機關 이 設置되기 어려운 段階에 있어서는 最少限度 福祉事務所라도 優先 設置하여 心身障礙者 兒童 및 靑少年 老人과 婦女子등이 안고 있는 問題의 相談 指導를 비롯하여 各個 福祉欲求에 相應한 福祉의 措處를 講究할 수 있는 機會를 마련해야 할 것이고, 各種 福祉施設과 의 連繫 및 地域社會 資源의 발굴과 民間資源의 活用策도 開發될 수 있을 것이다.

3. 問題의 解決方向

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公共의 社會福祉서비스는 中央政府나 地方自治團體의 財政에 의해서 要保護對象者에게 거의 無償의 援助形態로 提供되기 때문에, 이를 傳達하는 體系는 一般行政體系와는 다소 다른 前提와 原則 밑에서 計劃되고 運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社會福祉서비스의 傳達體系는

첫째 ; 受惠對象者의 尊嚴性에 관한 問題의 考慮이다. 一般的으로 社會福祉서비스對象者, 특히 公的扶助對象者는 自力으로 生計을 維持하기 困難한 階層으로서, 勤勞를 통해서 자기의 生活을 營爲해야 하는 現代 產業社會에서는 國家 社會의 負擔的인 存在로 여겨진다.

그러나 社會福祉서비스는 受惠對象者의 尊嚴성과 價値를 確認하고 그들의 要求에 副應하고 또 潛在能力을 發揮할 수 있도록 提供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개 充分한 資産이나 所得을 갖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生活이 保障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生活의 保障이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權利로서 保障되어야 하는것이 現代의 思潮이다. 이러한 生存權의 基本權은 勤勞能力이 있는 者에게는 就業의 機會賦與로서 勞動權의 問題로 發展되어야 할 것이지만, 勤勞能力이 없는者, 各種의 社會的 事故에 의하여 그것을 喪失한 者, 勤勞의 機會를 喪失한 者, 所得이 微少한 者 등에 대해서도 適切한 生活保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福祉서비스가 提供되는 과정에서 그러하지 못한 경우가 許多하였다.

둘째는 受惠對象者의 needs 에 相應하는 Service 가 提供되어야 한다. 즉 모든 社會福祉서비스는 그 對象이 個人이던 集團이던 地域社會이던 그 對象이 needs 에 알맞는 것이어야 한다. 비록 公的扶助對象者라 하더라도, 그 個人이 지닌 needs 는 經濟的인 것 뿐 아니라 社會的 心理的 生理的인 것등 包括的인 것이며, 個人과 家庭에 따라 그 needs 는 다양해지고 또 程度의 差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特殊한 needs 를 充足시킬수 있어야 한다.

세째는, 受惠對象者 居住地의 特性에 따른 問題인데, 같은 公的扶助對象者라도 個人과 家庭에 따라 다르듯이 그가 居住하는 地域과 環境에 따라 다를 수 있다. 一般的으로 都市地域과 農村地域 對象者間의 差異는 널리 認識되어 選別的인 서비스가 傳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地方間의 差異나 同一 行政區域內에 있어서의 地域의 特性이 無視되거나 疎忽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 現實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이러한 特性을 考慮하고 그 特性에 相應할 수 있는 서비스傳達體系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네째는, 受惠者의 參與問題인데 現代社會의 福祉制度에 있어서 特徵的으로 나타나고 있는 現象으로 政府主導건 民間主導건 서비스의 傳達體系內에 있어서 政策決定과 事業執行에 社會福祉對象者를 積極的으로 參與시키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는 福祉에 대한 概念이 지난날의 施惠的인 性格에서 進一步하여 보다 積極的인 權利保障에도 發展하였으며, 특히 民主主義社會에 있어서는 自己의 生活保障에 影響을 미치는 일에 參與하는 것은 義務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록 公的扶助가 政府에 의해서 一方的으로 傳達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도 이에 受惠對象者가 어떤 形態이던 參與하게 해야하고, 또 窮極의
으로 그의 自立自活을 위해서도 매우 必要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社會福祉서비스 傳達體系는 對象者의 다양한 needs 를 確
實히 理解하기 위해서도 또 業務自體의 正確한 分析과 評價, 事業
의 展開方案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對象者와 더불어 問題를 診斷하고
解決을 위한 協同과 努力이 傾注되어야 하겠다.

다섯째는, 可用 資源을 效率的으로 動員하는 問題인데 社會福祉서
비스傳達體系가 效果的으로 機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利用 可
能한 모든 物的 人的 資源을 動員하는 것이 不可避하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國家의 財政이 貧弱한 現實에 있어서는 公共의 福祉서
비스라 할지라도 民間資源을 效率的으로 動員하여 이를 受容하고
積極 活用하는 方案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나. 社會福祉서비스의 傳達

1) Social Work 의 普遍的 原則에서 言及하겠으나 社會福祉서
비스의 提供에는 그 基本的인 것으로 Social Case Work 의 方法이
있다.

「사람」을 個別的·社會的인 諸條件에 卽應해서 援助·相談을 해주
는 이 專門的인 方法은 社會福祉의 實踐活動에 있어서 가장 立脚이
發達하였고 또 體系化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個別處遇, 個別指導, 個人生活指導, 個別社會事業 등으
로 理解되어 왔으나 最近에는 Case Work 이란 原語대로 使用되고
있다.

「사람」이 日常生活을 營爲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困難 或은 많은 問題를 지니고 있는데 이에 대한 處理나 對應이 適切하지 못하여, 外部의 具體적인 서비스나 人間關係의 調整등의 援助를 받지 않으면 解決될 수 없는 상황에 臨하여 社會적인 援助를 주는 專門의 方法이 Case Work 이다.

社會的이라고 하면, 一般的으로 社會體制라던가 社會構造라던가 하는 거시적인 見解를 생각하기 쉽지만 Case Work 에 있어서의 社會的이란 普通人的 日常的 社會生活을 營爲하고 있는 狹義의 環境狀況과 家族內的 小集團에 있어서의 人間關係와 社會的 役割關係등을 의미한다. 이 社會적인 狀況에 있어서 困難과 問題에 直面하여 社會福祉機關에 援助를 要求하거나, 問題解決을 위하여 내방하는 「사람」을 對象者, 要保護者 즉, Client 라고 부르고 있다.

이 Client 은 社會福祉機關에서의 具體的 서비스와 相談을 받고 싶다고 自己의 意志를 決定하기 까지에는, 嚴密하게는 “申請者” “來訪者” 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이다.

이 申請者인 「사람」은, 憲法 第8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國家는 國民의 基本的 人權을 最大限으로 保障할 義務를 진다」 또 同第9條 「모든 國民은 法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 宗教,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또 同第32條에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의 增進에 努力하여야 한다. ③生活能力이 없

는 國民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고 規定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國民은 누구든지 基本的 人權과 生存權을 가지고 있는 人間이다. 즉 「心」·「身」을 갖춘 個體的 人間이다.

從來에는 Client 란 生活困窮者나 自立할 수 없는 者, 즉 要保護者로서 區別되고 差別받기도 하였다. 生存權은 觀念的인 權利로서는 存在하였으나 Client 는 「사람」으로서 取扱되지 못한채 援助의 對象으로 處理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도 申請者는 社會福祉機關에 있어서 援助를 주는 者와의 接觸을 통하여 主體的으로 自己 意志로서 機關의 對象者, 즉 Client 가 되는 것이다. 이때 비로소, 이 「사람」은 個別化되어 取扱되며, 個人으로서 Case Work 의 對象이 되는 것이다.

社會福祉機關에서 이 個人과 더불어 個別的으로 問題와 困難의 解決을 擔當하는 援助者를 Case Worker 라고 부르며, 이 Worker 는 Client 의 問題解決을 위한 專門的 機能을 具備한 觸媒 惑은 媒體인 것이다.

社會福祉機關에서 具體的인 援助를 要求하는 Client 를, Case 「事例」, 「事件」이라고 부르며, 處遇 援助의 對象이 되는 사람의 狀況 또는 問題를 意味하여 使用되고 있다. 이것은 Case Work 의 用語의 意味를 나타내는 것으로, Case Worker 는 Client 에 對하여 適切한 援助·處遇가 될 수 있도록 廣義의 社會福祉에 대한 知識을 前提로 하여, 個人으로서의 對象者와 그 問題에 關係되는 個人의 Personality 에 관한 理解 및 人間行動의 力學에 관한 科學的 知識을 學習해야 하는 것이 要請된다.

2) 社會福祉의 方法

가) 問題의 解決目標가 있어 그 目標達成을 志向한 가장 合理的인 過程이 쌓이고 쌓여서 定着된 것을 「方法」이라고 한다면, 社會福祉도 그러한 意味에서의 獨自的인 問題(對象)와 目標(政策)에 알맞고 또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相互 矛盾된 期待와 勢力과 갈등으로 부터 생겨난 「方法」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을 크게 세 가지로 區分할 수 있다.

첫째는 政策의 實施 즉 施設과 制度로서의 그 實質的인 展開에 있어서의 方法이며, 둘째는 그들 施設의 運營과 對象者에의 直接的서비스의 提供에 있어서의 方法이고, 셋째는 그와 같은 施設·制度서비스의 改善을 위한 恒常的인 組織과 그것을 위한 方法이다.

보통 社會福祉의 方法으로서의 둘째의 對象者에의 直接的서비스에 있어서의 方法, 卽 Case Work, Group Work, Community Organization을 中心으로 하는 方法과 技術이 論議되는 일이 많으나, 우리들이 社會福祉方法을 全體的으로 把握하는데는 보다 넓은 視野에 입각하여 구명해 보는 것이 要求된다.

가령, 貧民이나 低所得者에 대한 援助라고 하는 社會福祉의 傳統的인 面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그 展開過程에서 歴史的으로 여러가지 方法이 취해져 왔음을 볼 수 있다.

英國의 例에 있어서 17世紀의 “에리자베스救貧法”의 時代에는 「就勞強制」라는 政策이 勞役場과 救貧院이라는 方法을 낳았고, 18世紀末에 이르러서는 院外救濟(居宅保護)라는 方法이 提唱되었다. 同時에 자선사업으로서의 貧民教育의 普及도 있었고 病院 및 診療所의

設立, 그리고 退院者の 經濟的 援助등도 시작되었다. 居宅保護, 勞役場收容, 協同組合과 友愛組合에 의한 共濟活動으로 부터 19世紀의 C·O·S運動에로, 다시 20世紀에 이르러 失業救濟事業, 學童 無料給食, 無醵出老齡年金, 最低賃金制, 健康保險, 失業保險등 各種의 社會政策에 의하여 貧困者の 處遇方法이 크게 變化해 왔다.

이러한 여러가지 「方法」에는 各各 그 時代의 對象의 特性和 그것에 對應하는 政策의 性格이 예민하게 內藏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를 들추어 보아도 歷史的인 必然이었던 것을 想起할 수 있다.

이 範疇에 속하는 方法은 社會問題의 性格을 一般的으로 特히 發生的으로 把握되어 그것에 組織的인 對處方式으로서 定着돼 왔다고 하겠다.

이러한 觀點에서 이웃 日本의 社會福祉方法中 主要한 것을 參考삼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金錢給與 및 貸付(生活保護·各種福祉年金, 兒童扶養手當, 世帶更生資金, 母子福祉貸付등)

② 關聯 福祉施設 制度의 特別한 提供(公益典當舖, 低家賃住宅, 身體障礙者手帖에 의한 交通費의 割引, 家庭奉仕員의 派遣, 點字圖書館의 設立등)

③ 育成, 更生을 위한 一時的收容(養親養緣, 教護院, 一時保護所, 母子院, 精神薄弱兒通院施設 少年院, 保護觀察등)

④ 育成 厚生施設의 提供(어린이會, 兒童厚生施設, 老人俱樂部 어머니會, 保育院등)

⑤ 保護·養護施設에의 收容(救護施設, 乳兒院, 養護施設, 精神

薄弱者施設, 養護老人ホーム, 身體障礙者收容, 援護施設等)

⑥ 醫療, 特殊教育을 위한 施設에의 收容(虛弱兒施設, 助產施設, 情緒障礙兒短期治療施設, 精神薄弱兒施設, 肢體不自由兒施設, 特別養老人ホーム等)

⑦ 職業訓練의 特別한 提供(內職公共職業輔導所, 職業訓練所, 身體障礙者職業訓練所)

⑧ 職業安定의 機會賦與(簡易內職斡旋所, 公共施設內의 賣店, 理容所의 提供, 煙草小賣人의 指導, 職親에의 委託等)

⑨ 相談 — 診斷・斡旋・措置(身體障礙者更生相談所, 精神薄弱者更生相談所, 福祉事務所, 保健所, 精神衛生相談所, 各種相談所 및 巡廻相談을 包含)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社會福祉의 여러가지 方法에는 그 時代와 對象의 特性和 그에 對應하는 政策의 性格이 잘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도 第2次大戰의 終戰으로 解放되면서 海外 歸還同胞의 生活維持保護를 위해 1948년에 社會福祉 機構로서의 社會部 厚生部 勞動部 保健部등이 設置된바 있고 6·25 動亂後에는 戰災民의 保護와 社會復歸를 위해 1960년에 生活保護法, 兒童福利法, 淪落行爲等 防止法이 制定된바 있고 1981년에는 老人福祉法, 心身障礙者福祉法이 制定된 것도 바로 그와같은 時代的 反映이라고 보여진다. 다만 對象者를 社會의 흐름속에 돌려서 自力으로 生活할 수 있게 援助하고자 하는 자세를 취해 왔다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장애의 勞動力으로서의 可能性을 보다 많이 가진 階層일 수록 優待받아 왔다는 事實도 看過할 수 없다. 그리고 社會福祉分野의 諸對策이 直接的으로 經濟效果에 結

付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分野보다 疎忽했고 또 遲滯되었던 것도 事實이다.

나) 앞에서 보아온대로 各種方法으로 展開되는 社會福祉의 諸制度는 다시 그 運營의 現場에 있어서 具體적인 福祉서비스의 提供에 따른 보다 『個別化』를 強調하는 一連의 方法을 要求하고 있다.

對象者 가운데는, 「制度를 主體的으로 活用할 意欲을 喚起시켜 그 人權이 充分히 尊重되는 形態로 制度를 運營해가기 위해서」 社會福祉制度의 理解는 물론, 보다 基本的으로 人間의 生活全般에 대하여 특히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職業生活의 問題와 家族生活의 構造 등에 대한 깊은 知識이 必要하게 되고 나아가 各樣各色的 個人差를 어떻게 理解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 重要해 진다. 하물며 거기에 다 이들 複雜한 生活問題를 안고 있는 家族・個人・地域社會의 必要에 따라 社會福祉의 基本理念에 確實히 근거하는 形態로서 援助者로 問題解決에 개입해 들어가는 技術이 要求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方法은 具體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는한, 民主적인 提供이 될 수 있게 하는 側面과 더불어 『生活問題의 중요한 局面(그 崩壞 或은 展開를 위한 중요한 場面)에 援助者로서 개입해 가는(Crisis Intervention) 方法』으로서 個個의 福祉制度와는 相對적으로 獨立된 分野를 形成한다는 性格을 지닌다.

美國의 社會事業에 있어서는 그 社會的・文化的 特殊事情에 의하여 이 領域이 특히 重點적으로 開發되어 그 基本的인 것으로서 Case Work, Group Work, Community Organization의 展開를 볼 수 있다. 各 個人・集團・地域社會를 對象으로 하여 或은 媒介로서 주어지는 援助에 대한 技術・方法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들 美國의 方法體系가 主軸이 되고, 나아가서는 養護技術, 保育技術, 精神衛生技術과 같은 特殊한 分野의 方法에 대한 理論化가 進行되고 있다.

Case Work, Group Work, Community Organization 에 대해서는 別章에서 詳論키로 하고 이들 諸方法에 關聯되고 있는 性格을 잠깐 考察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技法의 基礎를 이루는 人間生活의 諸要素 — Personality 人間關係・家族・職業・教育등의 의미를 包含해서 — 에 대한 理解를 둔다. 그러한 意味에서 個人과 家族에게 本來 潛在하고 있는 能力을 發見하여 그것을 活用해 나갈 것을 생각한다. 心理學・社會學・社會心理學・精神醫學등이 基礎가 된다.

② 資本制 民主主義의 價值觀을 基礎로 하고 있다. 가령 人間의 平等・人權의 尊重・個人的 自發性的 尊重, 사람들 相互間의 協力の 價值認識등이다.

③ 以上の 結果로서 이들의 方法은 어느 것이나 對象者の 自發的인 움직임을 尊重하며, 相對方의 立場・思考方式 感性・感情을 傾聽하여 그것에 의하여 問題를 具體的으로 把握하고자 하는 技法을 發達시키고 있다. 또 그러한 關係 가운데서 他人에게 容納되며 傾聽되고 理解되도록 한다는 자체가 當事者의 問題 解決 能力을 높이는 最適의 手段이라고 생각한다. 非言語的인 表現의 領域에까지 이 技法은 適用되며, 따라서 거기에서는 여러가지의 人間行動의 社會的 狀況과의 關係에 있어서의 理解・正常과 異常을 包含하는 個人差의 把握이 重要하다고 하겠다.

④ 더우기 앞에서 말한바 있는 『理解』는 단순히 客觀的인 觀察・評價가 아니라 오히려 感情移入을 隨伴한 구체적인 人間關係의 展開가운데서 비로소 可能하다고 하겠다. 人間關係에 있어서의 理解는 반드시 全人的인 「體驗」이 아니면 無意味하다고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類의 方法을 實施하는 者(Social Worker)는 自己의 모든 것을 投入, 그것을 利用하여 對象者의 問題解決에 임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充分한 自己 覺知와 訓練이 必要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方法은 熟練되고 洗練되면 될수록 個人과 그의 生活에 눈을 돌려 具體的인 社會福祉制度和 그 運營이라는 現實面으로부터 멀어져갈 危險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英國에 있어서는 兒童福祉의 例에서 보면 特定한 精神薄弱兒가 教育과 福祉의 어느쪽 機關에서 취급되어야 하는가 하는 決定에 焦點을 두고 判定하되 1회에 한하지 않고 兩親으로부터의 要請이 있으면 1年後에는 언제나 再審査에 應하여야 된다는 制度속에 活用되고 있다.

家庭法院이나 鑑別所에 있어서의 Case Worker의 活動이 實際로 矯正施設의 改善에 建設的 意見에 結果한다면 이것들은 對象者가 받은 서비스의 質을 向上시킬 뿐 아니라, 그들의 問題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깊게 把握함으로써 制度和 그 運營의 改善을 위한 有力한 資料의 供給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 以上과 같은 方法에 의하여 運營되는 制度나 施設을, 늘 유동하고 있는 needs에 잘 適合하게 充實化시켜 나가기 위해 意識的으로 利用되고 있는 一聯의 方法이 있어 社會福祉方法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列舉하면 ① 社會調查, ② 連結・協調를 위한 組織(社會福祉領域內的 組織 및 關聯領域과의 사이의 組織) ③ 研究・教育을 위한 機關・組織 ④ Social Action 을 들 수 있다. 社會調查는 그것을 위한 專門機關이나 大學에 있어서 뿐 아니라 옛날부터 Settlement 에 있어서 중요한 機能이라고 여겨져 왔으며, 또 社會福祉協議會와 같은 連絡 協調機關 或은 어머니會나 새마을교실과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Social Action 을 위한 準備段階로서도 必要하다. 連絡・協調를 위한 組織도 地域・對象別에서부터 國際協力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있다.

Social Work 調查의 Pioneer 들의 動機에는 두가지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改革者들로서 論爭的 意圖를 가지고 Data 를 蒐集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確信이 事實의 蒐集에 先行돼 있으며 Data 와 그 例證이 좋은 意味에서의 宣傳을 支持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 하나는 同情的인 好奇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苦痛받고 있다. 무엇인가 형편이 좋지 못한것 같다. 그러나 그 좋지못한 形便은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는가 는 알 수가 없다. 그것을 위해서는 證據에 基礎하여 詳細히 檢討되어야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되어 수고하면서 證據를 蒐集했던 것이다.

1948 年の 全美國社會事業會議에 있어서 Philip Klein 은 Social Work 調查를 그 目的에 따라 다음과 같이 分類하고 있다.

① Social Services 의 必要性을 確認하고 判斷하기 위한 調查 — 가령 어느 地域社會에서 保育院의 增設이 要求되고 있는 경우, 그 地域에서 確實히 現存하는 保育院 以上으로 필요하고 있는가, 어떤가를 調查하는 경우이다.

② 사람들의 needs 에 關聯하여 提供되고 있는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調査 — 가령 養緣制度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年間 어느정도의 養緣家庭이 생겨나서 어떠한 어린이가 몇사람쯤 養子로서 委託되고 있는등에 대한 調査이다.

③ 이미 행해지고 있는 社會福祉서비스의 結果를 檢討 測定 評價하는 調査 — 가령 어린이公園이 延人員 몇사람 정도의 어린이에 의해 利用되고, 그것 때문에 隣近의 어린이에 의한 交通事故 件수는 어느정도 감소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한 調査이다.

④ 特定하는 Social Work 의 方法의 效果를 檢討하는 調査 — 가령 夫婦關係에 問題가 있는 사람들을 Case Work 方法을 가지고 援助한 경우 그 效果가 어느정도 나아졌느냐를 測定하고자 하는 調査이다.

⑤ 調査方法을 開發하고자 하는 調査 — 問題를 보다 正確하게 調査할 수 있는 方法을 開發해 가는 것 등이다.

아와같이 調査는 그 目的에 따라 分類할 수가 있으나, 하나의 調査가 두가지 이상의 目的을 包含하는 경우도 있다. 어찌되었던 調査를 실시하는 경우, 늘 지적되는 것은 도대체 問題(needs)는 무엇인가 하는 點과 서비스의 效果는 어느 정도 提高되고 있느냐 하는 點일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社會福祉分野에 있어서 빼 놓을수 없는 調査는 ① ② 는 물론 ③ ④ 의 서비스의 效果測定 評價에 關係 力點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調査方法에는 ① 全體調査와 ② 部分調査의 a. 모델型調査, b. 標本調査가 있는데 經費의 節減, 調査時間의 短縮 및 오차의 縮小때문에

部分調査를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全體調査보다는 信賴度가 낮고 部分의 選定方法이 適當했느냐가 問題이다.

一般的으로 많이 利用되고 있는 標本調査는 一定現象을 나타내는 全體集團 가운데서부터 適當한 數를 任意無作爲로 抽出하여 調査하는 方法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方法을 취하는 Social Work 調査를 實施함에 있어 使用하는 技術을 크게 나누어 ① 觀察法 ② 面接法 ③ 質問紙法등의 세가지가 있다. 어느 경우이던 複數의 調査員이 이것을 擔當하기 때문에, 調査員의 訓練이 要望되는데 現實적으로는 困難이 많다. 그러나 Social Work 의 方法의 效果測定에 관한 調査의 경우는 調査員은 Case Work, Group Work, Community Organization 등 각각의 專門家가 아니면 안 된다. 이들은 個人에 대하여 Group에 대하여, 또 地域社會에 住民에 대하여, 專門家로서의 援助活動을 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自問自答해 가는 責任도 負課돼 있다. 그러한 意味에 있어서 社會福祉에 관계하는 Worker는 調査에 대한 準備에 각오가 늘 要求되는 것이다.

「Social Work은 個人的 社會的機能을 個別的으로 또 集團적으로 提高시키고자 하는 것이나, 그것은 人間과 그 環境과의 사이의 相互作用을 構成하는 社會關係에 焦點을 맞춘 諸活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活動은 세가지의 機能으로 分類할 수가 있다. 卽 損傷된 能力의 回復・個人的 및 社會的 資源의 準備 더우기 社會적으로 잘 機能하지 못하는데 對한 豫防이다」(Werner W. Boem, Objectives of the Social Work Curriculum of the Future,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P. 54)

第二章 社會福祉事務所の 任務

- 1. 社會福祉事務所の**
- 2. 社會福祉事務所の 業務**
- 3. 専門人力の 活用**
- 4. 専門的 福祉活動の 展開要領**

第二章 社會福祉事務所の 任務

1. 社會福祉事務所란

가. 社會福祉事務所는 社會福祉行政을 가장 效果的이고 또 合理的으로 運用하기 위하여 마련되는 總合的 社會福祉行政機關의 하나이며, 住民(특히 社會福祉 Service 提供 對象者)과 直接的 接觸을 가지는 第1線의 現業組織體이다.

福祉事務所の 設置는, 社會福祉事業法에서 規定되어야 하는데, 現行法에는 規定되어 있지 않아 큰 問題라고 하겠다.

나. 日本의 例를 보면, 社會福祉事業法 第三章에 「福祉에 관한 事務所」의 設置・組織・所員의 定數, 服務등에 걸쳐 具體적으로 明示 規定하고 있다. 거기에 보면 都道府縣・市 및 特別區는 設置할 義務를 지고 있으며, 그 以下の 町・村은 主로 財政上 形便을 考慮하여 任意로 設置할 수 있게 되어 있다. 1982年 6月1日 現在, 그 總數는 무려 1,172個所로 대개 人口 10萬名을 單位로 設置돼 있는데 郡部 343, 市部 825, 町村 4로 分布되어 있고, 또 家庭兒童相談室, 1,013個所 兒童相談所 164個所, 精神薄弱者更生相談所 54個所, 保健所 855個所가 設置되어 있다.

특히 福祉事務所는 社會福祉行政의 基本的 單位로서의 福祉地區마다 設置되는 것이나, 町村의 合併에 의한 新市의 出現이나 人口의 都市 集中등에 의하여 새로이 設置되기도 한다.

福祉事務所に 従事하는 要員은, 査察指導員, 現業員, 面接相談員, 身體

障害者 福祉司, 老人福祉指導主事, 家庭兒童福祉主事, 家庭相談員, 婦人相談員, 母子相談員, 囑託醫等 總 45,953 人이 活動하고 있다.

福祉事務所の 業務는 兒童福祉法, 老人福祉法, 身體障害者福祉法, 精神薄弱者福祉法, 母子 및 寡婦福祉法, 生活保護法등 이른바 福祉六法이 規定하는 援護, 育成 또는 更生의 措置에 관한 業務를 비롯하여, 널리 社會福祉全般에 관한 事務를 行하는 第1線의 總合的인 社會福祉行政機關이다.

2. 社會福祉事務所の 業務

가. 社會福祉事務所の 業務는 社會福祉事業法, 生活保護法, 兒童福祉法, 老人福祉法, 心身障碍者福祉法, 淪落行爲등 防止法, 入養特例法 및 幼兒教育振興法, 特殊教育振興法, 更生保護法등이 規定하는 福祉의 措置에 관한 事務가 根幹을 이루겠으나, 그밖에 서울特別市長, 直轄市長, 道知事 또는 市長, 郡守, 區廳長등의 委任에 의한 社會福祉全般에 관한 事務도 包含될 것이다.

또한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는 社會福祉委員會의 運營에 參與하며, 福祉委員들과의 紐帶・協助도 必要할 것이다.

나. 社會福祉事務所가 行해야 할 主要業務를 좀더 具體的으로 살펴본다.

① 生活保護法이 定하는 바의 保護對象者 또는 被保護者의 資産狀況, 健康狀態등의 調査와 生計, 醫療, 自活, 教育, 解産, 葬祭등 保護의 決定 및 保護의 指導를 행한다.

또한 保護事業의 企劃・調査・實施등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審議하는 生活保護委員會(主로 地方委員會)와도 協力한다.

② 心身障礙者福祉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心身障礙者의 發見과 檢診 및 再活 相談指導를 實施하고,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再活施設에의 入所 措置를 한다. 再活相談을 함에 있어서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心身障礙者의 家庭, 그가 入所・通院, 利用하고 있는 施設이나 醫療機關을 訪問하여, 相談에 응하게 하거나 必要한 指導를 하게도 한다.

또 生活이 困難한 心身障礙者에 對한 義手足, 휠체어, 補聽器 其他 保健社會部長官이 定하는 補裝具를 交付하거나 修理하게 하거나, 補裝具의 購入 또는 修理에 必要한 費用을 支給할 수도 있다.

나아가 心身障礙者의 雇傭을 促進하기 위하여, 心身障礙者에게 適合한 職種の 開發과 普及의 支援 心身障礙者에 對한 適性檢査 및 職業指導, 作業環境 또는 技能에 適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訓練의 斡旋과 支援을 한다.

心身障礙者의 自活支援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國家, 地方自治團體, 其他 公共團體 施設의 一部를 心身障礙者로 하여금 優先하여 利用하게 周旋해 줄 수도 있다.

그밖에 道路, 公園, 公共建物, 交通施設 通信施設 其他 公衆이 利用하는 施設을 設置하는 者에게, 心身障礙者가 便利하게 利用할 수 있는 便宜施設이나 設備를 갖추도록 하는데 助力한다.

특히 心身障礙者福祉指導員의 職務를 施行令 第4條에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① 心身障礙者와 그 家族 또는 關係人에 對한 相談指

導 ② 心身障礙者에 대한 檢診, 診療 또는 保健등에 관한 指導와, 그 檢診, 診療, 保健指導등의 關係專門機關에 대한 依賴, ③ 心身障礙者福祉施設에 대한 心身障礙者の 入所, 通院 또는 그 利用의 斡旋 ④ 心身障礙者에 대한 補裝具의 交付와 使用, 修理등에 관한 指導 ⑤ 心身障礙者の 職業適性評價, 訓練 또는 就業斡旋과 이에 관한 關係專門機關에 대한 依賴, ⑥ 心身障礙者를 위한 地域社會資源의 活用斡旋 ⑦ 心身障礙者福祉施設 또는 心身障礙者에 관한 調査 및 指導 ⑧ 其他 心身障礙者の 福祉增進에 관한 事項.

③ 兒童福祉法 第8條第1項에 兒童相談所를 道知事와 市長・郡守는 管轄區域안에 設置할 수 있다. 第2項에 社會福祉法人 또는 財團法人은 道知事の 認可를 받아 設置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또 同條 第3項에는 兒童相談所の 業務를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① 兒童 또는 妊産婦에 관한 그 家庭 또는 關係人에 대한 相談
② 兒童指導에 必要한 家庭環境의 調査・入養 委託保護 및 居宅保護, ③ 兒童 또는 妊産婦에 관하여 專門的, 技術的 指導를 必要로 하는 경우의 個別指導, 集團指導 및 그 斡旋, ④ 兒童福祉施設 또는 要保護兒童의 調査・指導 및 監督, ⑤ 兒童을 위한 地域社會資源의 活用斡旋, ⑥ 兒童의 一時保護, ⑦ 其他 兒童 및 妊産婦의 福祉增進에 관한 業務

그리고 健康相談 및 指導 營養改善, 傳染病 豫防措置등은 保健所의 業務로 分掌 規定하고 있다.

既히 設置 運營되고 있는 兒童相談所와 社會福祉事務所의 併設이나 合併이나 하는 論議는 別項에서 考慮할 것이다.

④ 老人福祉法 第6條에 의한 老人福祉相談員의 職務(同法施行令第

4條)를 보면, ① 老人 및 그 家族 또는 關係人에 대한 相談指導, ② 老人福祉에 必要한 家庭環境 및 生活實態에 관한 調査, ③ 法第7條 (相談・入所등의 措置)의 規定에 의한 福祉措置에 必要한 相談 및 指導, ④ 老人의 團體活動 및 就業의 相談, ⑤ 其他 老人의 福祉增進에 관한 事項을 規定하고 있으며, 相談指導施設로서는 法第13條(老人福祉施設) 第4號에 『老人福祉會館』을 들고 「無料로 또는 低廉한 料金으로 老人에 대하여 各種 相談에 응하고 健康의 增進, 營養, 娛樂 其他 老人의 福祉增進에 必要한 便宜를 提供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⑤ 要保護女性の 善導保護를 위한 婦女相談員의 任務(保社部 例規 第363號)는 ① 淪落行爲等 防止法 第7條 第2項의 業務(a 要保護女子의 身上 其他 問題에 관하여 그 相談에 응하는 일, b 要保護女子의 性格 家庭 또는 그 環境등에 대하여 原因을 探求하고 必要한 指導를 행하는 일, c 要保護女子의 動態와 分布狀況等を 常時 調査 把握하는 일, d 要保護女子의 實情에 따라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臨時로 收容保護를 행하는 일, e 要保護女子에게 善良한 職業의 斡旋을 행하는 일, f 要保護女子의 實情에 따라 그들의 家族 其他 緣故者에게 歸還措置를 행하는 일, g 其他 善導保護事業의 目的 達成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일). ② 要保護女子의 發生을 防止 하기 위한 問題家庭에 대한 相談 및 家出 婦女子의 善導保護, ③ 婦德涵養 및 社會氣風醇化를 위한 指導啓蒙, ④ 其他 保健社會部長官이 指示하는 業務”로 規定하고 있다.

⑥ 社會福祉事業法 第3條에 規定하고 있는 『社會福祉委員會』의

機能(同法施行令 第2條)의 協助와 同法 第3條의 2의 福祉委員과의 紐帶도 必要할 것이다.

福祉委員이 비록 名譽職이기는 하나 그들은 「그 管轄地域안의 零細民, 兒童, 老人, 心身障礙者, 要保護女子 등에 대하여 恒常 그 生活狀態 및 家庭環境 등을 把握하고, 社會福祉에 관하여 必要한 援助와 指導를 행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⑦ 이밖에 市長, 郡守의 業務指示를 비롯하여 保健所에서 業務協助 依賴, 幼兒教育振興法, 特殊教育振興法, 更生保護法 등이 規定한 業務의 協助 支援등도 看過할 수 없을 것이 있다.

또한 地域社會內的 自願奉仕者들과의 業務 協助도 있다.

3. 專門人力의 活用

가. 社會福祉事務所의 職員은 所長以外에 社會福祉士등 現業從事者와 其他 要員으로 構成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各種 原因에 의한 要保護對象者에 대하여 Case Work, Group Work, Community Organization을 행해야 하는 現業從事者는 專門的인 知識과 技術을 지닌 能力人으로 確保되어야 할 것이다.

福祉事務所가 總合的인 相談窓口로서 役割하기 위해 設置된 以上, 모든 要員들은 要保護者에 福祉的 措置의 必要의 有無 및 保護의 種類, 方法등을 判斷하여 生活의 保護指導, 多様な 福祉要求 充足 등을 위한 活動은, 社會福祉 行政의 傳達의 核心的인 推進役으로서 가장 重要한 職務를 擔當하는 것이며, 業務의 遂行에 臨해서는 專門知識과 技術을 充分히 發揮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現業從事者の 主要業務는 關係法規에 明文으로 規定되어 있으나, 社會福祉를 둘러싸고 있는 背景이 그러하고, Client의 need가 多樣하고, 福祉의 需要 또한 増大一路에 있으므로, 現業에 從事해야 할 專門人力의 養成과 確保가 매우 時急한 階梯에 到達해 있다고 하겠다.

나. 現業에 從事해야 할 專門要員이 當該 福祉法令에 規定되고 있는 職種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卽,

① 社會福祉事業法 第5條에 規定한 『社會福祉士』가 主宗을 이루는데, 各人の 資格基準에 의하여 1, 2, 3級으로 區分된다. 社會福祉士 資格에 關聯한 履修 學科目을 보면 必須科目으로서 社會福祉(事業)概論, 社會福祉法規, 人間行動과 社會環境, 社會保障論, 個別指導, 集團指導, 地域社會組織, 社會福祉調查, 社會福祉行政, 社會福祉實習등 10個科目이고, 選擇科目으로서는 社會福祉發達史, 社會事業統合方法論中 1科目以上, 兒童 및 家庭福祉, 産業福祉, 老人福祉, 心身障礙者福祉, 醫療社會事業, 婦女福祉, 矯正福祉論중 1科目以上, 社會福祉政策, 自願奉仕者論, 指導監督論중 1科目以上, 社會心理學, 社會變動論, 社會問題, 精神衛生중 1科目以上, 4科目을 履修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② 心身障礙者福祉法 第6條에 規定하고 있는 『心身障礙者福祉指導員』은, 社會福祉事業法에 의한 社會福祉士, 教育法에 의한 特殊學校의 教師로서 1年以上 勤務한 經歷이 있는 者, 社會福祉에 관한 行政에 5年以上 勤務한 經歷이 있는 者들이며 兒童福祉指導員, 老人福祉相談員, 社會福祉에 관한 業務를 擔當하는 公務員으로 하여금 心身障礙者福祉指導員을 兼職케 할 수도 있다.

또 心身障礙者 福祉施設에 從事해야 하는 職員中 專門人力은 施設

長, 總務, 醫師, 看護員, 補助員(物理治療士, 作業治療士, 職業訓練教師, 相談評價要員, 言語治療士, 聽能訓練士等), 營養師, 生活指導員(專門大學以上の學校에서 心理學, 教育學 또는 社會事業學 등 心身障礙者 福祉關聯學科를 專攻하고 卒業한 者) 등이 있다.

③ 兒童福祉法에 規定하고 있는 專門人力은 同法 第6條에 “兒童福祉에 관한 事項을 相談, 指導하기 위한” 別定職公務員으로서의 『兒童福祉指導員』이 있고, 名譽職인 『兒童委員』(第7條)이 있는데, 그 委員은 管轄區域안의 兒童에 대하여 恒常 그 生活狀態 및 家庭環境을 상세히 把握하고, 兒童福祉에 관하여 必要한 援助와 指導를 行하며, 兒童福祉指導員 및 關係行政機關과 協力하여야 한다고 規定해 놓고 있다.

『兒童福祉指導員』은 專門大學 또는 이와 同等以上の 學校에서, 社會福祉學科, 社會事業學科, 社會福祉行政學科, 兒童學科, 兒童福祉學科, 幼兒教育學科, 社會開發學科, 社會學科, 特殊教育學科, 心理學科, 家庭管理學科, 看護學科, 醫學科, 家庭教育學科의 課程을 履修하고 卒業한 者와 一般職公務員으로서 國家 또 地方自治團體에서 兒童福祉, 其他社會福祉에 관한 行政에 3年以上 勤務한 經歷이 있는 者와 幼稚園, 國民學校, 中學校 또는 高等學校敎員으로 2年以上 勤務한 經歷이 있는 者와 保社部長官이 施行하는 兒童福祉指導員資格試驗에 合格한 者와 國立社會福祉研修院의 社會福祉士 養成課程을 履修한 者등을 任命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또 『兒童相談員』의 경우, ② 4年制大學(舊制專門學校等) 또는 同等以上の 學校에서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社會福祉事業系列學科(社會

事業學科，兒童學科，兒童福祉學科)를卒業한 者와，㉞ 大學에서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學科(社會學科，教育學科，社會教育科，社會生活(學)科，心理學科，教育心理學科，保育學科，家庭學科，家庭管理學科，家庭教育(學)科，看護學科，福祉行政學科)를卒業하고 1年以上 社會福祉事業에 從事한 經歷이 있는 者，㉟ 大學을卒業하고 入養斡旋機關에서 2年以上 兒童相談에 관한 業務에 從事한 經歷이 있는 者，㊱ 兒童福祉法の 規定에 의한 兒童福祉指導員으로서 3年以上 勤務한 經歷이 있는 者」라야 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④ 『老人福祉相談員』은 市・郡・區에 두게 되어 있는데，㉠ 社會福祉事業法에 의한 社會福祉士 資格證을 가진 者，㉡ 專門大學 또는 이와 同等以上の 學校에서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社會福祉에 관한 學科(社會事業學科，社會福祉學科，社會開發學科，其他 保社部長官이 指定하는 學科)의 課程을 履修하고卒業한 者，㉢ 國民學校，中學校 또는 高等學校의 教師로서 2年以上 勤務한 經歷이 있는 者，㉣ 高等學敎卒業者 또는 이와 同等以上の 學歷이 있는 者로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社會福祉에 관한 行政에 2年以上 勤務한 經歷이 있는 者로 規定하고 있다. ㉤ 그밖에 兒童福祉指導員，心身障礙者福祉指導員，社會福祉에 관한 業務를 擔當하는 公務員으로 하여금 兼職하게 한 老人福祉相談員도 있을 수 있게 되어 있다.

⑤ 要保護女性에 대한 相談指導 職業輔導 就業斡旋등 業務를 擔當해야 하는 『婦女相談員』은，㉠ 4年制 大學卒業者로서 社會事業에 관한 行政에 1年以上 勤務한 經歷이 있는 者. ㉡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社會事業에 관한 行政에 勤務한 經歷이 5年以上인 者，

㉔ 國民學校 또는 中・高等學校 教師로써 5年以上 勤務한 經歷이 있는 者, ㉕ 一般相談員으로 3年以上 勤務한 經歷이 있는 者는 「首席相談員」이 될 수 있다. 「一般相談員」은 ㉖ 初級大學 또는 이와 同等以上の 學校에서 2年以上 社會事業學을 專攻하였거나, 正規大學課程을 履修한 者, ㉗ 國民學校 또는 中高等學校教師로써 2年以上 勤務한 經歷이 있는 者, ㉘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社會事業에 관한 行政 또는 家族計劃要員으로서 3年以上 勤務한 經歷이 있는 者, ㉙ 社會福祉士 資格證 所持者여야 하고, 또 이들은 保健社會部長官이 實施하는 4週課程의 社會事業指導者 訓練을 履修하여야 하고, 또 每年 2週課程의 訓練도 履修해야 하게 되어 있다.

다. 우리나라의 社會福祉業務의 大部分이 一線行政機關에 의해 實施되어오고 있어 事後救護的인 次元에서 行政上 文書上の 事業으로 展開될 수 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要保護對象者들의 欲求를 正確히 把握할 수 없었으니 自然히 適切한 Service가 提供될 수 없었다. 그것은 一般의으로 人力이 不足했고, 또 그러한 福祉的 業務를 堪當해야 할 專門人力이 絶對적으로 不足한 것도 事實이다. 또 民間機關이나 社會福祉施設의 경우에 있어서도 從事者の 報酬水準이 낮고, 社會的인 待遇도 낮아서, 資格을 갖춘 專門人力을 確保하기 어려웠던 것도 事實이다.

이러한 實情下에서 社會福祉分野의 專門教育과 訓練을 履修한 많은 專門人力이 社會福祉分野에 從事를 忌避하고 있어서 國家的인 次元의 浪費와 이 分野의 健全한 發展을 期約할 수 없다. 따라서 既히 提起된 社會福祉事務所의 設置 運營을 서둘러야 하고, 現行의 公務員任

用制度를 改善하여 專門人力을 大舉 起用하는 한편, 既存의 公・私設 社會福祉施設에도 待遇를 改善하여 專門人力을 確保하여야만 할 것이다.

現在 우리나라에는 20 餘個 大學에 社會福祉와 關聯하는 學科가 設置돼 있어서 每年 800 餘名の 專門人力이 輩出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增加할 것이 豫想되고 있다.

그리고 福祉事務所의 運營에 있어서 看過해서는 안될 것은 『自願奉仕者』의 役割이 있다. 이들은 專門要員과 地域社會住民과의 橋樑적인 役割로서 ㉠ 要保護對象者가 發生했을 때 連絡을 취하고, ㉡ 福祉事務所의 役割과 業務에 대해 地域社會에 弘報와 啓蒙活動을 展開하며, ㉢ 地域社會에 存在하는 各種 公・私團體들의 協助를 要請하는 등 크게 寄與할 수 있을 것이다.

4. 專門的 福祉活動의 展開 要領

가. 社會福祉 Service 의 提供은 個人的 社會的 機能을 個別的으로 또는 集團的으로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人間과 環境과의 사이의 相互作用을 構成하는 社會關係에 焦點을 맞춘 諸活動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活動은 「損傷된 能力의 回復, 個人的 및 社會的 資源의 準備, 社會的으로 잘 機能하지 못하는데 對한 豫防」등 세가지의 機能으로 分類할 수 있다.

社會福祉 Service 活動에는 다음과 같은 普遍的 原則이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個人的 固有하는 價値, 統合, 尊嚴에 對한 確信이다. 이 確信은 Service 를 提供하는者의 對象者에의 接近과 援助關係에 있어서의 兩者의 相互關係를 決定하는 것이다. 그것은 對象者의 社會的 狀況에 있어서 또 人格的 問題에 對한 對象者의 態度에 있어서 達成되는 變化의 基礎이다. 同一한 確信이 group 內의 個個의 成員에서 自己는 group 의 매우 重要한 一部라는 歸屬感을 供與하는 Social group Work 의 役割까지도 決定하는 것이다.

또 이러한 確信은 Community Organizations 의 分野에 있어서도 地域社會內의 여러가지 集團과 團體의 代表者에게도 作用한다. Community Organizations 으로서의 Social Work 는 地域社會의 個個의 成員을 思慮·깊은 考察과 觀察을 提供하며 有益한 推薦을 하는 人物로서 尊敬하는 것이다.

둘째의 原則은 經濟的·個人的 或은 社會的 要求를 가진 個人은 그 要求가 무엇이던 또 어떻게 充足되어야 하던 自己自身이 決定할 權利가

있다는 確信이다. 社會福祉 Service 를 提供함에 있어서 物質的 또는 情緒的 要求를 가진 個人은 自己 決定의 權利를 가질 資格에 주어져 그의 自助的 行使의 主張은 人間의 公民으로서 權利로서 認定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社會福祉業務 從事者는 對象者를 위하여 必要한 모든 措置를 취하는 것, 或은 對象者의 事件을 操作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는 對象者의 經濟的이고, 心理・社會的狀況의 重要한 變化는 對象者가 自助自立하는 것을 援助되는 경우에만 생겨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Case Work 의 支持는 對象者의 獨立에 있어 不可缺한 要素이지만 對象者가 그의 問題를 克服할 수 있는 것은 그가 危機狀況 解決의 役割을 自己가 취할 수 있는 程度에 걸쳐 있는 것이다.

Social group work 에 있어서는 group 이 그 行動의 目標・手段 및 諸目的을 決定하는 權利의 原則은 Social group worker 에 의하여 尊重된다.

Community Organizations 의 實踐에 있어서도 Social worker 는, 地域社會, 그의 政府, 諸團體, 諸集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福祉要求를 充足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Action 이 必要하며 바람직한 가를 決定한 權利를 完全히 尊重하지 않으면 안된다.

세계의 原則은 民主社會에 있어서의 Social Work 에 있어서 決定的으로 重要한 것으로서 個人은 그 生來的인 能力에 依存하는 以外에 아무것에도 限定되는 일은 없다는 모든 사람에 對한 機會均等の 確固한 信念이다. Social Work 은 人格의 尊嚴과 自己決定에 관한 根本的 確信을 깨트림이 없이 人種的・宗教的 或은 政治的 偏見을 固

執할 수는 없다. 社會的 Service 는 宗教와 階級の 區別없이 모두에게 利用되지 않으면 안된다.

Social Work 에 있어서는 個人的 needs 는 金錢上的 일이던, 社會的인 것이던, 或은 情緒的인 것이던, 眞正 同情的인 人間的인 理解를 福祉서비스提供者로부터 導出하여, 福祉提供者는 對象者가 그 要求를 地域社會의 資源의 範圍內에서 充足시키는 것을 援助하고자 하는 것이다.

Social group Work 에 있어서도 이 民主的 平等이 信念이 그 實踐을 誘導하며 福祉서비스提供者의 助言과 支持에 의하여 group 에 加入한 個個의 構成員은 同情的인 親近한 雰圍氣를 자아내는 것이다. group 의 協力과 信賴가 새로운 構成員의 統合을 容易하게 하여, 意氣投合의 雰圍氣 속에서 靈的 情緒의 生長이 刺戟받는다. 그러나 또 한편 group 은 새로운 構成員이 group 의 機能과 義務에 관해서 다른 構成員과 協力하기를 期待한다.

Community Organizare 도, 또 人間的 基本的 要求 充足에 관한 機會均等の 權利에 의해 引導되는 것이다. Organizare 는 地域社會의 指導者를 激勵하여 現狀의으로는 그 手段을 주어져 있지 않은 個人과 集團이 學習하는 機會를 얻어, 身體의 健康과 文化的生長을 實現시키는데 必要한 社會 Services 와 便宜를 整備시키는 것이다.

네째의 原則은 Social Work 의 모든 方法에 共通하는 價値는 自尊心, 尊嚴, 自己決定 및 機會均等到에 대한 個人的 權利는 自己自身과, 家族과, 社會에 대한 社會的 責任에 關係되고 있다는 確信이다. 이 確信은 現代社會와 個人, 集團, 地域社會로서의 人間과의 사이에 give — and — take 의 關係를 한층 더 分明하게 理解시키는 것이다. case

Worker 도 group Worker 도 다함께 個人과 集團에 그들의 權利를 全面的으로 認定한다는 것은 同時에 그들의 義務와 限界가 있다는 것에의 洞察을 要請하는 것이며, 他人의 要求와 權利를 受容하며 尊敬하는 것을 要求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된다. Community Organizations 에 있어서도 Organizzare 는 어떠한 計劃과 行動도 다른 集團의 健康과 福祉 needs 를 害쳐서는 안된다는 것을 充分히 理解하며, 地域社會資源의 使用에 臨해서 豫防的, 或은 治療的 處治와 施設機關과의 사이에 健全한 均衡을 維持하는데 努力하는 것이다.

나. 社會福祉에 있어서의 專門技術

1) 社會福祉에 있어서의 專門技術 成立의 基盤과 그 意義——
社會福祉의 直接 Service 에 있어서의 方法 例를 들면 Case Work, group Work, Community Organization 등은 社會福祉에 있어서의 專門技術로서 다른 方法과 區別된다. 이것들이 現代의 社會福祉, 特히 美國에 있어서 專門技術로서 成立되어온 背後에는 세 가지의 要素가 있다.

첫째는 職業集團으로서의 社會福祉事業 從事者の 出現이다. 美國에서의 例를 들면, 社會保障制度의 不備를 補充하는 것으로서 民間社會事業의 全國的 展開와 1935 年の 社會保障法の 成立에 具體化하는 New Deal 政策 가운데서 社會福祉事業에 從事하는 사람의 數는 飛躍적으로 增加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從事者の 養成・訓練의 組織과 內容을 大幅 變更시켜 갔던 것이다. 20 世紀의 初로부터 各團體가 個別的으로 행해지고 있던 職員의 養成・訓練이 大學 或은 大學院의

level 에 있어서의 社會事業學校의 손에 넘겨져 教育과 그것을 위한 研究가 職業集團으로서 形成되기 시작하여 社會的 地位의 向上을 바라는 風潮와 結合되어 急速하게 展開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職業集團으로서의 形成과 그것을 통한 發言이라는 方式은 社會福祉에 있어서의 公的責任, 國家 및 地方公共團體의 介入이 增大함에 따라서 점점 強化된다. 公共團體로부터 補助를 받거나 公共團體의 直轄事業이 되기도 하게 하기 위해서는 社會一般에게 그 事業의 意義가 呼訴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고 또 그럴 즈음에는 各種 施設이나 團體의 特殊性 뿐 아니라 社會福祉一般의 共通理念과 共通的 技術이 專門職員의 雇傭・訓練・養成을 위해서도 強調되어야 할 일이다.

둘째의 要素로서는 對象者側의 needs 와 그 認識의 變化를 들 수 있다. 貧困이 단순히 所得의 寡少나 不安定에 의하여 規定되는 時代는 지나갔다. 生活問題는 점점 多樣化하며 非行・家族의 解體・老人問題 自殺問題등등 所得의 多少와 반드시 直接的으로 結付되지 않는 形態로 더우기 全般的으로는 經濟에 있어서의 矛盾을 反映하여 增加돼 가고 있다.

거기에 家族은 少數化하고, 地域社會의 Control 도 支持도, 잃어져 가는 都市社會와 大量的 雇傭勞動者 出現, mass media 의 浸透는 가령 貧困이나 教育의 缺如와 心身障礙 등을 各自의 獨特한 人生體驗으로서가 아니라 「人生에 있어서의 失敗 乃至는 敗北」로서 受容시켜 그 人間의 Personality 를 根本적으로 흔들어 버린다. 이와같은 狀況 가운데서의 社會福祉對象者の needs 는 個個의 狀況에 의하여 여러가지의 짜임새로 되어 나타나며 나아가 心理的인 面에도 깊이 먹혀 들어가는 現象을 한다.

사람들의 複雜한 社會的態度와 價值觀을 形成하며 더우기 그런것에 의하여 屈折되어 나타나는 生活問題에의 對處는 必然的으로 生活問題, 社會問題에의 正確한 理解에 立脚한 人間에 의한 個人差의 認識과 心理的-社會的 要因의 解明을 必要로 하게 된다. 여기에서 그것들에 관한 科學을 背景으로 하여 그와같은 問題와 構成하는 方法이 成立돼 오는 것이다.

세계의 要素에는 社會 및 人間에 관한 諸科學의 進歩가 있다. 卽 社會學, 社會心理學, 臨床心理學, 精神醫學등 나아가서는 文化人類學, 犯罪學, 社會病理學, 集團力學 등등, 社會와 거기에 있어서의 個人과 家族의 行動에 관한 科學의 發達이 그들의 應用科學으로서 「사람들에 대하는 作用」이라는 側面에서부터 社會福祉의 方法을 專門技術化시키고자 하는 一群의 사람들에게 있어 커다란 힘이 되어 있는 것은 否定할 수 없다.

그렇다면 社會福祉의 專門技術은 어떠한 意義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側面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民主的으로 人權을 尊重하는 形態로 Service가 對象者에게 提供된다는 것을 目標로 하여 그 手段을 擔當하는 사람이 人間の 行動과 生活問題에 관한 理解에 뒷받침된 技術을 가지고 機能하므로써 Service의 質의 높이가 確保된다고 하는 것, 바꾸어 말하면 恣意的인 自己滿足的인 或은 一方的인 Service 提供을 防止한다는 作用이다.

두번째는 일단 만들어진 制度는 完備되면 될 수록 그것에 수반하는 官僚制化에 의하여 柔軟性を 잃어 간다는 事實에 대하여 그와같은 制度를 늘 變動시켜가는 對象者の need에 卽應하는 形態로 運

營해 가는 이른바 制度와 對象者와의 사이에 潤活油로서의 作用이 있다.

세번째는 앞의 것들과 關聯해서 社會福祉制度에 대한 批判의 提供 母體로서의 意義가 있다. 社會福祉政策이 점점 公共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 지므로서 단순한 公務員으로서의 從事者는 制度 가운데 스며드는 矛盾을 아무리 痛感하였다고 해도 公共然히 批判할 根據를 스스로의 内部에 가지지 않는다는 現實에 直面할 수 밖에 없다. 公的인 意見具申의 節次를 거쳐 實務者로서의 立場을 呼訴하는 程度에 不過할 것이다. 그 때 專門社會事業技術者로서의 判斷과 專門職으로서의 責任은 同一한 人物에도 단순한 政策의 實施者와는 다른 立場에서 發言과 行動을 可能케 할 것이다. 그러한 意味에서 專門技術의 發達 그 自體는 社會福祉의 全般的인 發展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다.

2) 社會福祉에 있어서의 專門技術의 特質과 問題點 —— 社會福祉에 있어서의 專門技術의 發達은 그 技術이 갖는 特殊性 때문에 몇가지의 重要的 問題를 던져 준다.

우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들 專門技術이 政策에 採用되는 경우의 條件 가운데 스며드는 矛盾이다. 國家獨點資本制下에서의 社會福祉制度도 窮極의 으로는 人的資源——勞動力의 確保・既存의 社會體制의 維持・強化라는 方向을 취하여 個個人の 生活을 둘러 싸고 있는 基本的인 矛盾의 根本的인 解決에는 돌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事實이다.

그리고 그러한 狀況 가운데서 이른바 階級意識을 잠재우는 手段으로서, 때로는 基本的인 矛盾을 家族과 職場의 對面 集團에 있어

서의 矛盾, 나아가서는 心理的問題와 살짝 바뀌어 지기 쉽다. 또 될 수 있는대로 不滿이 적고 能率的으로 일을 옮겨 놓는 手段으로서의 「親切한 應待」와 「人間的인 接觸」이 強調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事實을 우리들은 看過할 수는 없다. 勿論 社會事業專門技術의 이와같은 意味에서의 採用은 現實的으로는 좀더 復雜한 形態를 취한다.

基準의 低位나 豫算不足 或은 設備의 不充分에서 오는 問題가 技術不足의 指摘→ 研修에 의한 向上의 督勵→ 對象者에 대한 問題의 뒤바뀜이라고 말 하듯이 實務者에 대한 勞動強化라고 하는 形態로 나타나는것 등은 그 典型이며, 또 實質的인 對策이 없는 그대로 그 問題에 관한 「相談事業」만을 發足시켜 事態를 糊塗하려고 하는 例도 많다. 그러나 이런것은 한편에서는 對象者の 正當한 要求를 다만 덜어주는 것 만으로는 充足되지 않아서 不得已 이루어지는 讓步라는 側面도 가지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 專門技術의 導入을 拒否하는 것은 問題解決이 되지 않는다.

두번째로 問題 삼아야 할 點은 E. Burns 가 美國社會事業技術에 대하여 指摘하고 있드시 專門技術이 招來하는 視野의 狹少化이다. 專門技術은 일단 獨自의 體系를 成立해 버리고 나면, 그 技術로서 취급하기 쉬운 問題만을 選擇하여 對象으로 삼아 버린다는 意味에서 對象을 限定하며, 또 그 以外의 여러가지 方法이 可能性에 좀처럼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意味에서 社會問題의 對應에 있어서 活用되어야 할 方法의 範圍를 限定하며 다시 自己의 專門用語를 理解하는 사람들끼리만 對話하고, 他分野의 사람들과 協力하지 않게 된다. 이런 意味에서 資源을 限定하여 버리는 弊端을 낳아 結局은 社會福祉의 發達을 크게 阻害하게 되기 쉽다. 이것은 特히 職業集團의 成立이라는 意

味에서도, 또 基礎科學의 發達이라는 意味에서도 充分히 專門職으로서의 成立의 基礎를 이루지 못하는 社會事業技術의 特殊性에 照明시켰을 때 매우 現實的인 危險이 된다.

以上の 것들은 하나 하나의 具體的制度와 그 運用의 現實 가운데서 充分히 吟味되어야 할 問題點들이다.

3) Case Work 의 過程

Case Work 의 過程은, 社會生活上의 困難・問題를 가진 Case 에 대하여 Case Worker 와 Client 와의 相互作用關係를 媒介로 하여 展開되는 問題解決을 위한 援助・處遇의 過程이다.

이 過程은 Worker 와 Client 의 信賴關係의 成立으로부터 비롯되며, 秩序整然한 組織的인 展開와 方法이 活用되므로서 問題解決의 過程이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援助・處遇의 過程을 論理的으로 몇개의 段階로 區分하면, 調査——診斷——處理로서 理解할 수 있다.

이와같은 援助나 處遇過程에 있어서의 意義를 理解하지 못하고 調査와 初期局面에서 Worker 가 一方的으로 或은 事務的으로만 操作했다고 하면, 援助나 處遇의 過程은 效果的으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勿論 診斷이라든가 處遇등의 段階도 調査와 區別하거나 無視하여 이루어지면 結果는 좋을 수가 없다.

이와같이 Case work 의 過程은 Worker 와 Client 의 相互作用 關係를 基礎로 해서 展開되는 問題解決을 위한 援助와 處遇를 위한 順序이지만, Worker 의 Client 를 援助하며 問題를 解決하고 싶어 하는 目的을 具體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Worker 와 Client 가 問題解決의 共通目標를 향해서 함께 努力하기 위한 前提條件이 된다. 이 必須의 前提條件이 Case Work 에 있어서의 目的關係를 確立하여 Case Work

의 過程의 基礎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Case Work 의 過程을 ① Intake ② 社會調查 ③ 社會診斷
④ 社會的處遇라는 네段階로 區分하여 檢討해 본다.

(가) Intake

Case Work 은 最初의 面接인 Intake 에 의해 시작된다.

Intake 이란 「받아 들이는 것」「거두어 들이는 일」이란 意味이며
이 面接은 接受面接 受理面接이라고도 하며, 이 것을 擔當하는 Case
Worker 를 Intake 라고 부르고 있다. 福祉館이나 福祉事務所에서는 「面
接員」「接受相談員」이라고 부르며, 一般的으로 이 段階의 面接을
『Intake』, 專門的으로 이 面接을 擔當하는 Worker 를 Intakeer 라고
부르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社會福祉機關에 여러가지 問題나 Needs 또 여러가지
의 理由나 動機로 援助를 要求하며 來所한다. 이 사람은 Applicant 로
社會福祉機關을 代表하는 Intakeer 와의 面接에 의하여 主體的으로 自己
意思에 의하여 援助를 바라고 相談하고자 決心하는 것이다. 이 때부터 이 사
람은 具體的으로 個別化되어 Client 로서 Case Work 의 對象이 된다.

이런 意味에서도 Intake 는 全援助過程의 縮小版으로서 重要하다.
Intakeer 는 社會福祉機關의 一般接受係와는 다른 專門的 機能을 가
진다.

Intake 는 Applicant (申請者)의 困難이나 問題를 어느程度 「看
破하는」일이 必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困難과 問題의 性質, 內容등
의 概要를 理解하는 專門性이 要求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種類의 具
體的서비스를 包含하는 援助와 處遇가 提供되느냐를 申請者에게 알
리거나 또 Worker 는 어떤 種類의 援助나 處遇가 適切한가를 判斷

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 Intake의 段階에서 두번 세번의 面接을 必要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社會福祉機關에 찾아온 申請者와 Intakeer의 最初の 面接을 Intake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1) Intake Worker의 役割

Intake는 社會福祉機關의 社會的인 目的・機能에 焦點을 두고, 申請者가 그것을 充分히 理解하도록 援助하면서 Worker의 立場에서는 그 機關에서 취급하느냐 않느냐를 判斷하며, 申請者の 立場에서는 그 機關의 서비스와 相談을 받을 것인가 마느냐를 明確히 하는 것이다. 따라서 Intake에 있어서의 Worker는 다음 事項에 留意해야 한다.

① 申請者가 가지고 있는 主訴를 傾聴하며 무엇을 願하고 있는가를 申請者の 立場에서 正確하게 把握할 것.

② 申請者가 援助를 무엇 때문에 願望하고 있는가, 그 困難이나 問題의 情況을 明白히 할 것.

③ 申請者の 主訴나 問題 情況을 客觀적으로 把握하여 機關의 機能이 그 問題의 解決을 援助하는데 適當한가 適當치 못한가를 明白히 할 것.

Intakeer의 役割은 다음의 Intake의 機能(全社會福祉機關의 機能과 關聯해서)을 充分히 發揮하기 위한 背景이 되는 것이다.

(2) Intake의 機能

Intakeer의 主要한 役割은 申請者와의 사이에 相互理解와 相互信賴關係를 形成하여, 申請者와 機關의 機能과의 連結 및 Case Work의 Worker = Client關係의 基礎를 形成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個人的인 信賴關係나 感情的인 結付를 形成하는 것은 아니다.

申請者는 一般的으로 不安感 또는 非難받지나 않을가 하는 恐怖感 社會通念上的 援助를 要求하는데 對한 恥辱感和 自責感 또는 여러가의 防禦的인 態度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Worker 는 申請者의 그러한 感情과 態度를 있는 그대로 受容하여 積極的으로 問題解決을 위한 積極的인 姿勢를 相對편에게 傳達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Intakeer 의 役割이며, 機關의 機能을 代表하는 Worker 가 申請者를 그 機關에 連結시키는 基本的인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Intake 의 機能이란 具體的으로는 다음과 같은 事項을 意圖的으로 행하는 것이다.

① 機關이 提供할 수 있는 Service 의 具體的 內容과, 困難 및 問題와 關聯하고 있는 制度, 資源에 대한 情報를 적절하게 說明하는 일

② 申請者의 援助를 받고자 하는 申請의 要求 意志, 或은 其他의 制度, 社會資源, 機關등의 援助를 받고자 하는 意圖를 確認하는 일

③ 具體的인 Service 의 援助 및 相談의 方法과 順序・節次등에 대하여 協議하며 동시에 機關의 方針 및 規則등의 組織・構造를 알기 쉽게 傳達하는 일.

(나) 社會調查 (Social Study)

社會福祉機關의 Intake 에 의하여 申請者가 援助・相談을 받고 싶다는 意志를 分明히 했을때 부터, 申請者는 Client 가 되며 그 사람의 困難이나 問題는 個別化된다. 그리고 그 個人의 問題의 理解에 必要한 資料가 蒐集되기 위하여 調査가 이루어 지는 段階로 들어간다. Intake 의 段階에서는 對象者(申請者)가 陳述하는 主訴가

中心課題였으나 調査의 段階에서는 對象이 擴大되는 것이 原則이다. 兒童問題의 경우, 그의 母親이나 保護者가 申請者인 경우가 많은데 問題가 되는 그 兒童과 그 問題를 理解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나 保護者로부터 얻어지는 資料와 呼訴만으로는 問題와 情況을 充分히 把握할 수 없다. 그 兒童問題와 家族構成員의 問題등은 家族이라는 社會의 第1次的인 集團과의 相互作用 關係에 의한 影響이 크다는 것은 明白하다. 따라서 家族 全體의 狀況을 理解하는 것이 必要하게 된다. 이것 때문에 主訴의 對象인 當該 兒童과 그의 特定の 家族構成員은 勿論 그밖의 家族構成員과도 面接해서 資料를 蒐集하여 眞實로 重要한 問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調査하는 일도 必要해 진다.

어떤 Case 에 있어서는 家庭訪問, 學校의 教師나 職場의 關係者 或은 其他의 社會施設과 機關과도 關係 있는 경우에는 그들과도 맞나는 것이 必要하다. 이런 뜻에서 이 段階의 調査는 對象이 擴大되며, 社會調査라고 부르게 된다.

(1) 調査의 方法

調査의 過程은 Intake 및 診斷, 社會的 處遇의 過程과 相互 關聯해 있기 때문에 Werker 와 Client 의 專門的 對人關係(專門的 目的關係) 卽 相互의 信賴關係를 基礎로 하고 있다. 이 일은 強制나 Werker 의 一方的인 事情으로 恣意的으로 資料를 蒐集하여 Client 의 信賴를 잃어서는 안된다. 原則적으로는 될 수 있는대로 Client 의 諒解를 얻어 調査를 행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Client 의 調査에 대한 參與가 圓滑해진 경우의 資料와 事實의 蒐集은 이미 處遇的인 役割을 다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資料를 蒐集하는 경우의 客觀主義와 主觀主義 등으로 분리워 지며, 檢討되어

왔다. 客觀主義란 H·Perlman 에 의하면 20 世紀初에 強調된 方法이라고 하며 그 理由를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① 援助를 要求해 오는 Client 를 脆弱者로 보고 그 基本的인 힘을 認定하지 않는 態度가 一般的으로 強했던 일.

② Case Work 的 判斷과 職務를 위하여 이른바 「科學的」인 客觀的 基本線이 되는 것을 強力히 主唱하고자 했던 일.

③ 前項의 社會學的 傾向이 支配的이었던 일.

④ 人間行動에 대한 知識과 理解가 不充分하였던 일.

오늘날에는 이와같은 客觀主義의인 資料蒐集은 傍系的 資料蒐集方法이라고 불리워 지며 以前과는 意味・內容을 달리한 資料蒐集의 方法으로서 重視되고 있다.

主觀主義란 Client 의 外的 側面의 調査와 其他의 資料源에 相當하다는 것을 極力 反對하며, 資料는 全的으로 Client 또는 그 家族을 통해서만이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思考方式이 1930 年代 以後의 心理主義의 Case Work 의 時代에 強調되기 시작하였다고 說明되고 있다. 이 立場은 오늘날에는 基本的 資料蒐集의 方法이라고 불리워져 있다. 調査의 過程에서는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Client 의 調査에서 參與를 原則的인 方法으로서 主觀的(基本的)인 것과 客觀的(傍系的)인 것의 두가지 側面을 重要視해야 하며, Client 에 관한 基本的인 資料를 傍系的 資料에 의하여 正確하게 把握해 가는 것이라고 理解해도 좋을 것이다.

(2) 調査의 節次

診斷主義의 立場에서 展開되는 調査——診斷의 圖式說明에 의하면

① 現在로부터 始作하여 過去에 미친다.

② 橫斷的으로 現在의 生活狀況을 明白히 한다.

③ 假說을 設定한다.

④ 事實資料에 근거하여 內的, 外的 兩面으로부터 假說을 檢證한다.

⑤ Study의 過程은 다음의 세가지의 質問에 應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a. 어떠한 種類의 問題인가

b. 그 問題의 所在은 어디인가

c. 그 問題는 어떠한 文脈속에 存在하는 것인가

이와같은 思考方式은 client에 特有하는 個別的인 Personality의 構造를 어떻게 理解하느냐 卽 基本的인 資料의 蒐集에 關聯돼 있기 때문이다. 診斷主義의 立場에서는 現在의 Client의 過去의 모습을 나타내는 生育歷과 生活歷이 Personality의 構造의 理解에 連結돼 온다.

또 機能主義의 立場에서는, 現在의 Client의 內在해 있는 創造的인 意志와 現在의 社會生活에 있어서의 經驗이 Personality의 構造의 理解에 連結돼 온다. 어느쪽 立場에서나 Personality의 基本的인 構造의 理解에 있어서 現在의 生活條件下에서 어떠한 社會的 機能을 營爲하고 있으며, 그 結果로서 어떠한 現在의 「困難・問題」가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Client의 生活歷과 現在의 經歷의 經驗 그 자체에서 부터 시작하는 것이 調査의 順序가 아니라 現在 Client가 直面하고 있는 問題를 明確하게 하는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Worker 自身の 見解와 Client의 見解가 또 Client의 Personality

構造가 現在의 問題와 어떻게 關係되고 있는가를 專門的 目的關係를 통하여 明白해 진다면, 基本的인 事實의 蒐集과 傍系的 資料의 蒐集이 診斷・處遇에 直接的 效果的으로 役割하게 되는 것이다.

(3) 調査事項

調査의 方法과 節次에서 보아왔드시 Client 의 「困難・問題」理解를 위한 事實의 蒐集은 現在로는 心理社會的 調査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調査事項은 直接的으로는 社會診斷에 關聯하기 때문에 細部的인 것은 省略해 둔다. 그 하나의 例로 “C·로저--스”에 의하면 兒童을 취급하는 경우의 構成要因을 다음의 8個事項으로 集約하고 있다.

① 狹義의 遺傳的 要因

② 後天的 身體條件과 多少의 遺傳的 要素를 包含하는 身體的 要因

③ 知 能

④ 家庭環境의 影響

⑤ 經濟的 文化的 要因

⑥ 同僚集團의 影響으로서 定義되는 社會的 要因

⑦ 家庭外에 있어서의 教育和 訓練制度

⑧ 過去의 諸要因으로부터 생겨나, 今後의 適應에 影響을 미치는 自己自身の 現狀에 대한 兒童自身の 洞察, ①에서 ④까지는 Client 에 관한 調査事項, ⑤에서 ⑧까지는 問題에 關聯하는 調査事項임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分類로

① Client 의 Personality 要因

② Client 의 心身의 健康的 要因

③ Client 를 둘러싸고 있는 經濟的・文化的・社會的인 環境的 要因을 調査事項으로 하는 例도 있다.

(다) 社會診斷 (Social Diagnosis)

Case Work 의 診斷은 具體的으로는 處遇・處置를 위한 것이며 Case Work 의 全過程을 통하여, 그 目標(무엇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와 方法을 明白히 하여 Worker 와 Client 의 問題 解決의 行動에 方向을 提示해 주는 것이다. 이 診斷의 目的은 處置計劃 卽 그 內容・目的・節次를 規定하는 것이며, 初期段階의 處置가 準據할 수 있는 『作業假說的인 診斷』(Working diagnosis)이 作成되는 것이다.

M・Richmond 는 「社會診斷」이라는 用語를 만들고, Case Work 의 最初의 專門的인 『準據의 틀(Frame of reference)』을 提供하였다. 그 女의 社會診斷이란 「주어진 바의 Client 의 社會的 狀況 및 Personality 에 대하여 될 수 있는대로 正確하게 定義 짓자고 하는 試圖」이며, 이 定義에는 個人 및 그 個人과 「어떠한 形態이던 相互依存하고 있는 他人 및 地域社會의 社會施設」과의 關聯이 包含되어 있다고 하고, 『診斷的 要領』으로 다음 세가지를 指摘하고 있다.

① 困難에 대한 規定

② 原因이 되는 諸要因

③ 資産과 負債

M・Richmond 의 診斷的 관심은 社會的・環境的인 것에 또 한편으로는 內的인 人間의 Personality 形成에 관한 心理的인 것이 있으나 특히 그女의 관심의 焦點은 Worker 의 一方的인 職務라기 보다는 「過程」으로서 Worker 가 最後에는 Client 의 社會的 狀況과 Perso-

nalinity에 대한 規定이 마련될 수 있는 一連의 段階로 생각되고 있다.

M. Richmond以後의 社會診斷에 관한 思考方式의 變遷은 精神醫學의 診斷體系의 使用, 診斷은 必要하지도 않다는 機能主義的인 생각, 診斷의 內容과 性質에 관한 意見의 相違 나아가 診斷의 構成要素에 관한 論議등 이른바 診斷的 範疇를 社會的인 것으로 하고자 하는 傾向에 대한 檢討들이다.

(2) 診斷範疇

Helen H. Perlman은 Case Work 診斷은 다음의 세 가지 內容으로 한다고 했다.

① Client에 의하여 招來되는 問題의 性質과 Client에 의하여 要求되는 goal

② 問題(그의 社會的·心理的狀況과 機能하는 힘)를 가지고, 그 問題에 關해서 援助를 要求하는 사람의 性質

③ 施設의 性格과 目的, 그리고 提供할 수 있는 援助의 種類 이와같은 意味는 Case Work에 있어서의 診斷은 Client가 지닌 問題 그 자체와 Client의 Personality를 診斷하는 일뿐 아니라, 앞에서 말하는 세 가지의 相互作用關係를 基本으로 해서 考慮되어야 하며, Client와 機關·施設의 兩者의 目的과 手段에 의하여 焦點이 規定되며 評價되어 限界가 定해진다는 것이다.

Helen H. Perlman은 이와같은 關係形成의 틀 가운데서 Case Worker가 效果的인 Service를 提供하기 위해서 活用되는 對象 理解의 方法으로서 力動的 診斷, 臨床的 診斷, 原因論的 診斷을 들고 있다.

첫째의 力動力 診斷은 Client가 안고 있는 現在의 問題와 그 存在, 그 性質, 그 解決에 影響을 주고 있는 諸要素의 理解이다. 卽 사람, 問題, 狀況의 複合된 狀態속에서 能動的으로 作用하고 있는 諸要素의 診斷이다. Perlman은 이 診斷中에 보통 心理的 社會的 診斷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것 및 Client의 Workability——現段階에서의 Client의 機能하는 힘——의 評價를 包含한다고 했다.

둘째로, 臨床的 診斷은 Case Work에서 從來에 使用되어 오던 精神分析學과 精神醫學에 由來하는 가장 進歩된 것으로 <記述的> 分類體系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條件的・發生的> 分類體系의 方向을 指向했던 것이다.

이것은 Client의 Personality의 不適應의 型・性質・機能障害의 特質을 나타내는 問題行動이 가지는 欲求와 類型을 識別하여 Client로부터 豫想되는 行動과 反應의 類型(Client의 社會關係・對人關係)을 指摘하는 것이다.

Client의 臨床的 症候의 分類와 考察은 精神醫學과 臨床心理學의 分野이며, Client에 있어서 必要하다면 各各의 專門分野의 專門的 診斷이 要請될 것이다. 이 때문에 Worker는 Personality의 基本的 構造와 機能障害를 認知될 수 있는 限의 基礎的 知識을 必要로 한다. 一般的인 臨床的 診斷分類的 典型으로서는

- ① 精神薄弱
- ② 1次性 行動異常(Primary behavior disorder)
- ③ 神經症
- ④ 精神病質 人格
- ⑤ 精神症

⑥ 身體的 缺陷

⑦ 正 常

이 中에서 1次性 行動異常은 環境에 對하는 反應으로 形成되었다고 보여지는 것으로서 ①③④⑤와는 區別되어 취급되는 行動異常이며 環境要因과 直接的 關係가 있으며 Case Work의 對象領域에 包含되는 主된 것으로 理解해도 좋을 것이다.

이 밖에 環境的 要因과 密接한 關係를 가진 兒童의 情緒剝脫과 成人의 一時的・狀況의 人格異常등으로 불리워 저서, Client의 特異한 性格傾向, 或은 逸脫된 行動樣式을 가진 性格障害——Character disorder——或은 Client의 生活史와 密接한 關係가 있다고 하는 情緒的 未成熟——Emotionally immaturity——도 Case Work의 對象領域으로서 舉論되는 것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Perlman은 臨床的 診斷은 處遇받는 사람의 性質을 理解하는데 必要하고 또 이 適切한 理解를 解決해야할 問題들 을 얻고자 하는 成果들을 可能케 하고자 하는 方法에 對하여 評價할 必要가 Case Work의 職務에 尙存하고 있다고 說明하고 있다.

세째의 原因論的 診斷은 問題發生의 原因과 그뒤의 發展過程을 究明한다. 卽 그 原因關係의 展開에 注目하는 것이다. 그 問題의 原因이 Client 自身에게 있는 것인가 或은 그의 生活環境에 있는가 어떠한가를 分明히 해 가는데 있다. 結局 問題・原因의 現在의 要因에는 直接的으로는 關聯하지 않고, 問題의 起源과 問題에 關聯해 있던 生活史에 보다 많은 重點을 둔다고 생각해도 좋다. 이 原因論的 診斷은 Client의 機能의 特定側面의 問題 및 그 問題가 發展해 가고 있다고 認定된 경우 도움이 된다. 結局 Client의 現在의 問題가 中

心인데도 Client의 反應이 마치 過去의 經驗을 現在의 體驗에 끌어들이며 認識하고 있는것 같은 경우 卽 以前의 反應의 形態가 固定되어 現在에 이르고 있는 경우 등이다.

이 때 Worker는 Client와 面接하고 test하여 現在의 不適切한 行動樣式에 대하여 過去의 原因과 關聯되어 있는 事實을 認識할 수 있도록 援助하는 것으로 過去의 原因으로부터 Client를 解放시키는데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技法은 勿論 力動的인 것이며 治療의 價値가 充分히 있는 것이다.

그런데 以上の 세 가지 診斷이 個別的으로 이루어 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社會診斷이 될 수 없다. 現在 段階에 있어서의 問題 狀況이 Client의 要求・施設과 機關의 機能, Client의 Workability와의 關係에 있어서 究明되지 않은 限 Case Work의 組織內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結局 Case Work 診斷은 前述한 診斷을 活用해서의 「사람・問題・場所・過程」의 解決方案을 明確하게 하는 試圖로서 把握되지 않으면 안된다.

Perlman은 力動的 診斷을 사람——問題——狀況이 複合的인 要因中에서 活潑하게 作用하고 있는 力の 診斷으로서 그 本質을 把握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 女는 社會的 役割의 概念을 導入하였던 것이다. 「役割의 思考方式은 그것이 充分히 理解되었 때, Case Work 되어야 할 問題의 理解에 매우 重要的 社會的・個人的인 相互作用의 領域을 分明히 했다. 役割 問題의 性質評價는 Client가 그것에 作用하는 動機造成, 能力・機會에 대한 評價와 더불어 個個의 Case에 社會診斷의 빛남을 안겨 주는 것이라고 믿은」 그 女는 다시 한번 診斷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問題를 가지고 있는냐에 대

해서만이 아니라, 왜 그들이 自己의 問題를 處理할 수 없느냐에 焦點을 두었다고 하겠다. 社會的 役割은 社會的인 場을 整備하고 人間의 Personality 를 自己自身이 나타내고 充實해 지는 社會的業務와 結付되기 때문이라 말하고 社會診斷에 있어서 解決되어야 할 特定한 問題(the Problem to - be - Worked)의 領域을 診斷의 結果 얻어진 症候群(問題群)속에서 選定하여 Worker 와 Client 의 관심의 中心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示唆하였다.

(2) 家族診斷의 範圍

Case Work 의 過程에 있어서 力動的 診斷의 方向이 Case 의 心理 社會的過程의 檢討에 有效하고 더우기 Case Work 過程의 檢討에 獨自의 領域을 發見할 수 있는 것이라고 考察되어 왔으나 이 心理 社會的診斷 範疇 設定에의 試圖의 하나로 되어 있는 家族診斷의 概念에 대하여 簡單히 살펴 볼까 한다.

이미 밝혀둔대로 Social Case Work 에 있어서의 個人中心的 診斷에는 限界가 認識되어 그것을 補充하는 것으로서, 或은 狹義의 社會的인 志向을 導入하는 것으로서 全體로서의 家族을 把握하는 것이 問題가 돼 왔다.

이 全體로서의 家族의 檢討는 必然的으로 地域社會 그것과 關聯하는 側面이 重視되기 때문에 普遍的 Case Work 의 本質的 課題로서 研究가 要求되어 왔던 것이다.

그 代表的인 一例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C·P 의 家族診斷範疇로서 家族構成員과 個人的 問題를 集團으로서의 家族全體와의 關聯下에 理解하며 處遇하려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個人的 「精神內面の 機能樣式」(Intra-Psychic functioning)

보다는 家族의 「觀察할 수 있는 社會的行動」—「社會的 機能樣式」(Social functioning)에 焦點이 놓여져 있으며 處遇의 效果를 評價해 가는 Research 의 方法도, 家族成員인 個人에 대해서 뿐 아니라 家族全體를, 그 「觀察할 수 있는 社會的行動」에 의해 評價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이 家族機能測定の 範疇는 다음과 같다.

A. 家族의 相互關係와 統一

1. 夫婦關係
2. 親子關係
3. 同胞關係
4. 家族紐帶

B. 個人的 行動과 適應

1. 兩親의 個人的行動과 適應

(1) 心身 — 身體的狀況

(2) 役割行動

- a. 夫 또는 妻로서의
- b. 어버이로서의
- c. 取得提供者로서의
- d. 主婦로서의

2. 兒童의 個人的行動과 適應

(1) acting • aut 的 行動

(2) 心身 — 身體的狀況

(3) 役割行動

- a 어린이로서의

b. 學生으로서의

c. 同僚 group member 로서

C. 어린이의 保護와 버릇드리기

1. 身體的 保護

2. 버릇드리기의 方法과 情緒的 保護

D. 社會的 活動

1. Informal 한 集團과의 關係

2. Formal 한 集團과의 關係

E. 家計管理

1. 所得源泉과 그 額

2. 職業, 職務의 狀況

3. 金錢의 使用方法

F. 家事管理

1. 物理的 設備

2. 家庭管理의 水準

G. 健康管理

1. 健康上の 問題

2. 健康管理

H. Worker 에 對한 關係

1. Worker 에 對한 態度

2. Worker 의 利用方法

I. 地域社會資源의 活用

1. 學 校

2. 教會, 寺刹, 새 마을會館, 靑少年會館

3. 醫療機關

4. 社會的 資源

5. 리크리에이션機關

以上の 아홉가지 範疇의 類型에 의하여 社會的 機能 樣式과 그 移動을 評價해 가는 경우에 그 基準으로서 「地域社會의 관심」을 基礎로 해서 다음의 세段階의 水準을 設定한다.

1. 不適切한 機能樣式

2. 限界가 될 수 있는 機能樣式

3. 適切한 機能樣式

이 一般的 基準을 26個의 細項에 合致시키 「機能樣式 Level 一覽表」가 準備되었던 것이다.

이밖에 精神力學的 家族診斷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Nathan W. Ackerman의 診斷範疇도 有名하다 그는 個人的 治療와 家族集團의 治療를 統合하고자 해서 家庭生活의 障害를 個人과 家族集團 兩者의 障害라고 보고 있으며, 障害를 「心理的 過程」「對人關係의 過程」「全體로서의 集團過程」의 諸次元에서 檢討하고자 했다. 具體的으로는 個人的 病理現象을 家族의 內的組織化, 家族의 外的適應, 夫婦關係, 育兒樣式등의 關係가 있다는 概念에서부터 檢討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家族 그 자체의 診斷과 處遇 뿐 아니라 個人에 焦點을 맞춘 診斷範疇라고 할 수 있다.

어찌되었던 家族診斷 範疇는 단순히 家族全體를 診斷하는 目的만을 위해 檢討되는 것이 아니라 Case Work 過程의 基本概念인 社會調查, 社會診斷, 社會的 處遇라는 一聯의 Case의 進展狀況을 評價하는 것으로서 活用하는 것이 目的이다. 무엇이냐고 規定하고 있는 既存의 概

念이다. 勞動, 技術, 實踐과의 關聯性・類似性 및 相違性이 充分히 檢討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社會的 處遇 方法의 경우, 社會를 實體로 보느냐, 機能으로서 보느냐 하는 價值觀의 問題가 曖昧한 대로 남아 있어 社會的 處遇 方法의 明確化의 障害가 되어 왔다.

M・Richmond가 提示한 社會改良의 志向(1917年)과 個人的 Personality 變容에의 志向(1922年)이 現在까지 統合되지 않은채 남아 있다.

(a) 間接的 處遇

여기서 말하는 間接的 處遇란 Client의 社會的인 生活環境에 있어서 困難・問題를 招來하고 있는 여러가지 要因들을 直接的, 間接的으로 除去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런 경우 Client에게 必要한 援助의 具體的인 資源과 節次나 順序를 提供하여 Client가 主體的으로 그것들을 活用하여 問題解決에 適合하도록 하는 處遇이다.

앞에서 말한 M・Richmond 以來의 處遇分類에서는 間接的 處置(人的・物的環境에서 招來하는 變化 — 1922年), 管理方式(環境 — 調整 — Porter Lee - 1923年), 資源의 活用(Milford Conference - 1929年), 環境의 修正(環境의 調整이라던가 間接的療法 — F・Hollis, 1939年, 1949年), 社會療法(環境上的 諸要因에 積極的으로 作用시키는 各技法의 使用方法과 社會資源의 效果的인 使用方法 — Lucille Austin, 1948年), 間接的 處置法(環境의 操作과 具體的 Service의 提供 — G・Hamilton, 1940年, 1951年), 適應樣式的 維持를 目的으로한 處置의 一部(環境의 調整등 技法의 使用에 依存해서 행하는 것 — FSAA 美國家庭福祉協會, 1953年), 環境의 處置(經濟的 援助・直接的 Service와 直接的 處置의 ① ~ ④까지를 包含하는 것 —

F・Hollis, 1964 年) 등이 이에 該當한다고 할 수 있다.

이 間接的 處遇는 現實的으로는 社會資源의 質과 量, 바꾸어 말하면 社會保障制度 社會施設・機關등의 充實의 程度에 의하여 限定되는 것이지만, 社會的 關係의 調整・他機關에서 送致와 資源의 紹介 斡旋, 具體的 Service 의 提供, 福祉施設에의 收容措置, Client 의 家庭環境의 調整등을 包含하게 된다.

本稿에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普遍的인 Case Work 이 實施되는 場으로서 생각되는 「兒童相談所」를 中心으로 해서 間接的 處遇의 實際에 대하여 檢討해 보기로 한다.

兒童相談所에서는 세가지의 Case Worker 를 둘 必要가 있는데, 接受・相談・措置등의 機能으로 分類할 수 있다. (現在 要員의 不足으로 한사람이 이 機能을 다해야할 實情에 있음), Case Worker 는 兒童相談所의 業務上 骨格을 이루는 重要한 職種이며, 社會的, 處遇의 直接的인 實務者이기도 하지만 主로 間接的 處遇에 關聯하는 것으로서 業務의 內容은 兒童을 中心으로 그 家庭에 대한 社會調査 兒童의 欲求의 把握과 그에 相應하는 社會的 處遇의 講究, 그리고 그 家族 또는 養親・保護受託者에 대한 指導이다. 여기에서 直接的인 處遇는 勿論이지만 施設과의 連絡調整, 機能과 處遇方針의 說明 및 必要에 相應하는 家庭環境・社會環境의 調整・修正・操作을 행하는 것도 業務에 包含된다.

이런 觀點에서 보면, 兒童相談所의 社會的인 立場이 明示되어 있다는 것이며, 兒童 내지 兒童을 包含하는 家族은 社會生活을 營爲하는 過程에서 困難・問題를 體驗하고 있는 Client 로서 把握되고 있기 때문에 社會的인 問題解決을 擔當한 專門援助者로서 兒童福祉要員이

配置되어 있는 것이다.

이 Worker 는 機關이 提供하는 Service 業務를 Client 의 要求 만에 應해서 仲介하는것 같은 Worker 가 아니라 地域社會의 委任을 받은 社會的 責任을 擔當한 것으로서 機能해야 한다. 이런 意味에서도 積極的인 家庭訪問, 關係者와 關係機關・諸施設과의 接觸 및 Client 와 그 家族이나 保護者와의 面接을 통하여 作用하는 社會的인 性格을 가진 處遇가 要請되는 것이며, 이 Worker 의 業務는 단순한 傳統的 意味에서의 間接的인 處遇가 그 中心이 될 수는 없다. 兒童相談所와 地域社會와의 媒介者로서의 機能은 普遍的인 Case Work 의 機能인 것이다.

社會福祉擔當 第一線 勤務者가 公的扶助 Case 를 援助하는 경우에 일단 間接的 處遇로서 認識 把握되는 것을 例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Client 의 生活困窮으로부터 派生되어 있는 經濟的 要求에 대하여 經濟的 給與로서의 生活保護를 提供하는 일.

② Client 의 經濟的인 側面을 補充하는 Service 와 資源의 提供, 이른바 經濟的給與에 追加해서 行해지는 具體的 Service 를 提供하는 일 (法外 援護의 活用 등)

③ 社會福祉事業法에 規定하는 法定의 Service —— 經濟給與와는 直接的으로 關聯되지 않은 側面에의 援助

④ 非經濟的인 것 中에 福祉關係法規 以外의 援助에 속하는 Service (家族關係와 社會病理的인 問題에 對應하는 Service 등이다.

社會福祉擔當者가 第一線에서 行하는 業務는 最低限度의 生活保障을 위한 經濟給與라는 中心的 機能에서 보면 ① ②의 業務는 援助專門職

으로서의 Worker 의 社會的 處遇라고 하기 보다는 實務的 側面에서 分離하여 考慮해야할 性格의 것일 것이다. ③ ④는 現行 福祉業務의 機能으로서 보다는 家族福祉機關등의 設置에 의해 實施되는 普遍的 Case Work 의 機能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現實으로 社會福祉擔當者の 役割, 社會的 處遇, 特히 間接的 處遇에 있어서는 Generic Worker로서 現行 制度 資源을 補充하거나 補完하는 것만 아니라 社會資源의 活用을 充實히 하는 「具體的 Service」만을 志向하는 것도 아니고, Client의 主體性和 生存權을 擁護하기 위한 Case의 處遇・調査등 包括적인 側面에 注目해 가야할 것이다. 既存의 制度・施設을 利用하는 경우, 制度・施設이 가지는 一般性에 대하여 Client의 個別性を 考慮하면서 그것을 修正하는 것으로 해서 制度・施設에 結付시켜 간다는 方式으로 Case Work의 役割이 考慮된 方向과 對象者가 가진 個別性的 尊重에 透徹하여 이 need를 가능한 限 收拾하기 위해서 制度・施設의 一般성을 반대로 가능한 限 擴大시켜 가고자 하는 方式이 있었다.

社會福祉擔當者는 生活의 困窮이라는 具體的 問題를 안고 있는 Client 및 그 家族(所謂 家口의 認定에 의하지 않고)에 대하여 社會的 資源의 最大限의 活用과 擴大를 圖謀하여 社會的 經濟的機能의 自立의 達成을 指向하는 것이 間接的 處遇가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社會的 處遇方法의 하나로서의 間接的 處遇의 間接的이라는 말의 意味에는 環境調整이라던가 個人的 態度和 社會的 關係에 影響을 주기 위한 環境要因의 利用이라던가 活用이라고 하듯이 主로 Client에 關係되는 家族과 그 成員, 其他의 關係者의 人的環境이라는 狹義의 社會的 意味를 초월하는 社會的 制度・體系를 志向

하는 方向性이 包含되는 것이다.

(b) 直接的 處遇

여기에서 말하는 直接的 處遇란 Client 自身 및 家族成員등의 主觀적인 事實, Personality, 情緒적인 側面에는 社會適應上的 障害가 認定되는 경우에 주로 Case Work 面接의 處遇를 통하여 Client 의 態度, 行動, 感情, 社會關係의 歪曲을 修正하며 Client 가 主體的, 積極的으로 그 社會環境을 變化시켜 가도록 援助하는 處置라는 것이다.

M·Richmond 以來的 處遇 分類에는 Case Work 에 있어서의 直接的 處遇의 變遷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直接的 處遇는 Client 의 Personality 或은 情緒的 諸問題의 Level 및 社會適應上的 社會的 役割 遂行의 障害內容에 의하여 限定되는 것이지만 Client 가 自己의 問題를 분명히 하여 問題 障害의 要因에 對하는 洞察을 深化시켜 그것을 修正할 수 있는 內的能力의 活用을 통하여, 個人的·社會的機能의 改善을 圖謀하는 따위의 支持的인 處置와 面接의 Worker 對 Client 關係의 使用을 中心으로 한 治療的 (Therapeutic)인 援助가 包含된다.

直接的 處置는 Client 의 社會적인 場에 있어서의 生活機能樣式, 情緒的構造 및 行動樣式에 直接的으로 關聯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間接的 處遇의 基礎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直接的 處置는 ① 支持的 處置 (Supportive therapy)와 ② 治療的 處置 (Therapeutic interviewing)로 分類한다.

支持的 處置는 1930 年代에는 精神醫學 精神分析의 發展의 影響을 받아 「個人에 대한 理解의 增加가 끼친 衝擊」, 그리고 「環境만을 變化시키는 것을 통해 家族에게 보다 나은 適應을 가져오게 하려 하

였던 以前의 失敗로부터 생겨난 欲求不滿의 蓄積」을 克服하기 위한 動向이 있었다. 當時는 環境調整이 唯一한 Case Work 機能이라고 생각하는 一元的인 見解와 社會的인 要因을 排除하는 心理的인 要因의 處遇에 沒頭해 가는 見解가 있었으나 Charlotte Towle 와 같이 Client 를 個別化시켜 機關의 機能 Worker 의 專門職資格과 Client 의 全體的인 狀況에 固有하는 要因을 包含하는 多様な 諸要因에 대하는 援助方法 Service 를 關聯시킴으로써 이 두가지의 Approach 를 連結시키는 方案을 探求하기 시작한 實踐家가 나타났던 것이다. 그들은 Case Work 의 機能은 個個人的 生活에 對한 內面的인 壓力・外面的인 壓力이 雙方에 대한 理解에 根據하는 特殊한 援助的 役割로 規定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時代의 援助의 專門職은 實體的인 援助이던 心理的인 援助이던 그것이 效果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種類의 援助도 사람으로서의 患者 또는 Client 그 問題 要求하고 있는 것 및 그 狀況가운데서의 環境的 心理的인 要因의 結付와 關聯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으며, Worker = Client 의 關係에 대한 관심과 함께 處遇에 있어서의 分化된 Approach 의 問題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支持的 積極的인 關係가 注目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支持』라는 말의 辭典上的 定義를 보면 ① 붙들어 버팀, 부지하여 지님, ② 어떤 사람이나 團體의 主義・政策・意見등에 贊同하여 援助함, 또는 持續的으로 지탱함 — 하는 따위와 같이 慢性的인 Case 에서 보다 進展된 破壞를 阻止하기 위한 方法, 다른 調整이 不可能한 때에 利用되는 方法으로서 보다 「絶望的」 Case 를 위한 緩和劑的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處置의 方法으로서는 經驗이 적은 Worker 들의 것. 精神醫學의 分野에서도 一般的으로 支持的인 處置는 最下級の 治療形態로서 「深層의」 心理療法과 精神分析에 比하여 훨씬 挑戰的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던 것은 注目해야할 일이다.

1940 年以後에 있어서는 精神醫學, 自我心理學(Ego Psychology)의 發展에 影響을 받아 보다 分化된 方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卽 「“오-스친”의 心理療法에 있어서의 支持的治療・支持的 洞察的인 技法의 混合된 經驗療法이 그것이다.

F·Hollis 도 네가지의 處遇分類中에 心理的인 支持를 指摘하여 心理的인 支持와 自己 覺知의 成長이 Cace Work 의 方法의 核으로서 結合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美國家庭福祉協會의 報告書, 가운데도 處遇 分類로서 A型——適應樣式的 維持를 目的으로 한 處置, B型——適應樣式的 修正을 目的으로 한 處置를 指摘하고 있으나, 心理的인 支持는 雙方的 處置에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Personality 構造의 變化 또는 改變을 指向하지 않는 處遇는 「表面的」이고, 第2級の 것과의 傾向에서 支持的인 處遇는 「深層의」 範疇는 주어지지 않고 意識과 前意識을 취급하는 것 뿐이라는 評價밖에 받지 못했다. 이런 類의 思考方式은 心理的인 援助가 주어지는 水準은 Client 또는 患者가 援助를 取得할 수 있는 水準과 關聯하는데 틀림 없다는 매우 重要的 事實을 看過하게 된다. 援助者의 專門的인 關心・目標는 最終的인 決定要因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時期에 있어서는 그런데도 不拘하고 支持的인 處置가 援助方法으로서 實體가 주어져 治療에 있어서의 妥當한 技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要請되고 있는 知識・理解・技能으로서도 또 어느 程度의 尊重을 받아 왔다.

Lola G. Selby 에 의하면 支持的인 技法은 다음 세가지라고 한다.

㉠ 援助者는 患者 Client 가 自己의 걱정꺼리나 關心事에 대하여 率直하게 이야기 하기를 원하며, 또 걱정꺼리나 關心事를 傳達하는 것을 援助받을 수 있는 것으로 受容・關心・理解에 基礎를 둔 治療的 環境을 準備해야 한다는 것.

㉡ 支持的인 援助者는 問題를 焦點化하여 適切한 助言 또는 示唆를 해서 特定한 實踐的 計劃에 의해 再保證, 激勵, 援助하면서 職務를 遂行하는 가운데서 受動的인 役割을 취하기 보다는 오히려 能動的인 役割을 취하기 바란다.

㉢ 治療者는 現在의 日常的인 問題와 關聯되는 援助를 必要로 하는 사람들과의 實踐的인 計劃으로 옮겨가는 階梯에 그에 상응하는 資格과 즐거움을 가져야 하는 일

以上の 세가지는 社會的 處遇에 있어서의 直接的 處遇 (이 경우 支持的 處置)의 意圖하는 것은 精神醫學과 臨床心理學과 같이 Client 또는 患者의 Personality 構造의 全體에 關聯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Client를 包含하는 社會的인 狀況인가 혹은 Client의 自我機能인가 하는 疑問에 應答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現在 主要한 治療的 approach로서 利用되는 支持的인 援助가 有效한 個人은 다음의 두가지 形態라고 했다.

㉠ 防衛的 System에 對應하기 보다는 커다란 威脅에 견디기 어려운것과 같은 弱한 自我構造를 가지고 있는 사람.

㉡ 日常的인 狀態에서는 매우 잘 機能하지만 統合的인 能

力을 一時的으로 損傷하는것 같은 通常과는 다른 어떤 困難한 外的 狀況에 대하여 反應하고 있는 사람

여기에서 注目되는 것은 Client 의 個人的・社會的 機能의 遂行을 援助하는 것을 治療的인 目標로 하고 있는 일이다. 弱한 自我構造를 가진 Client 는 우리들의 臨床體驗으로도 매우 많은 것으로서 이와 같은 Client 에 對하여 洞察療法과 精神分析和 같은 露出技法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自我의 機能이 一時的으로 損傷되고 있는 Client 에 對해서도, 自我의 變化는 必要치 않으므로 露出技法은 必要치 않고 統合的인 能力의 回復이 要請되고 있는 것이다. 이 自我의 힘은 늘 處遇方法을 選擇함에 있어 決定的인 要因이라고 F・Hollis 는 指摘하지만, 이런 思考方式의 傾向은 다른 諸科學의 影響이며 이런 경우의 支持的 處置란 症候를 除去하여 行動의 改善 보다 나은 社會適合適應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自我의 防衛를 回復 또는 強化시키고자 試圖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고 Lola G. Selby 는 指摘하며, Worker 는 또 Client 의 社會的인 環境속에 있는 힘을 支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添言하고 있다.

Lola G. Selby 는 또 G.K. Pollak 의 「自我支持的인 關係는 …… 어느 程度 制限된 技術처럼 들리겠지만, 制限된 것이라도 靜的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Client 의 Personality 의 보다 進展된 崩壞를 阻止하는데 必要한 自我에서 支持를 提供하는 것이지만 많은 Case 에서 處遇關係로부터 일어나는 것은 現狀保存을 초월해서 進行한다. 處遇의 結果는 自我의 힘을 補強할 것이고, 社會的인 것에서부터 受容되는 生活狀況에의 새로운 Approach 를 發展시킬 것이다」하는 것

을 引用하여 支持的인 援助는 一般的으로 制限된 治療的인 goal — personality 의 再構成을 志向하기 보다는 오히려 適當한 形態로 適切하게 機能하기 위해 個人的 힘을 持續的으로 支持하는 것 — 의 見地로부터 考慮되고 있으나 洞察 또는 計劃的인 Personality 의 再構成 없이도 個人的 內面에 變化가 일어 난다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指摘하고 있다.

또 支持的인 治療가 Personality 의 表面的(意識・前意識)인 일에만 對應하는 處置뿐이라는 생각에 對해서도 Nathan W. Ackerman 을 引用하여 現實的으로는 Personality 의 깊은 Level 을 취급하는 것의 意味와는 相對的인 表現이라 하고 萬一 支持的인 目標・方法이 Personality 의 基礎的인 變化 成長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된다면 支持的인 治療 또는 情緒的인 解放을 통하여 達成되는 治療는 Level 의 깊은것일 것이라는 생각을 示唆하고 있다.

Lola G. Selby 의 支持的인 援助에 對한 思考方式은 Social Work 의 觀點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支持的인 援助란 Client 가 環境의 또는 情緒的인 壓力과 이러한 것들의 統合된것中 어느 것에서는 救濟되도록 援助하기 위해 Social Work 에 의하여 利用되는 方策으로서 定義될 것이다. 環境의 改變에 대한 넓은 概念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實體的인 Service 는 問題解決時에 Client 自身の 適應的인 機能을 보다 잘 準備시킬 수 있게 Client = Worker 關係의 構造속에서의 非實體的인 Service 와 더불어 “支持的인 援助”라는 用語에 包含될 것이다」하는 것은 또 「…… 支持的인 援助의 goal 은 Personality 를 基礎的으로 變化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Client 가 보다 快適하게 느끼도록 援助하여 問題解決을 위한 Client 의 現存하는 能力・資源을 喚起시켜서 Client 가 自己의 統合的

인 能力을 最大限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助力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不過하다」고 明示하고 있다.

이것에서 부터 우리들은 支持的인 處置가 Case Work의 目的에 適合하고 있는가를 배우는 것으로 社會的 處遇에 있어서의 間接的 處遇를 그 基礎에 두고 지탱하는 approach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兒童相談所에 있어서도 兒童의 福祉와 權利가 實現·擁護되기 위해서 必要한 外的條件을 整備하기 위한 間接的 處遇(具體的으로는 環境調整等)와 直接 兒童 또는 家族의 情緒的 側面に 作用하는 支持的 處置의 二面이 必要하게 되어 있으나 支持的 處置를 前提로 했을 때 間接的 處遇가 살아나며 이 過程을 통하여 社會的인 機關인 兒童相談所에 있어서의 Social Work가 비로소 社會的으로 志向된 專門職으로서의 位置가 確固해 지는 것이다.

또 福祉事務所에 있어서 公的扶助制度를 中核으로한 Service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또 그 機能에 있어서의 經濟的 側面과 臨牀的 Service를 分離시켜 社會的 處遇가 이루어 지는 方向에 있다고 해도 從來와 같은 間接的 處遇만으로 Client의 個人的, 社會的 機能의 改善은 期待할 수 없을 것이다. 福祉事務所에 있어서의 Service가, Client의 自立助長을 目的으로 한 具體적인 Service의 提供이 主된 機能이라는 意味은 Client의 主訴를 經濟的·非經濟的 問題로 區分하여 Service를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現實으로 社會構造의 直接的·間接적인 影響을 받아 Client의 日常生活이 貧困狀態에 빠져 있다는 認識에 의한 社會問題的 觀點에 立脚하여 Client의 生活困窮의 狀況을 個別的으로 把握하여 Service를 행한다는 것이며, 具體的 Service의 提供이란 現行 制度에 의하여 限定되는 것이 아

나라, 間接的 處遇를 통하여 Client 의 生活困窮으로부터 派生되고 있는 解決을 必要로 하는 特定한 need 를 可能한 限 充足시키기 위해 制度나 施設을 擴大시켜 가는 社會的 方向性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도 Client 에 對한 直接的 處置(이 경우 支持的 處置)가 보다 效果的으로 그 方向性을 實現시키는 것 或은 直接的으로 關聯돼 오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이런 뜻에서 社會福祉擔當者가 행하는 Case Work 은 Case 의 個別性에 의해 規定되어, 間接的 處遇 或은 直接的 處置의 어느 것인가가 先行하며 或은 並行되어 이루어지는가도 알 수 없으나 Client 에 對한 面接을 媒介로한 支持的인 Approach 가 基本이라는 것은 明白한 일이다.

4) Case Work 의 原則

Client 는 日常生活을 營爲함에 있어 自力으로는 解決할 수 없는 여러가지 困難·危機에 處해 있다. 이 Client 에 共通하는 態度·感情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또 그러한 狀況에 있는 Client 에 專門的 援助를 提供하고자 하는 Case Worker 의 態度·感情은 어떠한 것일까.

一般的으로 Worker 와 Client 의 關係는 社會的인 場을 前提로 하는 力動的 相互作用關係이며 Client 가 自己와 그의 環境과의 사이에 가장 좋은 適應을 達成하도록 援助하는 目的을 가진 Case Worker 와 Client 와의 사이의 態도와 感情의 力動的 相互作用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Felix P. Biestek 은 그의 著 The Case Work Relationship (1957年)에서 이 Worker = Client 關係를 case Work 의 本質로 보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Worker 와 Client 의 關係, Worker 의 基本的 態度

및 Client 에 관하여 基本的 問題로 區分하여 case Work 의 原則이 어떠한 것인가를 檢討해 보기로 한다.

(가) Worker 와 Client 의 關係

Worker = Client 의 關係는 Case Work 의 魂이라고 불리
위지며, 한편 調査, 診斷 및 處遇의 過程은 靈肉과 같은 것으로서,
이것은 實際로 分離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도 좋은
Worker = Client 關係가 없으면, 面接・調査・診斷 및 處遇의 過程은
죽은 Service 라고 할 수 있다고 Felix P. Biestek 은 말했다.

Case Work 의 實踐의 歷史에서도, 關係라는 意味의 用語로서는 友
愛(Friendship), 接觸(Contact), 共感(Sympathy) ...등등으로 불리
워지던 것이 있었으나, Case Worker 와 Client 의 Personality를 基
礎로해서 Client 의 現實的・情緒的 問題에 焦點을 맞추어 보다 나은
解決과 機能을 實施하기 위한 手段을 만들어내는 力動的 相互作用에
Case Work 에 있어서의 Worker = Client 의 關係라고 불리워지기 시
작했다.

勿論, 이 關係의 目的은, Case Work 의 過程 全體의 全般的인 目的
의 一部로서 Worker = Client 關係의 보다 나은 樹立없이 Case
Work 의 專門的 Service 는 效果的인 것이 될 수 없다.

Felix P. Biestek 은 Case Work 關係 卽, Worker = Client 關係를
規定하는 7 個原則을 다음과 같이 提示하고 있다.

- ① 個別化(Individualization)
- ② 意圖的인 感情의 表現(Purposeful expression of feeling)
- ③ 統制된 情緒的 關與(Controlled emotional involvement)
- ④ 受 容(Acceptance)

⑤ 非審判的 態度 (Non - judgmental attitude)

⑥ Client 의 自己決定 (Client self-determination)

⑦ 秘密保持 (Confidentiality)

이 7 個의 原則은 各各 別個의 原則이 아니라 相互 關聯되기도 하고, 補足하기도 하는 것은 明白하다. 例를 들면 問題를 個別化할 수 없게 되면, Client 를 있는 그대로 受容할 수는 없다.

Worker 가 스스로의 情緒的 關與를 統制할 수가 없게 되면, 非審判的 態度를 취할 수 없다. 나아가 Client 를 受容할 수가 없으면 Client 의 自己決定을 尊重할 수도 없게 된다.

(나) Worker 의 基本的 態度

Case Worker 의 過程, 特히 Worker = Client 關係에 있어서 Case Worker 만에 適用되는 몇 가지의 概念이 있다. 例를 들면 自己覺知, 客觀的 態度, 나아가 專門性 등이다. 이것들은 Worker 와 Client 의 關係를 樹立하는데 必要한 不可分の 性質의 것이다. 本稿에서는 그것들 가운데 基本的인 Worker 의 態度에 關聯하는 自己覺知에 대해서만 言及하고자 한다.

自己覺知 (Self-awareness) Case Work 援助에 있어서는 Worker 自身이 가장 重要的 資源으로서 Client 가 自由로이 活用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Worker 自身도 援助過程에 있어서 自己를 充分히 驅使해야 하는 것을 意味한다. Case Work 의 援助는 一般的으로 Client 의 Personality 의 構造와 機能, 卽 行動科學에 대하여 理解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Worker 도 自己의 Personality 의 構造와 機能에 대하여 理解되고 있는 것이 前提條件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勿論, Worker 가 自己를 包含한 Personality 와 行動에 대하여 周知하고 있는 것은 Worker 로서의 專門性的 基礎條件이지만 이른 바, 이 自己覺知는 Case Work 에 있어서의 社會的 處遇의 目標도 Worker 로서의 成長目標도 아니다. 自己覺知란 Worker 가 Social Work 의 基礎的 學科를 學習하여 專門的 方法을 使用함으로써 增加되어 오는 副產物인 것이다.

專門家로서의 自己發展은 Case Work 에 관한 知識과 技法을 把握하여 그것들을 專門家로서의 倫理・態度 價值觀의 틀속에서 統合하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

이런 意味에서의 Worker 로서의 自己를 發展시켜, 自己覺知를 높이기 위한 學習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側面이 있다.

- ① Social・Case Work 에 관한 基本的 學習
- ② 第2義的 學習(醫療, 精神力動, 社會科學, 法律 등)
- ③ 附隨的 學習(價值觀, 倫理觀 등)이다.

이런 學習을 前提로 自我의 防衛構造라던가, 自己의 Personality 의 理解에 通達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것들은 Worker 自身の 獨自의인 힘으로는 좀처럼 習得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自己覺知를 支援하기 위한 實習을 통하여, 그리고 “케스・스・빠바이자”의 Supervision (指導監督)에 의하여 비로소 專門援助者로서의 自己覺知를 體得할 수 있게 된다.

自己覺知를 發展시키는 主要點은 Worker 의 自己受容(Self-acceptance)이다. 自己受容은 窮極의으로는 Client 의 受容에 連結된다. Client 의 問題에 對하는 自己의 態度・感情 및 反應을 把握하는 것은 Worker 가 困難・問題에 對하는 Client 의 態度・感情 및 反應을 受容하는

데 助力하게 된다. F.P.Biestek 에 의하면 受容의 障害가 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指摘하고 있다.

① 人間の 行動樣式에 대한 것의 不充分한 知識

② 自己의 內面에 있는 要素를 受容할 수 없는 것 (例를 들면 Worker 自身이 가지고 있던 養母에 대한 嫌惡感, 異性不信, 經濟的 不安定에 대한 恐怖, 兒童養育에 관한 矛盾된 價值觀 —— Worker 의 內面에 潛在하는 未解決의 일들이 葛藤 등을 抑厭하고 있어, 그들의 要素와 感情에 대하여 理解하지 못하고 있는 것)

③ 스스로의 感情을 Client 에 轉嫁시키는 것.

④ 偏見과 先入觀

⑤ 保障할 수 없는 말만의 士氣振作

⑥ 受容과 是認의 混同

⑦ Client 에의 敬意의 喪失

⑧ 過剩 同一視

以上 受容의 障害가 되는 Worker 의 態度는 Worker 의 自己受容이 可能해 졌을 때에 除去될 수 있는 것이다.

Gorden. Hamilton 은 自己의 覺知에 到達하는 段階를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어 그 概要를 紹介해 둔다.

① 他人을 援助하고자 하는 稚拙한 人間으로서의 自己像으로 부터 어떻게 援助하는가를 知悉하는 學生 Social Worker 로서 發展한다. 最初는 主로 社會資源과 手續節次를 學習하고 職務의 技法의 몇가지를 習得함으로써, 어떻게 援助하는가를 아는者가 된다 (實踐家로서의 自己를 認識하는 段階)

② Client 와 Client 에 대한 自己의 感情을 알아 차려 妥當한 特定の 質問을 하는 것을 배워, 感情의 表現에 反應할 수 있게 된다. (自我의 確立段階)

③ 自己流의 Case Work 에 感知하여 自己自身の 問題를 알아 차리는 段階 (自己의 苦痛스러운 Petten 을 알아 차리거나, 어느 程度의 神經症的 反應이 일어난다고 한다)

④ Client 의 問題에 뛰어드는 同時에 自己問題에 대해서도 그 解決을 志向하여 努力한다. (自己 基本的인 神經症을 治療하며, Personality 의 統合에 到達하는 洞察을 얻을 수 있다)

(다) Client 에 관한 基本的 問題

F.P. Bisetek 은 Worker = Client 關係를 規定하는 7個 原則을 들고, 이 原則으로 부터 導出되는 Client 의 7個態度, 感情을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① 事務的으로 취급 받기를 願치 않는다. 卽 하나의 個人으로서 人格的 待接을 받고 싶어 하는 氣分

② 忿怒・憎惡・不安・喜悅・安心感 등, 自己의 氣分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고자 하는 氣分

③ 自己가 나타낸 氣分에 대하여 好意的인 理解와 應答이 바람직 하다는 氣分

④ 人間으로서 尊重받고 싶어 하는 價値있는 人間으로서 받아 들여지고 싶어 하는 氣分

⑤ 自己가 直面하고 있는 問題, 言動에 대하여 善・惡의 價値判斷을 해서 좋지 않다는 氣分

⑥ 自己의 生活과 一生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自己가 決定하며, 自己가 選擇하고 싶어 하는 氣分

⑦ 自己에 관한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他人에게 알려지기 싫어하는 氣分

以上과 같은 Client 의 7個의 欲求를 理解하는 것이 Client 를 理解하는 基本問題라고 생각해야할 것이다. 卽 Client 가 安心하고 自己의 正體를 Worker 에게 表明한다는 것, 客觀的으로 自己를 돌이겨볼 수 있는 能力과 力量, Case Worker 에의 信賴, 建設的인 變化를 위하여 必要한 力量등이며 이런것은 Worker = Client 關係의 바람직한 結果로서 Client 에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여기에서는 그것들 중에서 가장 重要한 것과 一般的으로 말하는 Client 의 自己決定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Client 의 自己決定 (Self-determination) Client 의 自己決定은, Case Work 實踐의 過程에 있어서는 重要한 意義를 지녀오고 있다. Case Work 過程에서 Client 自身の 決定에 관한 自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表現이 使用되어 왔다. 1920 年代에는 Client 의 參加 (Client - Participation), 計劃樹立에 대한 Client 의 責任 (Client responsibility for plan-making), 自助 (Self-help), 自己指示 (Self-direction), 自己表現 (Self-expression) 등이 使用되었고, 1930 年代에서는 Client 自身에 의한 計劃樹立과 決定 (Making his own plans and decision (Self-help 와 同義語)) 이 使用되었으며, 1940 年代以後가 되면서 부터 自己決定 (Self-determination) 이라는 用語가 一般化되어 왔다. 1920 年代의 「Client 의 參加」라는 意味는 機關과 Worker 側의 case Work 過程에 있어서의 計劃과 決定에 Client 가 參加하거나 責任을 가진다는 것이 있으나, 「自己決定」에 있어서는 Client 의 自由로운 計劃과 決定이 重視되어 Worker 側은 그것을 受

容의 態度로 尊重하는 것이 強調되었다.

Case Work 過程의 主導性이 Worker 보다 Client 의 自由로운 自發的 決定에 移行해 간 것이 用語의 變遷에서도 推定된다. F.P.Biestek 는 「Client 의 自己決定 原則이란, Case Work 過程에 있어서 스스로 選擇과 決定을 행하는 自由에 대한 Client 의 權利와 欲求를 實際로 認定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自己決定이 尊重되는 社會的, 文化的, 處置의 理由를 들어 Case Work 理論에 있어서의 根本 概念이라고 생각하였다.

Client 의 自己決定이 가지고 있는 Client 의 自由는 文化的, 經濟的, 心理的 등 一定한 範圍안에 있어서의 自由, 特히 社會福祉機關의 法的 制限과 Worker와의 權威等 制約下的 相對的 自由가 될 憂慮가 있다. 또 處遇面에 있어서도 Worker의 處遇目標등의 미리 設定한 評價등에 照明시켜 Client 의 自由를 制約해 버리는 일도 있을 것이다. 卽 Case Work 實踐理論의 根本概念인 自己決定이라는 客觀的 自由가 Worker 의 主觀的 自由, 或은 Client 의 被援助者라고 하는 틀속에서의 主觀的 自由에 의하여 處遇面에서 活用되지 않거나 Client 의 自己決定의 權利를 侵害해 버리거나 한다. 勿論 Client 의 自己決定에는 一定한 制限條件이 있음도 事實이다. 卽 社會的 價値의 選擇과 決定이 Client 의 責任 能力의 範圍안에서 實現될 것인가 或은 施設의 機能 範圍안에서 實現될 것인가 하는 것이 自己決定의 制限 內容이 되어 오는 것이다.

① 自己의 自由를 建設的으로 使用하는 能力의 一時的 缺如에서 오는 制限

② 法律과 權威에서 오는 制限

③ 地域社會의 不文律 規範에서 오는 制限

④ 施設의 機能에서 오는 制限 등이다.

이와같이 檢討해 볼때 Client의 自己決定을 助長시키는 役割은 實은 Worker와 社會福祉機關의 質과 量에 의하여 制限되는 側面이 많은 것이 明白해져 온다. 또 Client가 무엇인가의 外的 內的要因으로 自己決定의 能力이나 自由를 行使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면, Case Work 以外の 社會的 方策이 취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事實이 明白할 것이다.

以下에 Case Work의 實踐活動에 限定하며, Client의 自己決定을 助長하는 要因과 自己決定의 自由를 沮害하는 要因을 찾아 보기로 하자.

〔自己決定을 助長하는 要因〕

① Client의 問題나 要求를 明確하게 理解되도록 援助한다. Worker의 態度로서는 受容과의 同一화가 바람직하다.

② 地域社會 및 Client 自身の 資源에 대하여 熟知시킨다. Worker의 態度로서는 資源의 紹介와 強制를 느끼지 않는 程度의 提案

③ Client 自身の 內的・外的 資源을 動員할 수 있는 刺激을 導入한다. Worker의 態度로서는 支持・情報를 提供한다. 危機的 感情과 狀況의 解消 其他 Case Work의 對立關係에 의하여 刺激을 준다.

④ 非懲罰的・受容的 環境을 創出하여 Client가 그 環境을 통하여 成長될 수 있도록, 또 自己의 問題를 解決할 수 있도록 援助한다.

⑤ Client의 Worker와 機關에 對한 抵抗의 意味를 理解시

켜 Client 의 Tempo 로서 援助한다.

⑥ Client 의 眞心으로 願하는 바의 選擇과 決定을 察知하여 그것이 可能하도록 援助한다.

[自己決定을 沮害하는 要因]

① 問題를 解決하는 主導的責任을 Worker 가 취하고, Client 에게 從屬的인 役割만을 許容한다.

② Client 의 要求하는 Service 의 範圍를 넘어서서 Client 의 私生活의 細微한 事項까지 듣고 싶어 한다.

③ Client 의 意志에 反해서 Client 의 社會生活과 情緒生活에 直接的으로 干涉한다.

④ 其他 說得, 支配와 指示 強制的 忠告등의 技法을 지나치게 使用한다는 것 등이다.

5) Case Work 의 面接

Case Work 의 全過程을 통하여 利用되는 Case Work 의 實質的인 部分은 말할 나위도 없이 面接(interviewing)이다. 面接에서 시작하여 面接에서 끝나는 것이 case Work 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Case Work 이나 Client 가 日常生活을 營爲하는데서 派生되는 困難・問題・危機的 狀況등을 具體的으로 個別化하여 援助해 가는 性質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社會的인 場을 背景으로 한 平等한 立場에 있는 Worker 와 Client 가 對等한 立場에서의 對話가 Case Work 의 面接일 것이다. 더욱이 相對의 立場과 處地에 서서의 面接이어야 하는 것이 專門援助者로서의 Worker 에 要求되고 있다. 이 意味는 Client 가 直面하고 있는 解決해야 할 特定한 問題에 對한 援助가 Case Work 인데 意圖的으로 目標를 확실히 하여 Client 의 立場에 對한 對話가 Case Work 의 面接

이라는 것이다.

Client가 直面하고 있는 問題解決을 擔當하기 위해서는 Intake 社會調查에서 이미 檢討해 보았드시 Client와 對等한 立場에서 Client의 need, 問題의 性質 原因등을 理解하는 共同의 作業이 勸獎되지 않으면 안된다. Case Work의 初期의 面接에서도 Worker = Client 關係를 基盤으로 해서 機關의 機能, 社會資源 및 Client의 問題解決을 위한 能力에 비추어 問題解決의 目標에 直結되는 對話가 이루어 지는 것이다.

어떠한 完璧한 資料를 蒐集하고 또 理論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는 社會診斷을 作成했어도 그것이 Worker와 機關의 立場을 中心으로 한 것일지라도 Client의 參與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Client의 問題解決에는 連結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예를 알아야할 것이다. 더우기 Client의 基本的 人權, 生存權을 輕視하거나 無視한 強制的 一方的인 訊問形式의 面接으로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Worker = Client 關係의 原則을 前提로 問題解決을 위한 動機造成을 助長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特히 非自發的 強制的으로 來所한 Client에 對해서는 Case Work 面接의 意義와 目的을 認識시키는 處置가 더욱 重要하다.

Case Work의 目的은 Client의 解決해야할 特定한 問題에 對한 援助에 있으나 이 目的은 Case Work의 面接을 中心으로 해서 達成되는 것이다. Case Work의 面接을 억지로 大別해 본다면, Intake 社會調查 및 診斷, 社會的 處遇에 있어서의 面接등으로 各各 分類할 수 있으나 實際面에서는 區別되지 않는 것이 事實이다. Intake, 社會調查에서의 對話에 對해서는 이미 言及한바 있으므로 省略하고 本項에서는 Case Work의 處遇全體의 基礎가 되는 Worker = Client 關

係의 具體的 Communication에 焦點을 맞추어 社會的 處遇에 있어서의 面接에 대하여 그 概要를 論述해 보고자 한다.

(가) 面接者の 基本的 態度

面接者和 被面接者인 Client는 「援助的 人間關係」에 있으며, 面接者和 Client는 問題解決을 위하여 그 個人의 內面에 秘藏되어 있는 資源을 보다더 잘 表現하여 有效 適切하게 活用되도록 하는 意圖的 關係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Client의 直面하고 있는 問題解決에 必要한 Personality의 成長과 發展을 增進시키고자 하는 意圖的・意識的인 關係가 實際에는 非援助的으로 돼 버리는 要因이 보이는 것은 어떠한 理由에 의한 것일까

面接者에 있어서는 診斷主義的 或은 機能主義的인 理論的 “오리엔테이션”이나 面接의 여러가지 技法이 重要的 것이 아니고 Social Worker로서의 態度和 Client를 援助하고 싶어 하는 感情이 重要的 것으로서 Client는 이 面接者の 態度和 感情에 敏感하게 反應해 오 는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面接者の 基本的 態度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點에 留意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생각된다.

① 面接者는 그러해야할 것이라는 恒常的 理論的인 態度는 바람직하지 않다. Client와 같은 權利性을 갖춘 人間이라는 것을 Client에게 傳達될 때에 信賴받을 수 있다.

② Social Worker로서 援助的 人間關係를 造成하고자 하는 것을 眞實하게 理解해 주기 바란다는 것 傳達하는 것이 援助的인 것이다.

③ 專門的인 Worker라던가 機關을 代表하고 있다는 意識으

로 Client 와의 사이에 距離를 維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面接者의 防衛에 直結돼 버린다. 한 사람의 個人으로서 Client 에 對하여 肯定的인 態度로 接觸함으로써 援助的 關係가 形成된다.

④ 面接者의 感情을 Client 의 感情과는 別個의 것이지만, Client 의 感情을 面接者의 것으로 認定하고 必要에 따라 그것을 그대로 表現할 수 있을까, 이것이 可能할 때, Client 를 受容할 수 있다.

⑤ Client 가 面接者와 다른 存在者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참 受容할 수 있느냐, 面接者와 Client 를 自己를 닮아 오도록 誘導하기 쉽기 때문에 Client 가 그 個人이 되는 自由를 許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 要請된다.

⑥ Client 의 私的 生活에 介入하여 더우기 評價나 判斷없이 얼마나 理解할 수 있을까

⑦ Client 의 모든 問題를 얼마만큼 受容할 수 있으며, 그것을 얼마만큼이나 相對에게 傳達할 수 있을 것인가 條件的인 受容은 面接者의 感情에 疑懼와 不安과 恐怖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面接者 自身の 成長만이 無條件의 受容을 보다 많이 可能하게 한다

⑧ Worker = Client 關係 가운데서 Client 의 外面的인 脅威를 될 수 있는대로 除去하여 自由로이 해 주면 Client 는 精神內界의 脅威였던 感情과 葛藤에 感應, 그것을 經驗하며 그것에 對面하게 된다.

⑨ Client 에 對하여 外部로부터의 評價 없이도 接觸할 수 있을까 自主的인 態度의 育成은 外部로부터의 評價와 判斷으로 不可能하다.

⑩ Client 인 個人에 對하여 現在 形成의 途上에 있는 人間으로서 相對할 수 있을 것인가 面接者는 自己가 習得한 概念의 範圍에서만 Client 와 關係를 가질 수 밖에 없다. 面接者 自身을 成長發展의 途上에 있는 自由로운 人間으로서 보는 것은 必らず로 또 한 사람의 人間の 獨自性을 Client 自身과 더불어 나누어 가지는 經驗을 갖게 되는 것이다.

(나) 治療的 面接 (The rapeutic interviewing)

여기에서 舉論하는 治療的 面接이란 社會的 處遇의 하나의 形態로서이다. 이것은 直接的 處置와 間接的 處置의 支持的 處置가 Case Work 의 面接의 基本的인 形態라는 認識에 立脚해서 그 面接이 우리들의 臨床體驗에서는 比較的 短期間の 援助로 有效性을 갖는 것이다. 微弱한 自我構造나 Client 가 困難한 外的 狀況에 對하여 反應하고 있는 Case 에 對한 援助의 goal 을 Personality 의 基礎的인 變化에 두는 것이 아니라 Client 의 現存하는 힘, 資源 및 社會的인 諸資源을 動員하여 Client 가 自己의 統合的인 能力을 最大限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助力하는 것이라고 考察해 왔다.

그러나 Client 自身이나 家族成員등의 主觀的 事實 Personality 등에 社會適應上的의 乖離와 障害가 顯著한 경우는 長期間에 걸친 面接이 必要하게 된다. 治療的인 面接이 Client 의 Personality 構造의 變革을 指向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Level 이 깊은 面接인 것도 아니고, 오늘날의 Case Work 의 課題인 性格障害나 情緒的 未成熟의 Client 또 家族을 全體로 해서 處置하는 長期的 處置가 必要한 경우, 또 第2次的分野등에 당연히 要求되어 오는 面接의 形態인 것이다. 筆者의 생각으로는 支持的인 處置와 같이 이 治療的인 面接이

Client의 基礎的인 Personality의 變化나 成長을 結果로서 가져오게 하는데 役割하는 것이라면, 治療的 面接은 Level이 높은 處置方法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勿論 精神醫學과 臨床心理學, Counseling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안되는 分野로서 그것들과 共通의 基盤을 가지고 있음은 明白하지만 Client의 內的・外的資源의 活用을 통하여 社會的 機能樣式的 修正과 改善에 目標을 두고 있는 것은 確認해 두어야 한다.

以下에 初步的인 治療的 面接을 中心으로 해서 面接技法의 概要에 言及해 보기로 한다.

① 感情과 態도의 受容 明確化

Client가 나타내는 感情과 態도를 올바르게 受容하여 明確하게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이 面接의 關鍵이다. 面接者는 단순히 質問에 對하여 應答하는 것이 아니라 五官, 卽 全體의 機能을 動員하여 들어주는 姿勢가 重要하다. 面接者의 이와같이 謙虛한 態度는 Client에게 敏感하게 反應하여 兩者의 援助的 人間關係는 깊어진다.

② Client가 나타내는 發言의 背景에 있는 感情의 核心에 應答한다. Client의 態도와 行動을 調整하고있는 感情을 理解하여 明確化하는 것이다. Client는 發言과 表現을 통하여 여러가지 感情을 나타낸다. 이것들은 面接者나 機關의 機能에 向해 있기 보다는 Client自身에게 向해진 情緒的인 作用으로서 自我의 成長에 關聯하는 것이며 面接者가 受容해야할 感情이다. 한번 面接하는 사이에서 이와같은 感情의 核心이 나타나는 것은 한번이나 두번뿐이므로 面接者는 Client의 發言과 態도를 잘 살펴서 그 核心에 應答해야 한다.

⑥ Client의發言을 充分히 傾聽하여 面接者의 發言은 될 수 있는대로 有效適切한 것에 그쳐야 한다. 面接者보다 Client의 發言이 많이 주워져 Client에게 自己表現의 機會를 充分히 提供하는 것이 感情의 核心에도 到達하게 되거나 Client의 “카다르시스”(淨化作用)도 되는 것이다. 面接者의 發言은 Client의 自我의 成長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에 限定하여 指示・說諭, 暗示・解釋 등의 意味있는 發言은 될 수 있는대로 避해야 되는 것이다.

⑦ 面接者의 發言과 態度・表情은 Client에게 理解되도록 注意한다. 面接者는 Client의 性別・年齡 地域差 教育程度에 留意하여 Client가 容易하게 實感될 수 있는 表現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專門的이 아닌 平易한 用語를 쓰는 편이 낫다. 그렇지 못하면 Client의 劣等感과 不信感등의 抵抗과 結付될 可能性이 있다. 말뿐 아니라 態度와 表情, 音聲의 리듬, 姿勢・손짓・몸짓등도 Client에게 緊張感を 주지 않도록 留意해야 할 것이며, 面接者는 意思疎通을 正確하게 하도록 努力해야 한다.

⑧ Client가 나타내는 어떠한 感情・態度에 對해서 두려워하거나 安易한 同情을 해서도 안된다. Client는 他人과 環境, 生活狀態등에 對한 不滿과 敵意, 或은 不安, 絕望, 自暴自棄 등 否定的(Negative)인 感情과 態度를 나타내는 일이 많다. 面接者는 個人的인 Level에서 同情하여 慰勞・忠告 辯明해도 治療的인 것으로 반드시 連結되지는 않는다. 그것 보다는 그와같은 感情 態度를 두려워하지 않고 受容 明確化하여 Client가 現實的 狀況을 直視할 수 있도록 援助하는 것이 重要하다. 이와같은 Client의 非現實的인 態度와 應答은 轉移라던가 逆轉移라고 불리워지고 있으나 面接者는 이와

같은 轉移神經症을 助長시켜서는 안된다.

否定的인 感情이나 態度가 強하면 強할 수록 그것이 다 드러났을 때에 肯定的 (Positive)인 感情에의 轉換이 強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面接者는 이 에너지를 소중히하여 肯定的인 感情에 사로잡혀 가는 것이다.

③ Client 의 意見 思考方式, 試行에 대하여 함께 檢討한다. 面接이 順調롭게 進行되어 中期의 段階에 이르면 Client 는 他人에 對하는 새로운 見解 자기의 새로운 生活方式 結局 社會에 適應해 가는 方向을 찾아 내게 되는 것이다. 面接者는 Client 의 그와같은 움직임에 對하여 敏感하게 應答해야 하며, 설사 그것이 적은 움직임이 있거나 틀린 생각이라 할지라도 Client가 스스로 感知하여 選擇하고 自己가 決定하고자 하고 있다는 事實을 잊어서는 안된다.

F·Hollis 의 處置分類에 의하면 4 번째의 現況과 現況에 對한 Client 의 應答, 狀況과 應答의 相互作用에 대한 反省的 對話가 이에 該當할 것이다. 面接者는 Client 의 現實認識에 대한 새로운 理解와 洞察 (Insight)을 重要視하여 그것들을 強化하기 위해서는 適切한 明確化를 期해야 한다.

② 質問에 대한 應答

Client 의 面接者에 대한 質問은 여러가지의 意味를 가지고 있으나 自我의 成長과의 關係 및 社會福祉機關의 機能과의 關聯에서 크게 두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

① 一般的인 事實에 대한 質問

이 質問은 이른바 機關의 機能에 關聯한 事務的, 實際的인 內容의 것이다. 예를 들면 保護의 受給資格, 施設入所基準, 社會施

設에 대한것, 相談內容에 관한것, 面接의 順序 處置나 處遇에 대한
것 등이다. 이와같은 質問에 대해서는 率直하고 適切하게 對答해야
한다. 質問事項에 관한 것으로 面接者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는 그
뜻을 잘 傳하고 時急히 調査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⑤ 特殊한 質問

Client는 이 質問을 통하여 自己생각과 感情을 나타내고
자 한다. 不安・不滿의 感情을 質問의 형태를 빌어 나타내는 경우와
自己의 思考方式이나 立場에 대하여 承認을 求하는것 같은 內容을
가진것 들이 이것이다. 많은 경우 Client는 自己自身이 미리 準備
한 解答, 卽 表明하고 싶은 感情과 思考方式이 있는 것이다. 이들
의 質問에 대하여는 우선 深刻하게 들어주고, 받아 들이는 것이 重
要하며 質問하지 않고는 건디지 못하는 感情을 受容, 反射하거나 때
로는 場面 構成을 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卽 정말 必要한 問題
解決은 Client 自身이 具體的인 經驗을 통하여 誘導해 가는 것이라
는 것을 理解시키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面接者는 「……라고 한
다면」「좋다면 그것을 좀더 詳細하게 말씀해 주실 수 없을 까요」,
「당신은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그 內容을 들려주시지
않겠읍니까」등등의 反問을 통해 質問의 背景을 자세히 說明하도록
勸勉할 必要도 있을 것이다.

③ Client의 沈黙에 대한 應答

面接의 過程에서 가끔 Client의 沈黙을 經驗하는 수가
있다. 沈黙의 回數나 長短의 差가 있으나 그것이 어떤 意味를 갖
고 있는가를 敏感하게 理解하여 그 場面에 가장 適切한 應答을 하
지 않으면 안된다.

㉑ 構成的 沈黙

Client가 話題나 呼訴하는 內容의 整理, 自己의 言動에 對한 反省과 洞察을 深化시키기 爲해 또 問題解決을 爲한 計劃에 對하여 思考하기 爲한 休止가 그것이다. 이와같은 경우는 對話를 하거나 當惑하는 態度를 취하여 이 沈黙을 中斷시키는 것 같은 일은 避해야 한다.

㉒ 正常的인 休息

가령 感情과 問題를 單번에 吐露하여 한숨 돌리고 있는 狀態와 Worker와의 面接 그 자체가 Client에게 있어서 休息이 되기 때문에 沈黙을 繼續하는 경우등이 그것이다. 이 경우에도 될 수 있는대로 沈黙하기 쉬운 狀況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5分間을 넘어서는 경우는 「말씀 하시므로서 氣分이 시원해 졌읍니까」, 「말씀 하신일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있읍니까」등 明確하게 할 必要도 있다.

㉓ 懇切한 所望의 停止

面接者의 應答 卽 助言이나 承認을 Client가 期待하는 狀況이다. 面接者는 그러한 狀態를 敏感하게 察知하여, 適切한 感情의 明確化에 努力할 必要가 있다. 다만 單순히 感情을 明確하게 할 뿐 아니라 Client의 need에 積極的으로 應答하는 姿勢가 重要하다.

㉔ 拒否的, 逃避的沈黙

初期의 面接등에서 親近感과 信賴感이 充分하지 않을 경우 面接者에 대하여 不安과 不滿을 느끼고 있는 例가 많다. 面接者가 年少하다던가, 異性이라던가 또 機關에 對한 不信感에서 오는 抵抗의 狀態등의 경우가 있다. 이와같은 경우 그 不安, 不信感, 抵抗

感등의 感情을 反射하는 것이 重要하다. 「아무래도 내게는 말씀 하실 氣分이 나지 않습니까」, 「뭐! 아무래도 안되겠다는 생각인가요」등이다. 이와같은 感情을 나타냈을 때는 새로이 面接에 대한 動機造成과 積極的인 意欲이 일어나는 것이다.

④ 面接에 있어서의 “리이드”와 解釋

Case Work 面接의 處置的인 目的이 「Client의 精神內界 資源의 活用과, 外的, 環境的인 抑壓으로부터 Client를 解放시켜 自由롭게 하여 그 內的 能力을 最大限으로 活用하도록 援助하는」 데 있다고 하면, 그것을 沮害하는것 같은 面接者의 作爲 — 예를 들면 無用한 質問, 形式的인 診斷, 一方的인 解釋, 忠告, 非現實的인 再保證, 說得등은 — 될 수 있는대로 避하여 그것을 助長시키는 Lead와 解釋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⑤ Lead

Client의 發言, 또 Case의 內容을 더욱 깊게 파고 들어가거나, 그 背景을 알아야할 必要가 있는 경우 등에 利用하는 것으로서 面接者의 質問形態로서 취하는 경우가 많다. 質問이 어떠한 意義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를 相對편에게 理解되지 않으면, Client는 訊問받는다고 생각하거나 強制나 探索받고 있다고 받아 들여 아무렇게나 對答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 面接을 誘導하는 듯한 質問과 作用이 Client에게 刺戟을 주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아 둘 必要가 있다.

⑥ 解釋・助言等

面接者는 「治療를 促進한다」는 意圖를 가지고 解釋, 助言등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面接者와 Client의 關係가 充分한 信

賴關係가 確立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面接者의 一方的인 作用이 돼서 Client의 抵抗을 招來하여 意思疎通이 沮害되는 경우가 있다.

⑤ 面接의 終了

面接은 原則的으로 一定한 時間(約 40分 내지 1時間)에 마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 定해진 時間에 面接을 終了시키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面接者가 適切하게 面接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느끼거나 焦燥해 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面接者의 援助的인 役割이 (특히 感情의 明確化) 不充分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反省해 보아야 한다. 또 Client가 설새 없이 얘기하거나, 時間이 다 되어서야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이대로 돌아갈 순 없습니다」등등 具體的인 解答을 要求하는 경우도 있다. 勿論 面接의 進行方式을 反省해볼 必要도 있으나 「至今 무엇인가의 處置를 받지 않으면……」하고 쫓기는 狀態에 있는 Client에 對해서는 Client가 納得할 수 있는 最少限度의 方策과 指示를 供與하는 것이 必要하게 되어 진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狀況에 있는 Client에 對해서는 「무엇이」「어떻게」, 困難해지고 있는가를 明確하게 해서 Client의 現在의 現實的인 狀況과 立場을 確認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그렇다면, 다음의 面接까지 어떻게 하면 좋은가」하는 課題를 提示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方法일 것이다.

面接의 終了時에 過大한 保證과 過大한 期待를 안겨 주는 듯한 表現은 避하는 것이 좋다.

(다) Case Work 面接過程의 評價

Case Work 面接은 社會福祉機關에 이루어지는 Client의 日

常生活에 있어서의 具體的 問題(主訴)를 個別化해 가는 援助過程이며 問題解決을 위하여 Worker = Client 의 平等한 立場에서의 對話인 것이다. 이 面接에 의하여 意圖的으로 問題解決에 臨하는 面接의 實際的인 Process 는 어떠한 結果를 가져오고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이 問題解決을 위한 援助의 人間關係는 面接을 媒介로 하여 이루어 지는데, 面接者의 技法의 恒常的, 理論的인 틀속에서만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Client 와 直接 面對하는 面接者의 態度가 重要하다는 것을 論해 왔다. Case Work 의 面接過程의 分析은 臨床心理學의 分野등의 處遇分類의 範圍 또 優秀한 研究者나 臨床的 測定을 導入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여기에서는 Case Work 面接過程의 評價만을 概括的으로 記述해 볼까 한다.

日本의 例에서 보면 취급된 Case 에 對한 相談所 및 面接者와의 關係方式을 全 Case 記錄을 通讀하여 다음과 같이 分類하고 있다.

兒童相談所라고 불리워지던 1956 年부터 1961 年까지를 두가지로 分類하였는데, 第1期를 어머니 中心의 兒童處遇의 時期 第2期를 母子 關係를 中心으로 한 兒童處遇의 時期로 하였으며, 家庭福祉研究所라고 불리워지던 1963 年부터 1967 年까지도 두가지로 分類하여 第3期를 家族志向 中心으로 하여 Client 를 處遇한 時期로 第4期를 家族(全體)志向中心으로한 Client 를 處遇했던 時期로 各各 分類하고 있다. 이것은 民間의 相談機關의 機能의 變遷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面接者의 Client 에 對하는 接近方向 및 問題把握의 概念의 變化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社會的 處遇의 方向이 變化했다는 것은 當該 兒童問題를 家族을 全體로서 把握하는 觀點에서 相談活動을 展開하고자 했던 卽 主眼點의 問題였을 뿐 各年代를 통한 Client 의 主된 呼

訴에는 커다란 變化를 認定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거기에서 接近方法의 變遷이 Client의 主된 呼訴의 解決에 어떻게 役割했는가를 評價해야 하는 課題가 남아 있다고 하겠다. 그간에 취급했던 全 Case에 對한 實態調査, 質問紙法에 의한 追跡調査 選擇한 8個 Case에 대한 面接調査 및 Case의 終結의 狀況에 관한 考察을 中心으로 評價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取扱된 全 Case의 實態調査에서 判明된 것은 面接回數가 各時期마다 조금씩 增加하는 傾向을 認定할 수 있었다. 그 理由를 客觀인 資料에서 檢討하기 위해 面接者와 來談者の Communication에 있어서 對話를 交換한 事項을 分類 整理해 보았던 것이다.

第1期에서는 兒童問題의 解決이 母親의 態度變容에 있다는 相談所의 接近方法을 反映시켜서인지 對象兒童과 母親 自身에 관한 事項이 半數以上을 占하고, 다음으로 同僚・學校關係의 話題가 中心이었다.

第2期에는 兒童問題의 解決이 母子關係의 改善에 있다는 接近方法을 反映시켜 對象兒童과 어머니 및 아버지에게 관한 事項이 65% 이상을 占하였으며, 同僚・學校關係・祖父母에 관한 話題가 그 다음을 占했다.

第3期에는 家族關係의 人間關係의 改善이 兒童問題 解決에 關係가 깊다는 接近方法을 反映하여 兒童自身에 관한 事項을 中心으로 해서 父母의 育兒態度 學校生活關係 同僚關係, 祖父母와의 關係등이 主要한 課題로서 相談되고 있다.

또 第4期에는 家族을 全體로서 把握하는 것이 兒童問題의 解決에 直結된다는 觀點에서부터의 面接場에서 相談한 事項은 母親을 中心으로 하는 夫婦의 事項이 72%를 占하고, 그 다음은 兒童과 學校關

係가 各各 56%, 同僚나 祖父母에 관한 事項이 各各 32%로 나타났다. 이 時期에는 特히 來談者の 內面的・感情的 事項 (Inner Process) 이 23%나 對話하고 있는 것이 特徵的이라고 했다.

以上の 일에서 우리들이 推定할 수 있는 點은 主로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㉑ 「Case」에 對하는 面接者の 關聯樣式에 의하여 面接過程에 있어서의 相談事項이 變化되어 있고 面接回數 (來所回數) 도 各時期의 進行과 더불어 늘어났다는 것.

㉒ 來談者 自身에 對한 事項이 面接場面에서 주고 받은 對話의 경우에는 來所回數가 늘어났다는 것. (特히 第4期)

이와같은 假說을 前提로 해서 面接者の 關聯方式의 變遷이 Client의 問題解決에 어떻게 役割했을 것인가 하는 素朴한 疑問을 解明하는 順序나 方法으로서 質問紙法에 의한 追跡調査를 實施했다고 한다.

回答有效 “케 - 스” 는 來所時期의 새로운 Case 또는 來所가 回數가 많을수록 回收率은 높아져 왔으나 回答有效 Case 의 68%가 相談所 要員이 취급한 Case 이고, 9%가 大學院 實習生이 취급한 Case 이고, 23%가 記錄不備로 不明한 것이었다고 한다.

來談者の 動機造成과 面談의 滿足度を 比較해 보면 動機造成의 높은 Case (① 相談하러 갔던 사람의 勸誘로 ② 家族들의 勸誘로 ③ 自己 스스로 등의 順) 만큼 滿足도가 높았고 한편 動機造成의 낮은 Case (紹介・送致등)가 “모르겠다” “不滿스러웠다”고 回答하였다. 面接에 있어서의 動機造成을 重視하며 Client에게 面接의 意義를 理解시키는 것이 얼마나 重要的 것인가를 反省하게 했던 것이다.

또 面接이 도움되었다고 回答한 Case 도 動機造成이 分明했던 경

우가 많았던 點도 注目할 일이다.

主된 呼訴와의 關聯에서 Client 의 問題의 그뒤의 狀態를 相關시켜 보면, 問題가 解決된 59.7%, 問題가 무엇인가의 形態로 繼續되고 있는 경우 22.1%, 其他 18.2%로서 問題가 무엇인가의 形態로 繼續되고 있는 경우의 太半이 兒童自身에 관한 것이 었다. 또 問題가 解決되었다고 回答하고 있는 Case 가 果然 主訴가 解決되었을 것인가 하는 質問紙法에 의한 調査의 限界를 確認한 다음에 面接者와의 合意에 의하여 終結된 4 Case 와 合意에 의하지 않고 終結된 4 Case 를 選定, 面接調査를 통하여 檢診해 본 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㉑ 面接의 満足度는 合意에 의한것 合意에 의하지 않은것 各各 3 Case 가 豫想했던바 대로 相談을 받을 수 있었다. 또 面接이 도움되고 있는 것이 判明되었으나 合意 非合意 各各 1 Case 씩은 否定的인 反應을 나타내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㉒ 主된 呼訴의 그뒤의 問題에 관해서는 問題가 解決된 것은 合意에 의한 終結이 1 Case, 合意에 의하지 않은 終結이 2 Case 로 問題가 어떠한 形態이던 繼續되고 있는 Case 는 合意에 의한 終結로 3 Case 合意에 의하지 않은 終結이 2 Case 임도 判明되었다.

우리들은 援助를 提供하고자 하는 面接者의 意圖와 努力에도 不拘하고, 具體的으로 問題解決의 變化가 보이지 않거나 或은 變化가 조금밖에 생겨나지 않는 Client 가 許多하다는 것 또 Case Work 의 面接의 目標가 問題解決에 있다고 해도 處遇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Case 가 가령 合意에 의한 終結일지라도 적지 않다는 事實을 認識해야 했다.

이것은 Case Work의面接과 社會的 處遇에 관한 基礎的研究가 얼마나 重要的 것인가 또 面接이 Worker의 理論的構造中에서만 主觀的으로 이루어져서 Client의 參加와 自己決定을 沮害하는 要因을 形成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는 面接者의 基本的 態度에 對한 反省에도 連結되어 왔다.

우리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Client의 問題가 解決의 方向을 志向했기 때문에 相談에 의한 合意의 終結에 이르렀다고 回答한 52%의 Case를 分析한 結果 이들 Case의 面接回數가 2回以下의 것이 約 半數에 이르렀다. 이 事實은 Case Work 面接의 援助過程의 失敗를 示唆하는 것일까, 或은 Client의 need가 短期間에 解決・充足되었다는 것일까

主된 呼訴와의 關聯에서 檢討해 보면 이들의 短期 Case는 性向에 관한 問題 行動上的 問題 教育에 관한 問題 社會資源의 紹介등의 主訴로서 諸檢査나 紹介 具體的 Service를 要求하여 來所한 사람이 많고, 合意로써 終結된 Case의 90%가 來所 2回以內의 短期 Case였다.

한편 Client의 精神內界의 問題, 人間關係에 관한 問題로서 治療的 面接, 支持的 處遇에 의한 援助가 必要한 Case中 合意로써 終結된 것이 52.6%로 그 가운데 來所 2回以內의 Case는 55%의 短期의 Case였다. 이와같은 呼訴로 來所한 Case의 面接이 2回以內로써 短期間에 終結한다는 것은 어떠한 意味가 있는 것일까 直接的 處置의 內容과 技法에 대한 檢討와 面接過程의 分析이 今後에 要請되고 있음을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

要 約 及 建 議

要 約 및 建 議

1. 社會福祉事務所の 設置

産業化・都市化의 進展에 따른 急激한 社會變動과 核家族化, 高齡化趨勢등 家族制度 및 家族構造, 人口構造의 變化過程에서 社會福祉需要를 急増시키고 있어, 이에 對應하는 새로운 接近方法이 摸索되어야 할 階梯에 와 있다.

특히 우리社會 底邊에서 福祉的 要求를 지니고 있는 要保護階層에게 效果的으로 그 需要를 充足시키기 위해서는 合理的인 社會福祉傳達體系의 確立이 優先되어야 함에도 從來의 社會福祉的 事業이 多元的으로 分掌 發展되어온 까닭도 있지만, 關聯部處間의 協助不振으로 所望스러운 狀態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保健社會部는 社會福祉關係 法令의 制定 또는 改正을 서둘러 社會福祉傳達體系의 定立을 위한 努力을 傾注하였기 때문에 많은 進展을 보고 있으나, 보다 效果的인 推進을 위해서는 社會福祉事務所の 設置・運營이 무엇보다 時急한 重要 課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社會福祉事務所를 市・郡・區單位로 1個所씩 全國的인 設置가 바람직 하지만, 政府의 財政形便上, 一時에 設置 運營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한다면, 그 前段階의 必須的인 措處가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全國 規模의 社會福祉事務所 設置를 目標로 하고, 우선 必要하고 適切한 地域을 選定하여 示範福祉事務所(都市型, 農村型등)를 設置 運營해 볼 必要가 切實하다고 하겠다.

示範福祉事務所를 運營하면서 얻어지는 知識과 經驗은 將次 全國的으로 設置되어야 할 社會福祉事務所の 運營指針이 마련 되고, 나아가 合理的 社會福祉傳達體系的 確立과 福祉需要를 充足시킬 수 있는데 必要한 資料도 마련될 것이다.

2. 社會福祉行政 傳達體系的 改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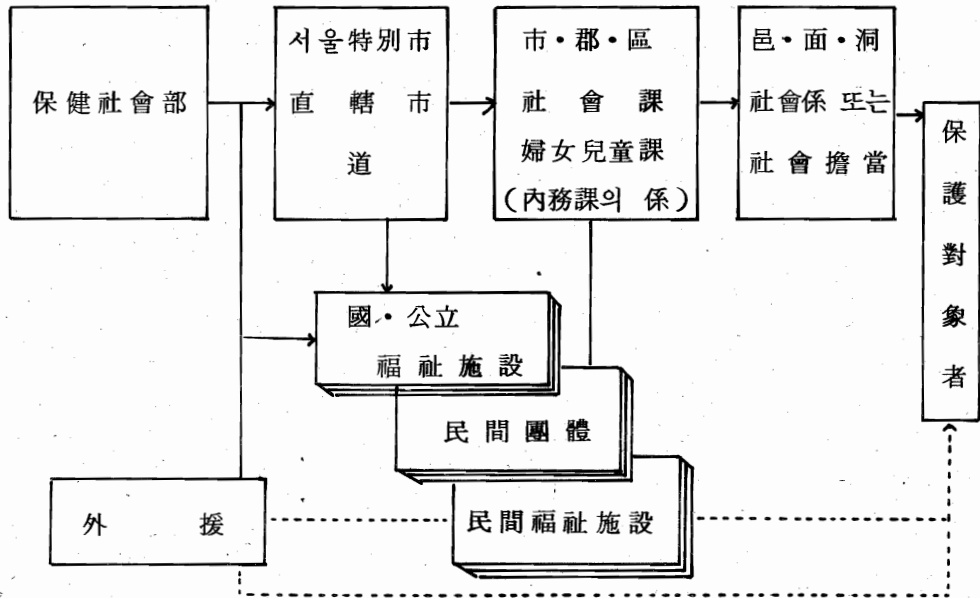
가. 現行的 社會福祉傳達體系는 다음 圖(1)에서 보는바와 같이 保健社會部를 頂點으로 하여

㉞ 서울特別市の 경우는 保健社會局長 밑에 保健衛生課, 醫藥課, 社會課, 福祉課, 婦女青少年課로 直轄市の 경우는 保健社會局長 밑에 社會課, 保健課, 環境衛生課, 清掃課, 婦女兒童課로, 道の 경우는, 保健社會局長 밑에 社會課, 保健課, 環境衛生課, 婦女兒童課로 市에는 社會經濟局長 밑에 社會課, 婦女兒童課, 清掃課로 郡에는 內務課長 밑에 福祉係, 衛生係, 婦女兒童係로, 末端組織인 邑・面・洞에는 社會擔當으로 組織되어 福祉 Service 가 受惠者에게 傳達되고 있다.

㉟ 이와같이 行政組織이 單位마다 다를뿐 아니라 從事要員에 대한 任免權이 保健社會部長官에게 있지 아니하고, 다만 業務에 대한 指導・監督權만이 주어져 있으니 一般行政業務와는 性格이 判異한 社會福祉業務의 指揮權이 確立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當然하다. 이와 같은 二元的 運營은 業務遂行이 不實할 수 밖에 없고, 福祉部署에 옮겨온 行政要員이 擔當業務를 理解하고 일할만한 時期가 되면 福祉 Service와는 거리가 먼 他業務에 轉補되는 등 不可避한 事例가 頻繁하므로 當該 業務를 處理함에 있어서도 熟과 誠은 자연히 減少된다.

圖(1)

現行，社會福祉傳達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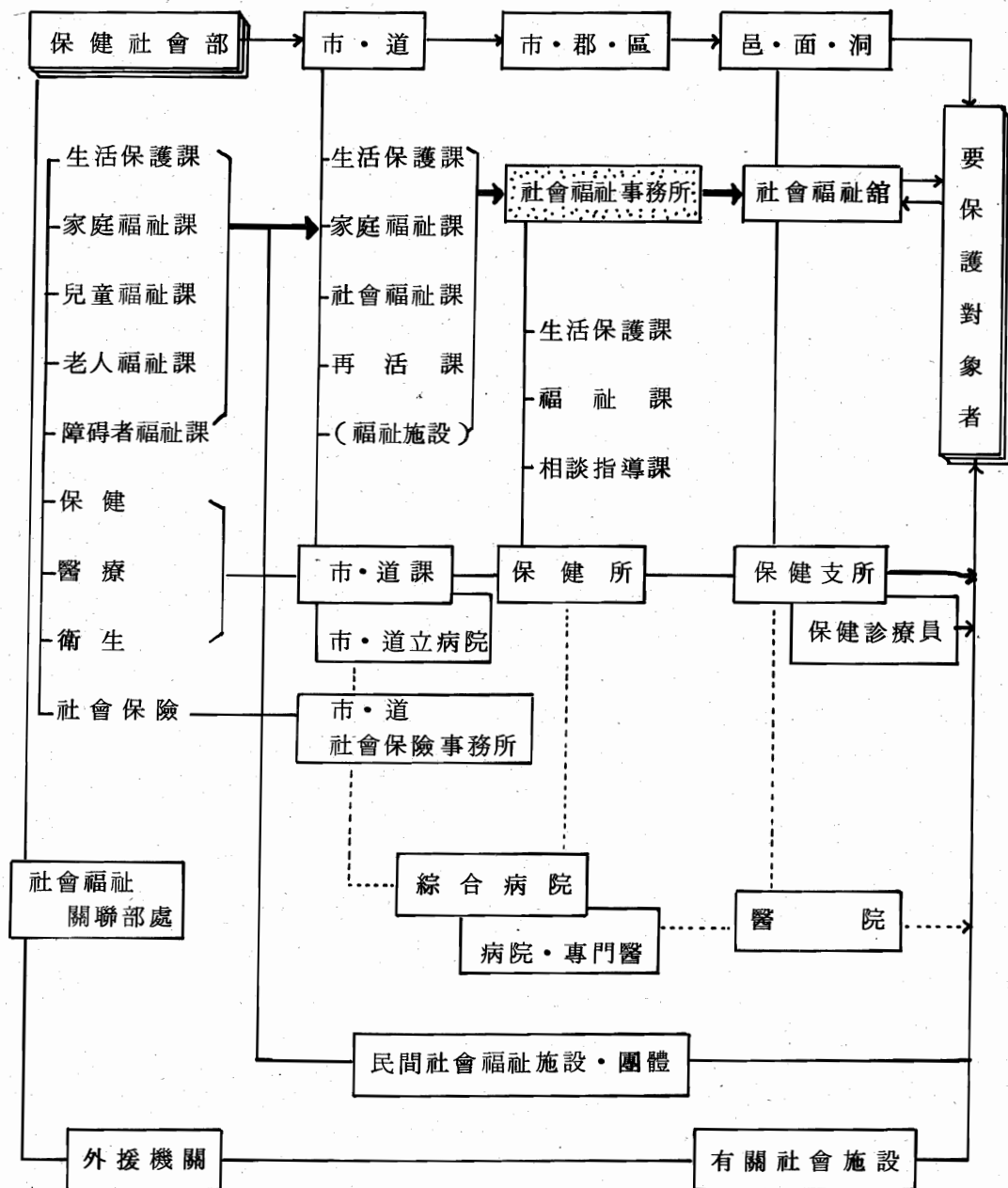


나. 앞에서 累累히 言及한바와 같이 社會福祉란 高度의 專門的인 業務를 보다 效率的으로 傳達하고, 그 充實을 期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接近方法이 있겠으나 圖(2)에서 構想하는 바대로 市・道의 福祉專門部署의 擴充과 市・道・區單位의 社會福祉事務所를 設置하고, 邑・面・洞單位에는 社會福祉館 또는 社會福祉事務所 支所를 設置・運營하는 것이 第1次的으로 所望스럽다.

그리고 國民醫療의 均霑을 위하여 實施되고 있는 公衆保健醫師와 保健診療員의 業務를 비롯하여 醫療保險이나 醫療保護등의 醫療給與業務는 住民福祉와 直結되는 福祉 Service의 하나이기 때문에 社會福祉事務所の 設置와 아울러 考慮되어야 事項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圖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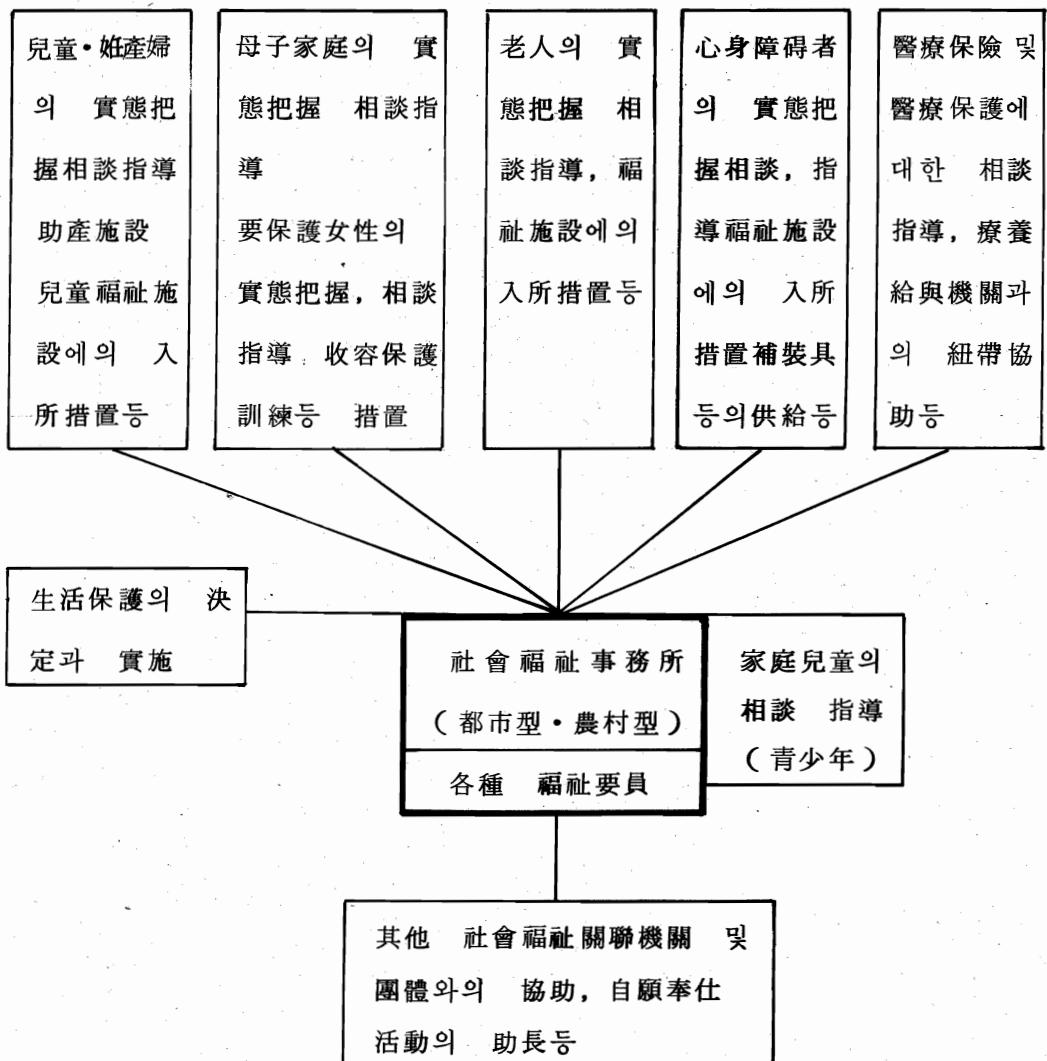
社會福祉傳達體系의 改善을 위한 構想圖



다. 社會福祉事務所의 主要機能을 要約하여 보면 圖(3)과 같다.

社會福祉事務所는 社會福祉關係法에 規定하는 福祉措置의 業務를 비롯하여 널리 社會福祉全般에 걸친 事務를 행하는 第1線 總合的인 社會福祉行政機關으로서의 機能을 遂行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圖 (3) 社會福祉事務所의 機能 要約



社會福祉事務所가 遂行할 수 있는 主要機能은 ① 住民의 欲求把握
② 社會福祉 Service 의 提供 ③ 地域社會를 비롯한 可用資源의 活用
④ 社會福祉 Service 의 評價로 區分할 수 있다.

이러한 機能에 따른 具體的인 業務를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이 例
示할 수 있다.

가) 住民의 欲求의 把握

- ① 生活保護對象者の 調査와 選定
- ② 兒童, 老人, 婦女子, 心身障礙者 등 保護를 必要로 하는 地域
住民에 대한 把握
- ③ 醫療, 教育, 就業, 娛樂 등 諸般 社會的 Service 를 必要로 하
는 住民의 實態把握

나) 福祉 Service 의 提供

- ① 生活保護對象者와 罹災民에 대한 救護
- ② 生活保護對象者에 대한 相談과 指導
- ③ 零細民中 就勞事業 參與者 選定
- ④ 要保護對象者에 대한 相談 指導

必要한 경우 委託保護의 措置

- ⑤ 地域內的 公共福祉施設 運營·管理에의 參與
- ⑥ 地域內的 私設福祉施設에 대한 各種의 支援

다) 地域社會內的 可用諸資源의 發掘과 活用 및 情報의 交換

① 公·私設 社會福祉機關 및 團體에 대한 實態把握과 紐帶의
圖謀

② 自願奉仕者の 發掘과 訓練 및 活動의 支援

③ 企業, 學校, 醫療機關, 宗教 및 社會團體 등과의 協助關係의

樹立

라) 社會福祉 Service 의 評價

- ① 生活保護對象者 및 其他 要保護者의 保護와 福祉 Service 提供에 대한 記錄
- ② 提供된 福祉 Service 에 대한 定期的인 評價 實施
- ③ 社會福祉對策 樹立에 따른 各種 資料의 蒐集과 分析

3. 建 議

社會福祉 Service 가 效率的으로 傳達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먼저 社會福祉事業法에 社會福祉事務所 및 그 支所 또는 社會福祉館의 設置에 必要한 法的 根據를 확실히 規定 그 改正措置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婦女福祉를 위한 根據法律이 賸缺하므로 現在 構想中인 母子福祉法에 대한 視野를 넓혀 모든 婦女子의 權益伸長과 福祉向上을 위한 婦女福祉法의 制定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다음은 社會福祉傳達體系의 確立인데 社會福祉事業法이 改正되는 過程에서 內務部나 經濟企劃院등과 充分한 協議가 이루어 지겠으나, 現在와 같이 福祉業務分野의 從事要員의 任命權과 業務의 指揮監督權이 二元化되어 있어서는 專門技術의 하나인 社會福祉事業의 推進이 效果的으로 達成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公的 福祉行政傳達體系만이라도 빨리 擴充 改編되어야 할 것이다.

最近 示範福祉事務所 設置 運營에 必要한 豫算措置마저 不如意했던 例에서 一時的인 擴充이 容易하지 않겠으나, 市·郡·區單位の 社會福祉事務所를 1個所씩 邑·面·洞單位の 社會福祉館 1個所以上을 設置

하는 것을 長期目標로 設定해 놓고 이를 段階的으로 擴充 發展시키는 計劃下에 設置 運營해 나가도록 誘導할 必要가 있다.

지금까지의 歷史에서 社會福祉分野의 開發遲滯가 오늘날 우리 社會現實에서 어떻게 反映하고 있는가는 周知의 事實이며 또 急増하는 福祉需要를 合理的으로 對應하기 위해서도 이에 대한 革新的인 措置가 講究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매우 어려운 處地에 서게 된다는 것은 明若觀火한 展望이라 하겠다.

특히 社會福祉事務所는 生活保護와 社會福祉事業의 綜合的인 福祉 Center로서 機能할 수 있어야 하고, 地域社會內的 公・私福祉機關, 住民生活有關施設, 自願奉仕者들과 有機的인 福祉活動展開를 위해 核心的인 役割을 다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資 料 目 錄

1. 保健社會白書(1983 ~ 1985) 保健社會部編
2. 保健社會統計年報(1979 ~ 1985) 保健社會部編
3. 社會福祉法令集(1984 ~ 1985) 韓國社會福祉協議會編
4. 社會福祉('85 ~ 봄, 여름, 가을) " "
5. 2000年代를 向한 社會福祉課題(第3回 全國社會福祉大會資料)
6. 高令化社會에 對應하는 福祉的方案(1984 - 社會保障審議會刊 孫昌達)
7. 社會福祉施設의 運營改善方案 (1979 - " ")
8. 社會福祉事業方法의 研究 (1979 - " ")
9. 社會福祉行政의 傳達體系의 改善 (1981 - " ")
10. 社會保障 - 理論定立을 위한 基礎(1982 - " ")
11. 醫療保險(2種)改善方案 (1983 - " ")
12. 國立福祉年制度施行을 위한 研究 (1983 - " ")
13. 韓國의 社會保障體系 (1976 - " ")
14. 社會福祉講座(1 - 5) (1974 - 日本, 若林龍夫 編著)
15. 社會福祉行政論 - 마크 엘 미린코프著 成圭鐸 譯
16. 現代の福祉政策 (1975 - 日本, 社會保障研究所 編)
17. 社會福祉六法(日本厚生省監修 -)
18. 社會福祉の手引 (1984 - 東京都, 福祉局總務部調査課)

19. 社會保障－ 무엇이 問題인가 (1983 - 韓國社會保障問題研究所 編)
20. 醫療保障－ 무엇이 問題인가 (1984 - " ")
21. 所得保障－ 무엇이 問題인가 (1985 - " ")
22. 醫療保險－ 무엇이 問題인가 (1985 - 第 4 回社會保障研究者大討論會
主題論文)
23. 醫療保險料算定業務의 改善方案 (1984 - 社會保障審議委員會刊
安彰洙)
24. 韓國社會保障體制的 改善發展方案 (1980 - " "
李光燾)
25. 社會開發 (90 年代基本構想) (1980 - 韓國社會開發協會編 共同研究)
26. 第 6 次 經濟社會發展 5 個年計劃 作成指針 (1985.8. 經濟企劃院)
27. 厚生白書 1983 (日本國, 厚生省 編)